

월간
재정포럼 9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9월호 제183호

현안분석 •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허경선
•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성명재

특집 • 2011년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포럼 •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공공정책포럼 • 한국경제 10대 Shocks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p>특집 · 2011 세법개정안</p> <p>정책토론티포트</p> <p>공공정책포럼</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0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염명배</p> <p>08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 허경선</p> <p>36 조세 · 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 성명재</p> <hr/> <p>53 2011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임재현</p> <p>59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박명호</p> <p>69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p> <p>82 한국경제 10대 Shocks</p> <p>88 OECD의 VAT 중립성 지침 발표</p> <p>104 2011년 세법개정안</p> <p>116 취약계층 '일자리'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p> <p>118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p> <p>132 추석 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p> <p>134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편 추진</p> <p>136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p> <p>138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p> <p>155 OECD 80%가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p>
---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들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 이슈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로 ‘상생번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공생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이 바로 ‘동반성장’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재정기능 및 구조가 중앙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대기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0세의 성년이 된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그동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가 상호 동등한 파트너로서 만족한 수준의 동반성장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향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동반성장·공생발전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동반성장 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우리나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조세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세:지방세의 비중은 대략 80:20 선에 머물렀던 반면, 지출비중은 대략 40:60의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조세를 더 많이 징수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에 69.6%였던 것이 2011년에는 51.9%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비중

(단위: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P
세입 (조세)	국세	76.7	77.6	77.5	78.0	77.0	78.8	78.6	78.5	76.4
	지방세	23.3	22.4	22.5	22.0	23.0	21.2	21.4	21.5	23.6
세출	중앙	42.5	41.6	41.8	41.6	40.4	43.0	38.7	34.7	36.3
	지방	57.5	58.4	58.2	58.4	59.6	57.0	61.3	65.3	63.7

주 1. 2010년은 예산 기준

2. 지방 세출=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교육교부금)+지방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0.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정분권을 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분권에 대한 시각차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정분권을 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재정분권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의 긍정적인 측면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의 부정적 측면과 역기능을 우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분권의 방식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분권(혹은 자주재원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세출분권(혹은 일반재원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시각차가 생기는 이유는 재정분권을 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접근법 또는 관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칙론(principle)' 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입장은 현실적 문제점에 기초한 방법론(methodology)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정관 합의도출의 필요성

동반성장을 위한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먼저 양측의 시각차부터 조율하는 것이다. 양자의 관점이 다를 경우 같은 길을 가는 출발부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사안이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용재원을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대상이다.

갈등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요인의 조율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적 기능인 것이다.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공생발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역시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을 일치시켜 재정분권의 목적(where)에 합의하고, 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how)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사안이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용재원을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은 피폐한 상태로 놓아둔 채 국가재정만을 논하거나, 국가재정은 무시한 채 지방재정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 ‘ $\alpha+\beta$ Formula’

기업 간 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어느 정도 ‘양보’ 함으로써 상생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때 비로소 선순환적인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국가재정-지방재정 간 동반성장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듯이 건전한 재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한층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를 좁혀서 장기적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과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재정분권의 장기적 지향점은 시행과정상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이상적 상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세입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갈등요인(국고 감소, 수평적 불평등 심화, 도덕적 해이 및 X-비효율성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다목적

(multi-purpose)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이들 복합적 갈등요인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세원배분 규칙으로서 일몰제(sunset clause)를 적용한 ‘ $\alpha+\beta$ Formula’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규칙은 국세-지방세의 장기적 이양비율을 설정한 후 이를 α (분권계정)와 β (보정계정)로 나누고, 보정계정은 당분간 기금화(pooling)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징세노력(tax effort) 촉진과 도덕적 해이와 X-비효율성의 최소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α 비율을 확대하고 β 비율은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 간 동반성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중재·조정기관 없이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딪쳐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밀려 만족할만한 동반성장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진정한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조정 기능이 요청되는 바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전해온다. 아프리카에서조차 동반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왔지만 앞으로 먼 길을 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만 20년이 흐르도록 중앙-지방 간에 흡족할만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저변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이제 동반성장 시대를 맞아 아무쪼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생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KIPF**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 간 동반성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허경선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세 · 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kheo@kipf.re.kr)

공공기관 선진화에서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하드웨어 개혁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성과관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혁이다.

I. 서론

공공기관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궁극적 주인인 시민과 정부,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다층적 복대리인(復代理人) 문제로 인해 기관의 운영이 국민들의 감시에서 떨어져 있고 따라서 경영체제의 책임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의한 통제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공공기관 임원들과 주무부처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모 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에서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하드웨어 개혁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성과관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혁이다.

성과관리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포함하여 기관의 성과를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성과관리방법이 존재하지만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내부성과관리와 외부성과관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성과관리의 초점에 따라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와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과관리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한 이슈로 제시되어 왔다. 특히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은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등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왔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은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에서 시행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한 이슈로 제시되어 왔다.

II.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개념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다양한 기법과 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성과관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의 계획부터 측정, 평가, 인사고과, 성과보상, 성과정보의 활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성과관리 과정이며 동시에 기관과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향상시키고 보상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성과관리가 더욱 강조되었다.

〈표 1〉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정의

연구자	개 념
Rubinesak&Bovaird (1999)	관리자가 조직의 성공을 위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관리시스템
Schwartz (1999)	목표와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환류를 제공하고 성과고과(performance appraisal)를 행하는 하나의 관리시스템
Armstrong&Baron (2000)	조직 관리자가 조직, 집단,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관리과정
Varma et al. (2008)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standard)을 결정하고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는 관리시스템
Bricsoe&Claus (2008)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결정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성과환류를 제공하고 훈련과 발전의 수요를 정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하나의 시스템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09)

1960년대 공공기관의 관리는 정부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공공기관 성과제도는 정부업무평가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는데, 이후 1984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를 이전의 사전 통제중심 관리에서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성과는 대부분 재무제표 중심의 전통적인 성과측정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한국행정학회, 2007). 이후 신공공관리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성과관리가 더욱 강조되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석유개발공사 등 10개의 기관에서 BSC (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재무성과 위주의 기존 성과관리를 더욱 확대하여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선행과 후행, 내부와 외부, 조직과 개인에 관한 지표가 균형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성과관리 프로그램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도입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와 관리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성과관리의 주관을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 내부성과시스템과 외부성과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부성과관리시스템에는 근무성적평정과 BSC 등이 포함되며, 외부 성과관리시스템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혁신평가, 재정·기금평가 등이 포함된다. 본장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에 시행중인 내부성과관리와 외부성과관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내부성과관리

가.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의 정의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기관 구성원들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과 최근에 도입된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근무 성적평정과 다면평가가 포함되고 후자는 대표적으로 BSC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기관의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과관리체계’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관리체계 지표는 조직의 전부와 계층에 걸쳐 성과를 어떻게 측정·분석·평가·개선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기준이 되는 세부평가내용은 “적정한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지표의 운영,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운영 노력, 내부 성과평가체계와 외부평가체계의 연계,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성과평가 결과 환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지표는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이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 내부성과관리시스템

공공기관의 내부성과관리 시스템은 기관의 목적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공통적인 사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내부성과관리시스템으로 근무성적평정시스템과 BSC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BSC와 타 시스템의 연계나 성과관리시스템 제도 개선에 직원 참여 확대, 성과연봉제의 개선, 평가결과의 피드백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2010년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성과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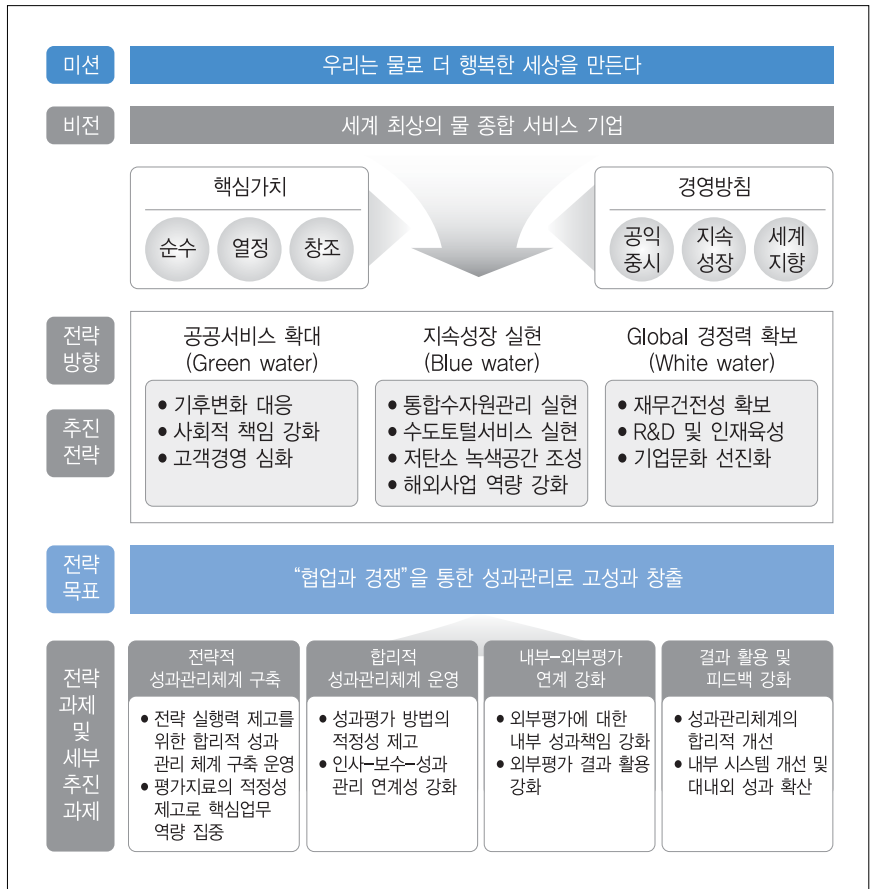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의 성과관리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전략추진체계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맞추어 전략방향을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 세부추진과제가 설정되었으며, 전략목표 간 인과관계를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기관 구성원들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과 최근에 도입된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으로 나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 내부성과관리시스템으로 BSC와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과제 및 KPI를 재설정하고 명확한 성과책임 부여를 위해 전략별 책임부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요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에서 주요성과지표까지 단계별 cascading을 통해 연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한국수자원공사의 미션 및 전략추진체계도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2010 경영실적보고서, 2011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 내부성과관리시스템으로 BSC와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과제 및 KPI를 재설정하고 명확한 성과책임 부여를 위해 전략별 책임부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전략실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사업별 IT시스템은 사업별 성과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

고, BSC,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 리스크 관리)¹⁾,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경영자정보시스템)²⁾ 등의 사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사의 성과달성도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의 성과는 본부별 성과관리회의,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와 경영진 보고 및 피드백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전사 성과추진회의를 통하여 성과의 점검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 역시 성과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개선으로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여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성과중심의 보상 강화를 위해 개인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성과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 직원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 맞춤형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CoP(Community of Practice, 실천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를 피드백 중심형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자율성과관리회의를 통해 평가의 성과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성과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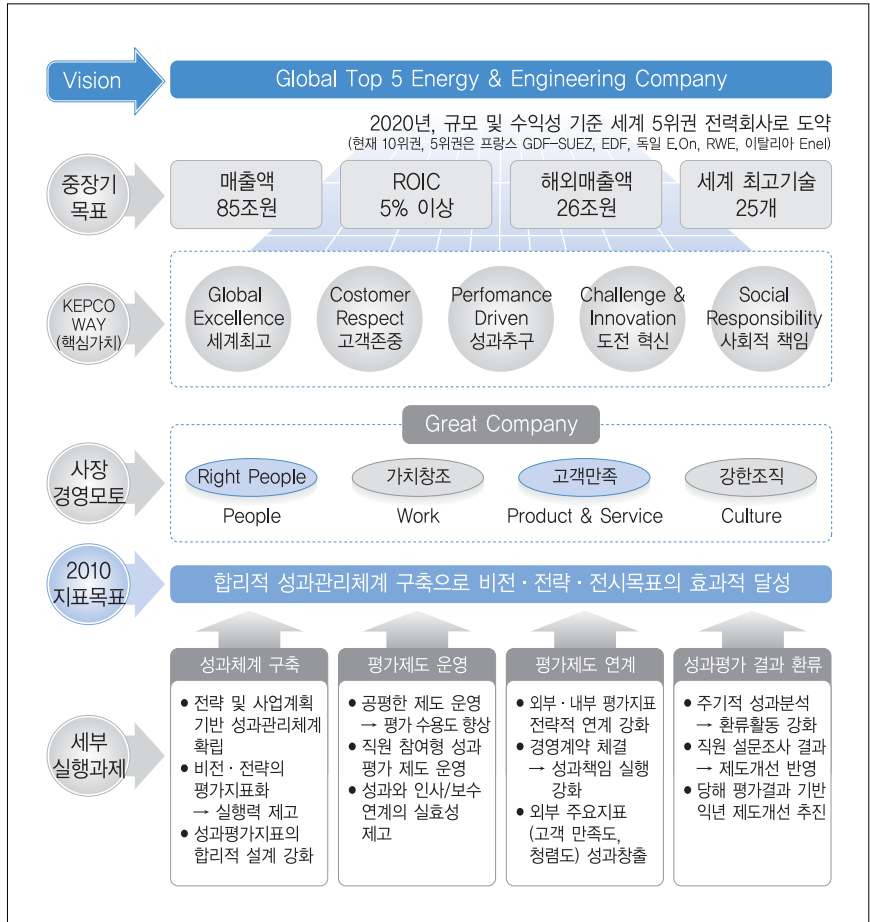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전략에 따라 내부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지표의 운영 측면에서 비전-중기 사업계획-사업계획-경영목표에 따라 성과지표의 cascading이 이루어졌으며 전략과 사업계획을 연계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현되었다. 또한 성과지표 모형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성과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09년 시범운영했던 목표관리제도(MBO)를 2010년에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zero base 기준 목표 설정 및 난이도 평가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워크숍 등 제도개선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시스템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연봉 차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환류의 측면에서 평가주기별 결과분석을 토대로 취약분야 중심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성과평가결과에 의해서 경영 전반에 걸쳐 피드백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내부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지표의 운영 측면에서 비전-중기 사업계획-사업계획-경영목표에 따라 성과지표의 cascading이 이루어졌다.

1) 재무·비재무 위험 등 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과 위기상황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 新 경영관리기법
2) 최고경영자 등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 사업과 활동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광의의 성과관리란
기관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해 항상적이고 수시적인
감독과 자문,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한국전력공사 전략추진체계도



3. 외부성과관리

공공기관의 성과는 기관 내부의 자체적인 관리 이외에도 기관 외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성과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연도별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에 국한될 수 있지만, 광의의 성과관리란 기관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해 항상적이고 수시적인 감독과 자문,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관리와 감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과 결산, 중기재정전략과 같은 재무에 대한 관

리, 상시적인 감독 지침, 상시적인 정보제공수단인 통합경영공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에의 보고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경영평가와 경영공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과 감독과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 기능도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평가와 경영공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과 감독과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 기능도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별 성과 보고와 평가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예산안 편성 - 이사회 제출, 의결 확정 (단,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 확정)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결산보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3월 말일까지 승인 - 결산 확정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3월 말일까지 승인 - 결산 확정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해당년도 포함 5개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감독 주무기관장: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기관장은 경영지침 이행 여부 감독 주무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
경영실적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6월 2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비상임이사,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가능 	
통합경영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경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장에게 통보 조직 운영, 정원·인사 관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 결산서 검사를 실시하여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8월 20일까지 국회에 보고	
국회 보고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출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현재의 경영평가 시스템은 기관평가와 기존의 경영계획서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장 평가, 2010년 도입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시범대상에 대한 자율경영 평가로 세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외부성과관리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상의 관리와 감독을 최소화하는 대신 연도별 운영결과와 실적을 사후 평가하여 경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부터, 정부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경영평가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가 일원화되었으며, 2008년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평가 시스템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기관평가와 기존의 경영계획서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장 평가, 2010년 도입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시범대상에 대한 자율경영 평가로 세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스템 (2010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의 종류		평가 대상 기관	평가 지표
기관 평가		100개(공기업 21, 준정부기관 79)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3개 부문 28여개 지표
기관장 평가	경영계획서 실적평가	96개(공기업 18, 준정부기관 66, 기타공공기관 12)	리더십-공공기관 선진화-고유과제 3개 부문 11여개 지표
	자율경영 실적평가	4개(공기업 3, 기타공공기관 1)	고유성과과제-공통과제 2개 부문 7여개 지표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이 되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이 해임조치(2009년 4명, 2010년 1명, 2011년 3명(해임건의))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중요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평가의 준비와 실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4. 국내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이슈

앞장에서 살펴본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내부와 외부 성과관리, 사전적 성과관리와 사후적 성과관리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성과관리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외에 상시적인 감독과 각종 보고, 통합경영 공시,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검토까지 성과관리에 포함한다면, 성과관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과관리의 시행은 다면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를 관리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복적인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에 과도한 성과관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성과관리와 감독·보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성과관리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경영실적평가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가 기관의 성과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관장 평가의 경우 기관장의 연임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기관의 경영평가결과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영실적평가의 결과가 기관 전체의 성과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구와 이해관계자는 평가제도에 더 많은 평가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평가의 시행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내부성과관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내부성과관리가 정착화되고 이에 따른 성과주의 보상과 성과연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성과관리와 외부성과관리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내부의 성과향상이 외부의 성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이중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이 조직의 미션과 장기목표, 내부의 성과지표와 외부의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피드백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이 병행될 때 성과관리제도 운영으로 인한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내부성과관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내부성과관리가 정착화되고 이에 따른 성과주의 보상과 성과연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해외 주요국가의 성과관리

국내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기관도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크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주요 공기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도 주요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전담부서에서 담당하

영국은 정책과정의 합리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정책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는 경우가 많다. 본장에서는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의 높고 공공기관의 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도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공기업 분류 기준과 공기업 전담부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공기업의 기준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5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의 절반 이상,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소유 상공업 활동을 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 주식을 직접 투자의 형태로 소유 경쟁시장에서 운영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됨 	기관의 주요 업무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
공기업 전담 부서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내의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	재무성 내의 국가투자청(APE)	기업 및 에너지 통신부(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	재무부 내의 공기업관리부(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	28	55	40	57

1. 영국

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영국은 정책과정의 합리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정책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정책평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이찬구, 2009).

영국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이라는 성과목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서비스협약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성과목표 설정체계이며, 이는 다시 미시적 실천전략인 서비스 전달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SDA)을 통해 수행된다. 공

공서비스협약(PSA)에서 제시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비스전달협약(SDA)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다. 서비스전달협약은 투입, 산출 그리고 과정 지표가 제시되며 결과(outcome)와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주무부처는 소속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정부 전체 목표하에 부처별 세부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원투입 계획을 3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다시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목표를 설계할 때 반영한다. 따라서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협약 및 사업설계에는 주무부처의 정책 목표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영국 공공기관의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관리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성과관리는 2003년 이후로 사업·기업·규제 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Regulatory Reform, BERR) 내에 설립된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의 경우 2002년 이전에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 주도하였으나 2002년 이후 관리감독 부처로 평가의 주체가 변경되었다.

영국 공공기관의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관리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공기업의 성과관리

1) 소유권 행사

과거 영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행사의 유형은 소유권을 가진 개별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권 모형이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 사업·기업·규제 개혁부(BERR) 내에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이 설립되면서 중앙 집중형으로 전환되었다. 공기업실의 전략적 목표는 정부의 지분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주주로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변수 내에서 수익을 달성하는 데 있다. 2009년 기준 공기업실의 통제를 받는 28개의 공기업 중 23개에 대해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영국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무부처에 의하여 임명되며, 정부가 지분을 완전히 보유한 공기업의 경우엔 정부대표이사가 없으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는 1~2명의 정부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부처 내에 임용하여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Fraser Figur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평가결과를 개인 및 기관 수준에서 모두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한다.

2) 외부성과관리

영국 공기업의 외부 성과관리체계는 크게 3가지로 수행된다. 첫째는 공기업실의 공기업 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으로 공기업은 월 1회 주기적으로 공기업부에 공기업의 계획 및 예산과 관련된 성과정보를 보고한다. 또한 공기업실은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점검한 후, 경영 성과를 6개월마다 발표하는데 이때의 점검 항목은 정부주주와의 관계, 공기업실 모형의 적용, 경영진의 질적 수준, 경영전략, 재정성과, 성과의 균형성과와 위험 등 6개 항목이다. 둘째는 의회에서 공기업실과 정부소유공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성과 검토로서 공기업 기관장 및 이사회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성과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연례보고서는 공기업의 재정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및 비재정보고서(Specific Reporting)의 성과정보를 포괄하며 2005년부터는 종합보고서(Aggregate Annual Reports)도 첨부되고 있다. 셋째는 독립적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감사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는 연례보고서에 첨부된다. 감사원 발간 보고서인 'Value For Money' 보고서는 공기업의 사업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평가 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영국에서는 평가결과를 개인 및 기관 수준에서 모두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한다. 우선 개인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면, 공기업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급 및 재임과 연계시켜 활용한다. 기관장 및 이사회회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 추가되는 인센티브 구조이며,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에 연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다만 평가결과가 최상위일 경우에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한다. 또한 이사회 멤버로서 재임용 결정 시에도 평가결과를 많이 고려한다. 기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로써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 차기년도의 성과평가를 면제해 준다.

다. 비부처공공기관 (NDPB)의 성과관리

1) 비부처공공기관(NDPB) 성과관리 시스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은 정부부처에 귀속되지 않지만 정부정책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수익성의 창출보다는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는 비부처공공기관 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다.

2002년 이전에는 내각사무처에서 중앙집권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매 5년마다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평가제도가 주무부처의 소관으로 이양되어 분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주무부처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비부처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가 주기도 기존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5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공공기관에게는 간소화된 평가체계를 허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기관 평가를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평가를 관장하는 단일한 평가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별로 독립된 평가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NDPB가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주무부처의 통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NDPB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귀결된다. 따라서 주무부처는 의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NDPB 경영의 비용과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고 NDPB에 자원을 배분할 시에도 그러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처는 NDPB가 부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PSA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신뢰성이 높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의 의무는 첫째, NDPB의 전략적 목적과 정책가이드라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NDPB의 성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셋째, NDPB에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관은 NDPB의 기관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의 제반사항과 성과에 관하여 파악하고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소관 공공기관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2) 경영평가

영국의 준정부기관 평가제도는 198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5주년 평가가 핵심이었다. 5주년 평가는 내각사무처가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모든 책임운영기관(agency)과 비부처공공기관(NDPB)를 대상으로 책임성과 업무 효율성을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는 기관이 조직에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였고, 2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본틀은 2002년 평가제도 개편으로 달라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평가시스

영국에서는 공공기관 평가를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평가를 관장하는 단일한 평가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별로 독립된 평가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 감사원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과 소관 공공기관은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템에서 주무부처의 사업평가 위주로 분권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개별 기관의 경영성과보다는 주무부처의 정책목표와 기관의 업무 연관성 및 효율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NDPB의 성과보고서

공공기관의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주무부처 정책과 관련하여 기관 임무(Aim) 설정, 둘째,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량을 파악하고 하위 목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를 작성, 셋째, 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넷째, 지출내역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다섯째, 성과결과 활용을 통한 다음연도 성과목표 제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성과결과의 내부 활용

영국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체계는 조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으로 실적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감사원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과 소관 공공기관은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는 임금 인상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성과급제는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프랑스

가. 경영평가

프랑스의 공기업 평가관리 제도는 크게 경영보고서와 사회보고서 제출, 그리고 경영계약 평가로 이루어진다. 매년 작성되는 경영보고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확인 및 평가를 거쳐서 정부 주무부처와 재정경제산업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투자수익률, 시장 수익률과 같은 세부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로 구성된다.

1984년 이후부터 시행된 사회보고서(Bilan Social)는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보고서 역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확

인 및 평가를 거쳐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프랑스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고용관리, 근로시간, 교육훈련, 임금지표, 복리후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사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1967년부터 공기업 관리의 기본 틀로서 사용된 경영계약제도는 프랑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경영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과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공기업에 부여하고, 공기업은 이 경영계약에 따라 매분기마다 경영성적을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는 경영성적을 점검하여 공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공기업에 자율권을 줌으로써 공기업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1967년부터 공기업 관리의 기본 틀로서 사용된 경영계약제도는 프랑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경영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1) 경영평가의 주체

프랑스의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는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는 정부의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정부부처의 관료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다가 2003년 국가투자청이 설립되면서 국가투자청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회계감사원은 사후감사를 맡으며, 기존의 기획위원회는 전략분석원이 되어 제한된 역할을 하게 된다.

2) 경영평가주기

공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 및 경영평가는 정부와 공기업 간에 체결한 경영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공기업의 중기경영전략에 의거하여 연도별로 또는 중기경영전략의 기간 말에 평가를 시행한다.

3) 경영평가의 운영

프랑스는 각 산업부문별로 다른 경영평가지표를 사용한다. 평가지표는 공기업에 대한 지표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정부정책 수행도 등을 포함하며, 평가에 따른 공기업 간 순위결정이나 평점산정 등의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성과보고서 및 사회보고서 등의 공기업 자체 보고서나 경영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하는 컨설팅형 평가관리방식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동종 산업의 성과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이를 임금이나 수당, 인센티브 등과 연결하여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4) 경영평가의 이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동종 산업의 성과 평균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다음 연도에 미진한 사업에 대해 시정 및 투자를 증대할 것을 요구받는다.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이를 임금이나 수당, 인센티브 등과 연결하여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임금 등은 기업내부의 고유 권한으로 기업의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흡한 업무성과에 대해 공식적 제재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국가투자청이 이를 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경영 공시

프랑스의 경영공시를 위한 제도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포괄적 공시와 통합연차보고서 발행, 반기보고서의 제출 등이 있다. 홈페이지를 위한 포괄적 공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추어 결합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하며, 통합연차보고서는 재무부에 의해 발행되는데 그 내용은 부문별 공기업을 분석한 것이다. 통합연차보고서는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와는 별도로, 2004년부터 주식발행 공기업의 경우, 반기 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반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재무제표, 자본지출, 회사경영환경 변화 등이다.

다. 외부 감사

프랑스의 감사원(Cours des Comptes)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부에 보고한다. 또한 프랑스의 공기업은 공기업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라. 정부 감독

정부의 주무부처는 기술적 감독과 규제·경쟁·지역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해 공기업이 얼마나 순응했는가를 평가 감독하며 재무부는 주식투자/매각 및 기관경영관련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무부의 감독 및 보고는 국가투자청(APE) 주도의 성과지표에 근거한다.

3. 스웨덴

스웨덴의 성과관리는 정부부처가 국가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특별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관리는 재무적, 사회경제적 목적 및 여타 목표에 대한 수립과 사후점검, 그리고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설정된 목표는 관련된 사안에 따라 이사회, 정기주주총회, 법률이나 정책,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합의로 정해지며, 합의가 이루어진 목표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정부의 방침 안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의 성과관리는 정부부처가 국가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특별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 공기업 유형분류에 따른 성과 평가

1) 시장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평가

시장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은 시장의 다른 민간 참여자들과 동일한 필수사항과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장기 경쟁력, 가치의 증가,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며, 경쟁을 왜곡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재무적 목표의 설정과 사후점검은 기업운영에 필수적 요소이다.

2) 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기업의 평가

특별한 사회적 이익이 있는 기업에는 사회경제적 목적이 설정되며 온전히 시장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기업과는 재무적 목표의 요구조건이 다르게 설정된다. 이들 기업은 주로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 사회에 가장 큰 혜택을 창출하는 것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특정 지역에서의 활동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적 목표를 설정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소유주와 경영진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소유주와 기업은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무적 목표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공기업을 경우 자기자본비용은 최소한 무위험 이자율에 상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소유주의 자본(차입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 성과 목표의 분류

1) 공기업을 재무적 목표

스웨덴 공기업을 재무적 목표는 연차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특정 분야의 수익률이 장기적인 감소세에 있거나, 이자율의 장기적인 변화가 있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목표가 수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을 재무적 목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설정되고 평가된다.

〈표 5〉 스웨덴 공기업을 재무 목표

재무목표	상세지표
수익성 목표 (profitability targets)	• 자기자본 이익률 (return on equity)
	• 영업이익률 (operating margin)
자본구조 (capital structure)	• 자본자산비율 (the equity/asset ratio)
	•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
배당 목표 (dividend targets)	• 순이익비율 (the share of net profit)
	• 자본비율 (the share of net equity)

기업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소유주는 자기자본비용을 알맞게 설정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으로 하여금 한정된 자원 아래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노력의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우선권을 만들게 한다. 공기업을 경우 자기자본비용은 최소한 무위험 이자율에 상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소유주의 자본(차입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2) 공기업을 사회경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는 공기업을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회경제적 목표는 법에 의해 설정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혹은 기업과 정부의 협의로 결정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평가와 사후점검은 첫째, 사회경제적 목표 혹은 부문정책 목표의 성취 여부에 대한 양적 기준, 둘째, 목표달성의 효율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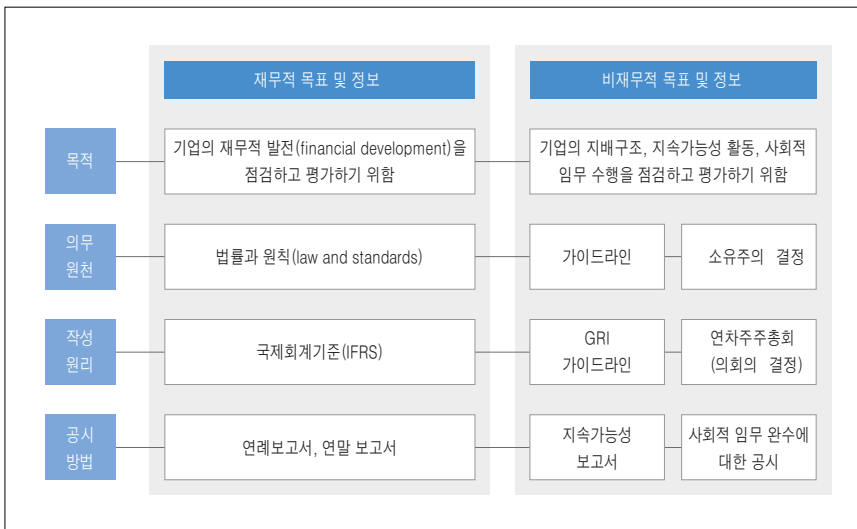
기업의 효율성은 비용요소를 기업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해당 기업의 수입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종업원 수, 경비, 사회경제적 혹은 부문 목표에 따른 다른 측정 요소들과 관련된 영업요소, 생산성 요소, 비용요소가 측정에 이용될 수 있

다³⁾. 결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해외 기업의 목표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특별한 목표와 관련한 국가 소유권 정책의 중요한 점은 공기업이 환경문제, 사회이슈, 인간의 권리, 성 평등, 다양성, 윤리, 비재무적 위험 등의 지속성 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관리하고 알리는 데에 적절한 전략을 가지는 것이다.

스웨덴 공기업 성과관리에 있어서 목표와 성과를 비교분석한 공시는 기업의 표준 변화, 때로는 목표의 수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림 3] 스웨덴 공기업의 재무적 / 비재무적 목표 및 정보에 대한 원칙



자료: 스웨덴 기업 및 에너지 통산부, Annual Report State-Owned companies(2007)

다. 성과정보의 공시

스웨덴 공기업 성과관리에 있어서 목표와 성과를 비교분석한 공시 (reporting)는 기업의 표준 변화, 때로는 목표의 수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재무적 목표는 기업과 소유주 양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두 수준에서 의사소통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며 소유주는 “공기업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기업의 연례보고서와 내부 점검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아래 표는 2007년 스웨덴 공기업 연례보고서에 공시한 공기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공기업의 사후점검과 평가는 경영공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데, 스웨덴의 공기업들은 사후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공기업은 외부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

3) 예를 들어, Samhall의 경우는 직업 상 무능자의 고용인 수를 이용함.

뉴질랜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의 원리를 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에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에 따라 스웨덴의 모든 공기업은 연례보고서 등을 제출, 공시하고 정부부처인 기업 및 에너지 통신부(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에서 매년 공기업 통합 연간보고서에 공기업의 공시내용을 요약 발표한다. 연례보고서의 약 80%와 분기보고서의 약 50% 이상이 공기업의 웹사이트에 올라가며 이러한 각 공기업의 보고서와 공기업 통합 연간보고서는 국회 감사기관에 제출된다. 국회는 공기업 소유자의 권한으로서 국회 감사기관이 연례보고서, 연차보고서와 관련하여 특별한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다.

〈표 6〉 스웨덴 공기업 연례 보고서의 목표 및 성과 비교 공시의 예

(단위: %)

공기업명	수익성		자본구조		배당 목표		특별한 목표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O/X)
AkademiskaHus	8.2	4.9	35	47.4	50	50	○
Arbetslivsresurs	5~8	음(-)의 성과	30	26	50	0	○
GreenCargo	10	11	30	43	50	85	×
Kasernen	6.5	12.1	25	73	50	4	×
Lernia	5	10.4	40~50	55	변동 가능	25	×
LKAB	12	22	50 이상	75	30~50	39	×
Posten	10	24	25	37	40	625	×
SJ	10	14	30	37	33	169	×

자료: 스웨덴 기업 및 에너지 통신부, Annual Report State-Owned companies 2007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의 원리를 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에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때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은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민영기업과의 자율경쟁을 도입하는 등 일반 민간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의 공공기관은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및 상업성 정도에 따라 상업적 이익추구가 강한 공기업형 공공기관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의 주체도 다르고

각기 다른 성과관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가. 공기업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 주체

뉴질랜드의 공기업형 공공기관은 상업성의 정도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과 준시장형 공기업(Crown Entities)으로 분류된다. 뉴질랜드 공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관련 업무는 재무부 내의 공기업관리부(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공기업관리부는 주로 공기업의 경영 감독을 담당하는데 공기업의 사업 계획, 투자, 및 자산 매입/매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재무부 등 소유부처에 제공하여 소유부처들의 공기업 관리를 지원한다.

2) 경영평가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크게 이사회 평가와 기관 평가로 구분되어진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평가, 이사회 의장 평가, 이사 개인별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평가와 이사회 의장 평가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운영기관인 공기업심사자문단(Crown Company Monitoring Advisory Unit, CCMAU)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 개인의 평가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한다. 기관평가는 공기업관리부(COMU)에서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 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민간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주요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의 성취 정도 측정에 노력한다. 각 공기업의 성과지표 설정은 자율에 맡겨지므로 각 기업마다 경영방향 및 환경에 따라 성과지표가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주무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표가 많이 포함되게 된다. 성과지표는 당장의 경영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기업의 중장기적인 전략목표 및 임무 완성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단기 목표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평가지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평가지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각 개인의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성과평가의 결과는 향후 승진 및 보수에 실제로 반영하여서 기업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

성과지표는 당장의 경영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기업의 중장기적인 전략목표 및 임무 완성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단기 목표로 간주된다.

뉴질랜드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평가는
자체평가가 중심이다. 매년
주무부처와 재정지원협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3) 경영공시

뉴질랜드 공기업 이사회 및 경영진은 경영계약서(Statements of Corporate Intent)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공기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경영계약서는 전략적 목표, 사업의 성격과 범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주요한 사업, 회계원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및 비재정 성과지표도 수립하는데, 향후 3년 정도의 목표치를 보여준다. 공기업 평가는 공기업 관리부 (COMU)가 담당하며, 공시된 경영계약에 준하여 목표 대비 성과평가에 대한 감독을 민간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며, 경영평가 결과는 공기업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한편 재무관련 자료는 감사원을 통해 정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마친 후 공시된다. 각 기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데, 감사원장 산하 정부 감사기관 (Audit New Zealand)의 감사의견과 함께 공개된다. 특히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산출하는 VBR(Value-Based Reporting)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에는 연례보고서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고서를 포함한다.

나.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감독·관리업무는 주로 정부기관관리부(State Service Commission, SSC)에서 담당한다. 정부기관관리부는 성과관리를 통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은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주무부처의 명확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뿐 아니라 공공부문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Impact)에 근거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성과에 근거한 공공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 자율적 관리, 및 효과적인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평가는 자체평가가 중심이다. 매년 주무부처와 재정지원협약(Crown Funding Agreement, CFA)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매년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은 장·단기 성과지표를 주무부처와의 협의하에 작성한다. 성과목표는 장기목표(3~4년) 및 단기목표(분기~1년)로 설정되며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성과보고를 한다. 성과지표는 주무부

처와의 협의사항 그리고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각 기관별로 상이하며 주무부처 및 재무부와 협의하여 수립된다. 성과보고서의 제출 빈도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주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회계연도(6월 30일) 3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재무제표 및 공공서비스평가서를 포함하는 연례성과보고서를 평가단에 제출한다. 평가단은 제출된 연례성과보고서를 1개월에 걸쳐 평가한 후 10월 31일 안에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공공기관은 평가보고서를 받은 15일 이내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은 의회제출 후 1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출간하도록 되어있다.

5.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OECD, 2005)』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V.E.1절에서 공기업이 기업의 목적과 성취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을 권장하고 있다. OECD에서 발간한 『책임성과 투명성 (OECD, 2010)』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이 상시적인 성과 검토와 매년 실시하는 성과 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민간기업이나 해외의 비슷한 기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OECD의 최근 보고서 『공기업의 상업성 활동과 비상업성 활동의 균형 (OECD, 2011)』에서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사례조사를 통해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준정부기관이 받는 정부 보조금이 정부의 예산관련 성과평가와 연계되어 엄격하게 평가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투자수익률(rate-of-return, ROR)에 대한 요구사항과 수익을 최대화할 것을 주된 성과지표로서 요청받고 있다.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공기업의 비상업적 활동은 기업의 상시적인 이사회 활동의 모니터링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규제받는 공익기관의 공공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1년에 두 번 성과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성과평가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IV. 시사점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각 국가의 공공기관 운영목표와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맞게 발전되어 왔으며 국가별로 특징과 형태가 상이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해외 주요국의 성과관리 방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주요국의 성과평가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주요국가에서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과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은 별도의 관리기구하에서 상이한 지배구조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 방법 역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기준으로 기관의 성과가 측정되며, 엄격하고 정기적인 평가 대신, 중앙집중적인 소유권 기구와의 상시적인 성과보고와 업무협의, 컨설팅과 자문의 형식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의 관할하에 분권화된 형태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았다. 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엄격한 성과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준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정부의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함께 평가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성과평가의 경우도 주무부처의 성과와 함께 준정부기관의 역할이 평가되고 평가의 지표 역시 주어진 목표의 달성여부가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목표가 달성된 경우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가 2차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7〉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유형별 성과관리 방법

기관 유형	활동 유형	성과평가지표	성과관리 방법
공기업	상업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수익률 수입 최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표가 비상임 이사로 참여 소유권기관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 협의 소유권 기관에 성과보고 소유권 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례보고서 발간
	비상업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의 달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활동 평가의 일부로 모니터링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공서비스 의무(PSO)의 경우 엄격한 평가
준정부 기관	비상업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의 달성여부 목표달성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처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엄격한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량지표 비율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따라 성과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측정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성과관리 사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향후 개선방향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성과 목표에 대한 계약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 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목표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익성과 비수익성 목표로 구분되며, 성과목표의 달성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평가의 시기가 조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위한 장기적인 성과목표가 사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많지 않다. 기관의 성과목표와 달성기간이 합의된 후, 이에 대한 성취도를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통한 상시적인 성과의 통제와 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에 대해 별도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정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임원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 성과급을 통해 기관의 중장기 목표 달성 시 경영진에게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과관리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은 본격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성과관리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투자수익률이나 전체 매출 등으로 계량지표 위주로 매우 간소화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유권 관리기구의 역할 역시 수익성 향상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이 각 기업에 대해 상시적인 컨설팅과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기업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해외 주요국의 성과관리 사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경영평가라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성과관리 방법보다는 상시적인 협의와 컨설팅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중화하였으나 소유권의 행사와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기업가치 극대화와 수익성 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연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OECD에서 발간한 『책임성과 투명성 (OECD, 2010)』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독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해외의 비슷한 기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글로벌 지표의 개발은 이런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과 더불어 중요한 기관의 목표가 공익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공익성은 국가와 기관마다 추구하는 바가 각기 달라 동일한 잣대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공익성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고서(Bilan Social)를 1984년도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웨덴과 뉴질랜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회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이 점차 늘고 있으나 이를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곱째, 국내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경우 현재 외부평가에 해당하는 경영실적평가에 과도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실적평가는 고유의 실적평가 지표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지침 목적의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경영실적평가라는 고유한 목적을 약화시키고,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경영평가라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성과관리 방법보다는 상시적인 협의와 컨설팅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동향은 국내 경영평가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며, 또한 경영평가제도 이외의 다양한 성과관리방법들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현재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걸쳐 진화하고 있다. 각 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맞게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 성과관리가 충분히 연계되어 중복성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성과관리가 아니라 기관의 성과향상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성과관리 사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형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성과관리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체질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KIPF**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현재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걸쳐 진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 2010 이찬구, 「영국의 공공기관 피약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19(2), 2009, pp. 337~373

윤광재,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007, pp. 137~157

최성락, 박민정,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행정논총』, 47 (1), 2009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한국행정연구원,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9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 성과관리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2007

한국수자원공사,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한국전력공사,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I.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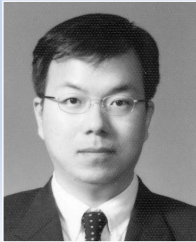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II.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독일』, 2010

OECD,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 Guide for State Ownership, 2010

OECD, Balancing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Prior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1.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조세 · 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정부의 재정활동은 국민들에게 계층별로 비대칭적인 부담 · 수혜 구조를 낳는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분배구조는 재정활동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I. 서론

본고는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의 조세 · 재정지출 정책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소득분배구조란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하는 시장소득이 공급량 및 각종 생산요소의 생산성과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각종 요소의 단위당 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소득의 분배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조세 · 재정정책은 다양한 납세자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고, 징수된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수입에 기반한 재정지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활동은 국민들에게 계층별로 비대칭적인 부담 · 수혜 구조를 낳는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분배구조는 재정활동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비대칭적인 수혜 · 부담구조는 필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와 조세 · 재정지출 분포에 대한 연구는 통계청과 OECD 등에서도 많은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현금주의(cash basis)에 기초하여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 · 작성하고 있다. 조세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또는 이들 정책의 분포 효과는 현금의 출납이 아닌, 원인과 결과의 연계를 통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즉,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입각하여야만 조세 · 재정지출의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고는

* 본고는 일반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에 기고하는 기고문으로 학술논문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며, 본 매체의 발간주체인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관계가 없음도 함께 밝혀두는 바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수혜 분포를 살펴본다. 현금이전이나 현물급여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이전 자체가 원인의 발생과 실제의 이전시기가 거의 일치하므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통해 양자간의 시차가 매우 짧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1~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경우 격차가 크다.

OECD에서도 OECD(2008) 등을 포함하여 분배 관련 연구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 분석범위가 현금이전과 소득세 등 일부의 직접세에 국한된다. 간접세(소비세)나 현물급여 등의 경우에는 OECD 등 국제기구 등에서 수행한 종합연구가 부재하다. 이런 점에서 OECD 등의 연구에 비해 보다 폭넓은 조세·재정지출 연구가 요청된다. OECD에서의 분배 연구는 대부분 회원국 대상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수혜 분포에 대한 각국의 기초자료는 국가별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혼재되어 OECD의 보고서 내용만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본고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조세·재정지출의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하고, 분석의 포괄범위도 소비세와 현물급여까지 확장하여 고찰한다. 우리나라 조세·재정지출의 분포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조세부담과 재정지출 수혜 분포를 추정해봄으로써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등적인 부담-수혜분포구조로부터 정부재정활동의 순수혜(또는 순부담) 계층을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과 조세·재정지출의 분포 분석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소득분배구조 및 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의한다.

본고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조세·재정지출의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하고, 분석의 포괄범위도 소비세와 현물급여까지 확장하여 고찰한다.

I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가. 분석방법

본고는 정부의 재정활동 중 민간부문(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재산세·소비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및 현금이전지출(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또는 배분)되는 사회지출과 교육지출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들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수혜분포는 Sung & Park(2011)에서 추정한

민간소득이란
시장소득에 민간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민간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2007년도 분포 분석결과를 2009년도 시점으로 업데이트한 것을 소개한다. 분석방법은 Sung & Park(2011)에서 채택한 방법을 그대로 수용한다¹⁾.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기본자료로 사용한다.

나. 소득의 종류

분석에 앞서 소득의 포괄범위 차이에 따른 몇가지 소득 개념을 정리해 본다. [그림 1]은 시장소득에서부터 최종소득에 이르는 여섯 단계의 소득 종류를 보여 준다. 이러한 소득 개념은 영국 통계청(예: Jones 2008)에 기원한다. Sung & Park(2011)는 이를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1]이 그것이다.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란 시장에서 각 소득자들이 노동이나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한 원천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을 포괄한다.

민간소득(private income)이란 시장소득에 민간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민간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거의 동일 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민간이전소득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이전소득이 상당히 큰 편이다. 성명재·박기백(2009A)에 따르면, 민간이전소득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증가율이 낮다.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이 민간이전소득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런 논의에 기초해보면 향후 민간이전소득의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처럼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소득(gross income)은 민간소득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금 등의 각종 현금 사회부조를 합산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총소득에서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와 건강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세후소득(post-tax income)과 최종소득(final income)은 비교적 최근에 개념이 확립된 새로운 개념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세후소득이란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소비세에 국한함)를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최종소득은 세후소득에 각종 현물급여(in-kind benefits)를 합

1) 상세한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Sung & Park(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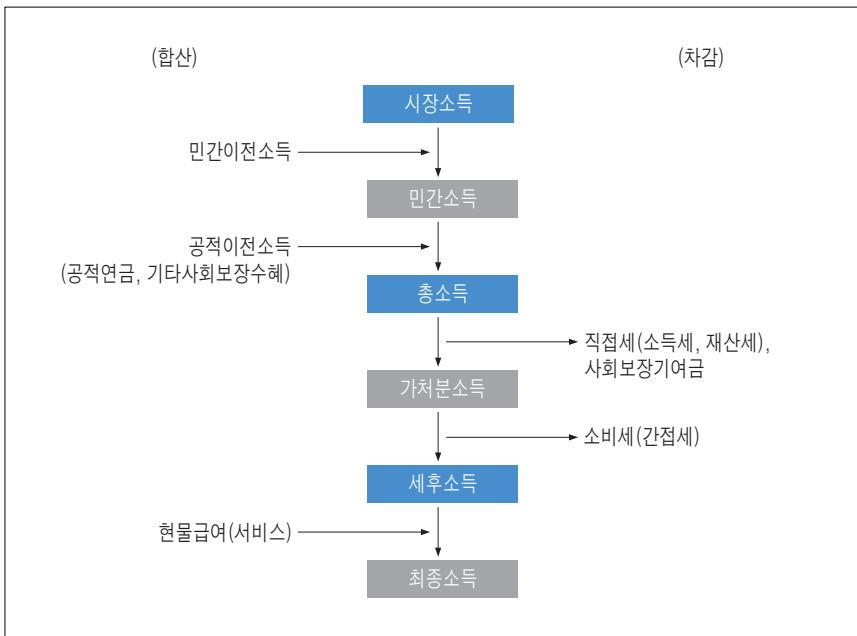
산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에 이르는 소득은 현실에서 모두 관찰되는 소득들이다. 그러나 세후소득과 최종소득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고 추상적 ·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소득 개념들이다.

대부분의 분배 및 재분배 관련 연구에서는 시장소득 단계에서 가처분소득 단계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주된 연구범위로 선정한다.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의 분석결과를 업데이트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를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조세 및 재정지출을 포괄하여 부담 · 수혜분포 추정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림 1] 소득의 종류



자료: 성명재 · 박기백(2008)

다. 조세 · 재정지출의 분석 포괄 범위

원칙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조세 및 재정지출을 포괄하여 부담 · 수혜분포 추정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자료와 분포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 그리고 경제학 이론(economic theories)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조세 및 재정지출의 분포연구의 분석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9B)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세부담의 경우에는 근로·종합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 재산세, 부가 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관련 부가세(surtaxes)들과 공적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이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취득세 등의 여타 세목은 정보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정지출 수혜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수혜금,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 등 현금 이전소득과 교육지출서비스, 건강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료·교육급여, 보육·주거급여 등의 교육 및 사회지출 분야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나 국방서비스 등 여타의 재정지출은 자료 및 관련 이론(theories)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2009년 현재 가구당 평균 조세부담 또는 수혜금은 600만원 수준이다. 대략 우리나라 총 가구수가 1,700만 가구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략 분석에 포함되는 조세 및 재정지출 수혜 총계는 각각 100조원을 조금씩 상회하는 수준에 달함을 유추할 수 있다.

Ⅲ. 조세·재정지출의 분포

가.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상대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지난 20여년 기간 동안의 변화 추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에서는 세 가지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대한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변이제공계수(SCV)에 지니계수, Atkinson 지수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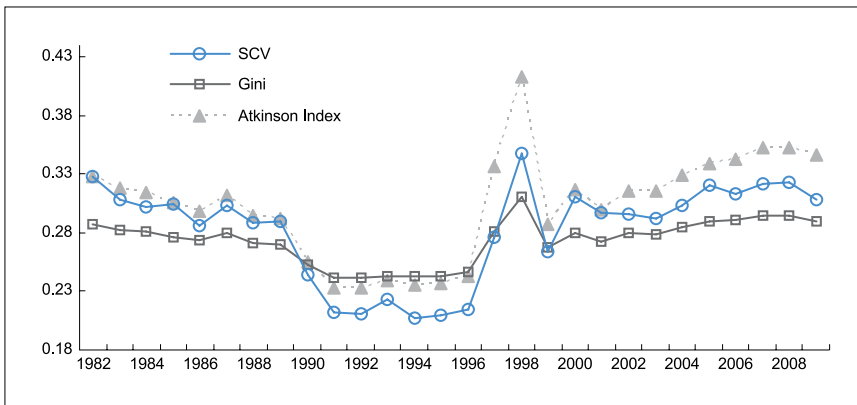
각 지수별로 추정치의 절대값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변화추이는 대동소 이하다. 1980년대에는 상대소득불평등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 추세는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다가 1990년대 중반에 불평등도가 최저점에 도달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1997~1998년은 금융·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 기간으로 일시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가 이후 추세를 회복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승추세는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2000년대 후반에는 소득불평등도의 확대추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성명재·박기백(2009B)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수년간의 소득불평등도 정체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소득불평등도의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확대 요인을 다른 부분에서 상쇄해야 한다. 다만 그런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효과를 모두 상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효과를 모두 상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주: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기준의 추정치임(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나. 부담·수혜분포

시장소득 단계에서 최종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득 및 각 부담 수혜 항목에 대한 소득 분위별 분포 및 10분위 배율(=10분위/1분위 상대비)은 <표 1> 과 같다. 10분위 배율은 소득분배 상대격차 또는 조세부담·재정지출 수혜의 누진도/역진도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지표 중 하나이다. 10분위 배율은 분포의 양끝 부분만을 대상으로 지표가 작성되는 등 전체 분포 중 일부의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분포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세부담·수혜의 누진도/역진도를 얼마 만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석이 매우 단순하고 이해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10분위 배율(배수)을 세부담·수혜 등의 누진도/역진도 측정지

재정지출 수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수준도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매우 작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수혜액의 절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로 활용한다.

조세부담 분포(그림 3) 참조)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재정지출 수혜(그림 4) 참조)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수준도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매우 작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수혜액의 절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은 15.3이다. 즉,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에 비해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하는 소득이 약 15배의 차이를 나타낸다²⁾.

총조세부담의 10분위 배율은 22.4이다. 시장소득의 15.3보다 훨씬 크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소득세·재산세·소비세·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구조가 전체적으로 누진적임을 시사한다. 총수혜금의 10분위 배율은 1.46이다. 즉,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에 비해 수혜금의 절대 수준이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밖에 더 크지 않다.

그런데 수혜 중 교육지출(수혜자 입장에서는 교육급여)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지출만을 고려하면, 수혜금의 10분위 배율은 0.74로 크게 하락한다. 즉,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수혜금의 절대 수준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교육수혜는 학생 자녀(본인이 학생인 경우 포함)를 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 그런데 소득 최하위 20% 정도의 가구는 상당수가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구는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거나 분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의 수혜 혜택이 작거나 없다. 교육급여의 분포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는 소득수준의 변화보다는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생애주기이론에 입각해볼 때, 청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중년층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다가 중년층 말기 또는 장년층 초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노년층에 다시 저점에 도달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중·고·대학을 거치면서 학생 1인당 교육지출액이 증가한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가구의 경우에는 초·중등학생의 자녀 비중이 높고, 40대는 중·고등학생, 50대의 경우에는 고·대학생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연령과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 연령과 학생분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으로 교육급여가 많아지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복지지출적인 성격의 수혜만을 고려한다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수혜금의 절대액이 작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2) 참고로 얘기하면 고소득층은 대부분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는 연령이 높은 은퇴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거의 미미하였던 과거에는 최저소득층도 대부분 경제활동 연령대였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0%를 초과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시장소득의 10분위배율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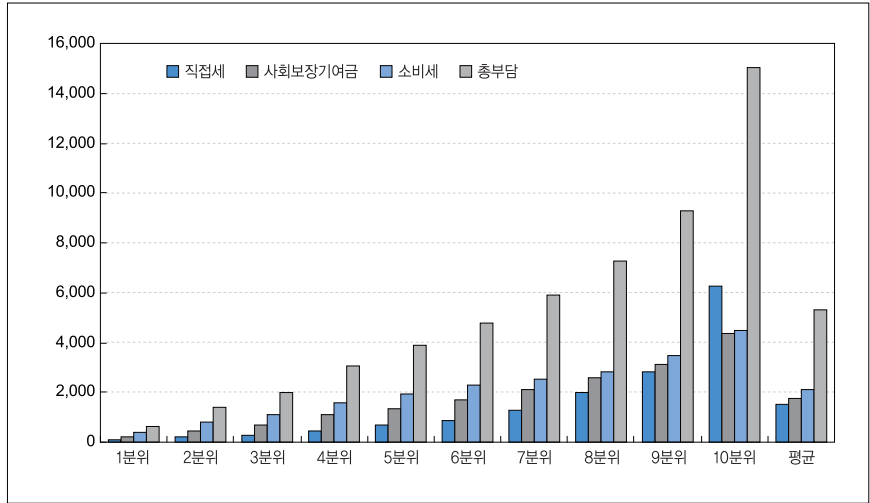
〈표 1〉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세부담·재정지출 분포(2009년 기준)

(단위: 천원 배)

	1분위(I)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II)	평균	배율(2/1)
시장소득	5,767	12,586	17,788	23,730	29,643	35,004	41,464	48,894	59,033	88,026	36,191	15.3
민간이전소득	1,453	1,871	2,164	1,680	1,361	1,534	1,799	1,610	2,108	2,126	1,771	1.5
민간소득(I)	7,220	14,457	19,952	25,410	31,004	36,538	43,263	50,504	61,141	90,152	37,962	12.5
직접세(A)	55	165	253	396	646	839	1,273	1,933	2,770	6,218	1,455	113.1
소득세	14	82	174	285	516	703	1,135	1,749	2,561	5,822	1,304	415.9
재산세	41	83	79	111	130	136	138	184	209	396	151	9.7
사회보장기여금(B)	200	422	642	1,069	1,319	1,675	2,081	2,548	3,073	4,297	1,733	21.5
공적연금기여금	47	151	259	478	621	861	1,094	1,363	1,639	2,284	880	48.6
건강보험료	149	261	364	553	647	756	915	1,099	1,319	1,867	793	12.5
기타사회보험료	4	10	19	38	51	58	72	86	115	146	60	36.5
간접세(C)	480.5	1,020.5	1,415	2,023.5	2,468	2,933.5	3,311	3,696	4,553	5,963.5	2,787	12.4
부가가치세	383	767	1,047	1,475	1,791	2,144	2,424	2,772	3,408	4,493	2,070	11.7
개별소비세	23	45	60	95	109	129	138	157	254	351	136	15.3
교통세	26	105	187	334	420	505	585	612	740	959	447	36.9
주세	10	16	23	25	31	27	30	36	40	40	28	4.0
담배세	39	88	98	95	117	135	134	119	111	121	106	3.1
부담소계(II=A+B+C)	736	1,608	2,310	3,489	4,433	5,454	6,665	8,177	10,396	16,479	5,975	22.4
세후소득(III=I-II)	6,485	12,850	17,642	21,922	26,571	31,085	36,598	42,327	50,745	73,674	31,987	11.4
연금급여(D)	1,741	1,533	1,646	1,707	1,748	1,874	1,477	1,840	1,426	1,548	1,654	0.9
공적연금	971	942	990	1,115	1,106	1,346	970	1,303	994	1,181	1,092	1.2
기타사회보장수혜	770	591	656	592	642	528	507	537	432	367	562	0.5
원물급여(E)	3,083	2,841	3,294	3,869	4,267	4,944	5,009	4,973	5,193	5,517	4,299	1.8
기초생활	790	7	0	0	0	0	0	0	0	0	80	0.0
건강보험	1,883	1,829	1,759	1,771	1,682	1,725	1,687	1,610	1,620	1,750	1,732	0.9
교육	377	926	1,446	1,980	2,469	3,106	3,246	3,345	3,562	3,767	2,422	10.0
보육	28	69	74	94	92	93	71	18	11	0	55	0.0
주택	5	10	15	24	24	20	5	0	0	0	10	0.0
수혜소계(III=D+E)	4,824	4,374	4,940	5,576	6,015	6,818	6,486	6,813	6,619	7,065	5,953	1.5
최종소득(IV=III+IV)	11,309	17,224	22,582	27,498	32,586	37,903	43,084	49,140	57,364	80,739	37,94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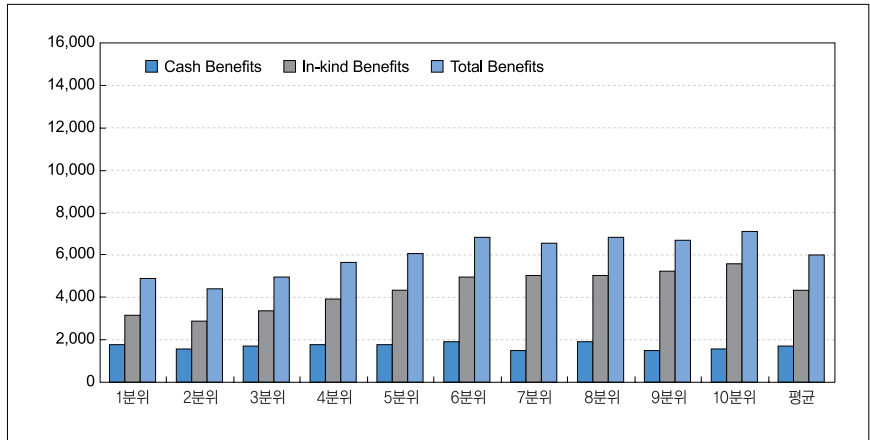
[그림 3]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2009년 기준)

(단위: 천원)



[그림 4] 소득계층별 재정지출 수혜 분포(2009년 기준)

(단위: 천원)



IV. 국제비교

가. 영국과의 비교

조세부담·재정지출 수혜에 대한 국제비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 영국 통계청에서는 매년 조세부담·재정지출수혜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비교하기로 한다. 다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조세부담률, 각종 제도 등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양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에 과연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제도와 조세부담률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담·수혜의 분포 차이는 의미를 지니며, 그런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 자체도 학술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분석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 및 정책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국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원인분석에 의미를 둔다면 양국 간의 여건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소득분배 및 재분배 구조에 대한 조세/편익(수혜)분석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한 것은 Barnard(2010)로 2008/09 회계연도의 조세·수혜부담 구조에 대한 추정결과를 담고 있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7]은 영국의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수혜분포를 계층별로 결합하여 보여주고 있다.

조세부담·재정지출 수혜에 대한 국제비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표 2〉 영국의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수혜 분포(2008/09회계연도 · 균등화소득 순위 기준)
(단위: 지니,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상대비
Original income												
Wages and salaries	2,615	3,955	6,501	11,180	14,285	21,819	26,271	34,708	43,892	67,979	23,320	26.00
Imputed income from benefits in kind	.	.	18	19	39	184	340	376	655	1,229	286	
Self-employment income	464	587	708	777	1,191	2,295	2,495	3,235	5,070	13,623	3,044	29.36
Occupational pensions, annuities	356	1,117	1,588	2,148	2,564	2,726	3,005	3,674	3,533	5,264	2,597	14.79
Investment income	206	274	286	366	493	600	804	1,069	1,592	4,451	1,014	21.61
Other income	129	236	164	288	134	281	329	337	217	116	223	0.90
Total	3,769	6,170	9,264	14,777	18,706	27,905	33,243	43,399	54,960	92,660	30,485	24.58
Direct benefits in cash												
Contributory												
Retirement pension	1,844	2,793	3,564	3,283	3,067	2,391	2,146	1,620	1,051	985	2,274	0.53
Job seeker's allowance(Contribution based)	83	65	36	6	11	12	1	.	1	.	21	
Incapacity benefit	367	460	336	309	245	194	193	112	37	22	228	0.06
Widows' benefits	6	39	15	25	21	3	23	.	.	20	15	3.33
Statutory Maternity Pay/Allowance	.	20	70	35	36	92	130	168	144	200	89	
Non-contributory												
Income support and pension credit	594	952	718	606	514	384	359	69	31	2	423	0.00
Child benefit	512	453	535	409	449	473	408	378	287	257	416	0.50
Housing benefit	802	1,005	928	917	676	386	284	27	26	24	507	0.03
Job seeker's allowance(Income based)	121	116	41	6	3	11	17	9	.	.	32	
Invalid care allowance	53	77	109	151	61	52	20	13	32	8	58	0.15
Attendance allowance	14	9	64	63	91	41	55	53	14	11	42	0.79
Disability living allowance	165	265	373	622	525	559	407	140	188	25	327	0.15
War pensions/War widows' pensions	.	.	9	3	8	46	36	1	5	7	11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24	45	22	61	68	45	33	35	20	.	35	
Industrial injury disablement benefit	3	5	22	38	33	19	29	21	4	4	18	1.33
Student support	147	107	134	84	73	49	27	48	18	5	69	0.03
Government training schemes	6	12	4	3	0	1	6	0	0	1	3	0.17
Taxcredits ¹	601	794	795	471	444	227	86	97	21	28	356	0.05
Other non-contributory benefits	108	195	168	170	159	105	90	79	50	84	121	0.78
Total cash benefits	5,449	7,413	7,940	7,263	6,484	5,090	4,349	2,869	1,929	1,681	5,047	0.21
Gross income	9,219	13,583	17,204	22,040	25,190	32,995	37,592	46,268	56,889	94,341	35,532	10.33
Direct taxes and Employees' NIC												
Income tax	306	593	1,005	1,700	2,311	3,650	4,494	6,348	8,855	17,306	4,657	56.56
less:Taxcredits ¹	24	104	253	249	282	236	185	122	66	19	154	0.79
Employees' NI contributions	138	216	413	765	987	1,596	1,971	2,661	3,367	4,191	1,631	30.37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²	1,053	1,034	1,054	1,105	1,138	1,209	1,211	1,303	1,320	1,573	1,200	1.49
less: Council tax benefit/Rates rebates	300	371	280	213	180	101	69	17	12	4	155	0.01
Total	1,172	1,368	1,939	3,108	3,973	6,118	7,423	10,172	13,463	23,047	7,178	19.66
Disposable income	8,047	12,214	15,265	18,933	21,217	26,876	30,169	36,096	43,425	71,294	28,354	8.86
Equalised disposable income	7,741	12,187	14,953	17,556	20,360	23,550	27,538	32,739	40,957	71,408	26,899	9.22
Indirect taxes												
Taxes on final goods and services												
VAT	1,101	1,085	1,295	1,562	1,609	1,927	2,155	2,616	2,871	3,747	1,997	3.40
Duty on tobacco	288	310	317	320	295	341	286	311	235	251	296	0.87
Duty on beer and cider	65	72	73	114	89	115	130	152	199	178	119	2.74
Duty on wines & spirits	85	95	109	129	133	146	176	240	251	348	171	4.09
Duty on hydrocarbon oils	255	216	283	384	390	467	555	656	702	722	463	2.83
Vehicle excise duty	94	73	90	121	129	165	172	195	207	227	147	2.41
Television licences	110	102	107	106	108	120	119	126	129	132	116	1.20
Stamp duty on house purchase	39	24	33	45	50	62	82	114	129	279	86	7.15
Customs duties	21	20	22	25	26	30	32	36	40	51	30	2.43
Betting taxes	14	27	32	34	34	43	37	48	67	29	36	2.07
Insurance premium tax	25	22	27	34	39	45	49	62	67	86	45	3.44
Air passenger duty	19	10	22	21	30	31	49	83	103	119	49	6.26
Camelot National Lottery Fund	25	42	59	60	62	63	56	51	51	37	51	1.48
Other	7	5	4	5	3	12	53	34	62	27	23	3.86
Intermediate taxes												
Commercial and industrial rates	179	170	194	220	229	261	273	316	351	441	264	2.46
Employers' NI contributions	320	304	346	393	408	466	487	563	626	787	470	2.46
Duty on hydrocarbon oils	105	100	114	129	134	153	160	185	206	259	155	2.47
Vehicle excise duty	9	8	9	11	11	13	13	15	17	21	13	2.33
Other	144	136	155	177	183	210	219	253	281	354	211	2.46
Total indirect taxes	2,904	2,820	3,292	3,892	3,964	4,668	5,104	6,054	6,613	8,095	4,741	2.79
Post-tax income	5,143	9,394	11,973	15,040	17,253	22,208	25,065	30,042	36,812	63,199	23,613	12.29
Benefits in kind												
Education	3,419	2,602	3,168	2,521	2,610	2,792	2,195	2,065	1,732	1,221	2,433	0.36
National health service	2,953	3,237	3,452	3,298	3,141	3,077	2,809	2,820	2,280	2,119	2,899	0.72
Housing subsidy	31	38	37	29	28	15	14	9	4	2	21	0.06
Rail travel subsidy	33	37	17	23	25	40	68	56	88	157	55	4.76
Bus travel subsidy	73	78	87	92	78	79	63	86	49	86	77	1.18
School meals and welfare mix ³	70	60	63	34	37	15	9	6	1	1	30	0.01
Total	6,578	6,052	6,825	5,998	5,920	6,017	5,158	4,841	4,154	3,585	5,513	0.54
Final income	11,721	15,447	18,798	21,038	23,173	28,225	30,222	34,883	40,967	66,784	29,126	5.70

주: 가구별 소득순위 및 그에 기초한 소득계층의 구분은 균등화소득(equivalized income)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산출한 것임. 균등화소득이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한 가구규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교단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규모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가중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균등화시킨 것을 나타냄. 소득계층은 균등화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소득의 상대소득격차가 상기의 경우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남.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나타낸 〈표 1〉의 경우에는 균등화소득 순위가 아닌 일반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이 배열되어 있음. 이상의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원자료(Barnard, 2010)를 참조하기 바람.

자료: Baranard(2010)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혜가 평균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분위는 1~6분위이다. 7~10분위는 순수혜가 (-)의 값을 가져, 조세부담이 수혜액보다 더 크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1~6분위이고, 7~10분위는 순부담이 양(+)의 값을 가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양국 사이에는 인구구조나 조세부담률, 재정지출 구조 등이 확연하게 다르지만 수혜부담 분포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즉, 하위 60%의 가구가 부담보다 수혜가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순수혜 곡선의 기울기(절대값 기준)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다. 이는 양국가 간의 인구구성비(인구구조) 차이, 조세부담률 차이, 재정복지제도(폭)의 차이, 복지제도의 성숙도 차이 등에 기인한다. 이 중에서 인구구조의 차이가 복지제도 성숙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 부담 또는 수혜의 10분위 배율을 보면 양국 간의 조세부담·수혜의 누진도(또는 역진도)에 대한 비교가 흥미롭다.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을 살펴보자. 영국은 그 배율이 24.6으로 우리나라의 15.3보다 월등히 크다. 이는 시장소득 단계에서의 상대소득불평등도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크다.

조세부담의 10분위 배율은 영국이 12.4(=£34,290/£2,774)로 우리나라의 22.4(=1,648만원/736만원)보다 훨씬 작다. 수혜(편익)의 10분위 배율은 영국이 1.1(=£9068/£8,388)로 우리나라의 1.5(=707만원/482만원)보다 조금 작다³⁾.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가구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조세부담 구조를 놓고 보면 영국의 조세부담 10분위 배율이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보다 낮아 세부담의 역진성이 일부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인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복지수혜 비중이 큰 영국에서 조세부담 구조를 결정할 때 세원 분포가 광범위한 세목(예: 부가가치세)의 비중(또는 세율)을 높게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국 조세부담의 10분위 비율(12.4)은 우리나라의 2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가 영국보다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수혜(편익)의 경우에는 10분위 배율이 양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장소득 대비 수혜액의 비율이 영국에서는 34.6%(=£10,558/£30,485)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조세부담의 10분위 비율(12.4)은 우리나라의 2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가 영국보다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지출을 제외하면 수혜의 10분위 배율이 0.74로 영국보다 작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재정지출 정책이 조세의 경우 보다 훨씬 더 비용절약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6.4%(=1,595만원/3,619만원)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표 3〉 우리나라와 영국의 10분위 배율(한국-2009년, 영국-2008/09회계년도 기준)

(단위: 파운드, 천원, 배)

		1분위(A)	10분위(B)	상대비(B/A)
시장소득	영국(£)	3,769	92,660	24.6
	한국(천원)	5,767	36,191	15.3
조세부담	영국(£)	2,774	34,290	12.4
	한국(천원)	735.5	16,478.5	22.4
재정지출 수혜	영국(£)	8,388	9,068	1.08
	한국(천원)	4,824	7,065	1.46
	(교육급여 제외시)	(4,447)	(3,298)	(0.74)

나.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그림 5]는 주요국에서 조세와 재정지출(현금급여만 대상)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기준)를 비교하고 있다. 간접세와 현물급여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통계는 우리나라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세와 현금급여만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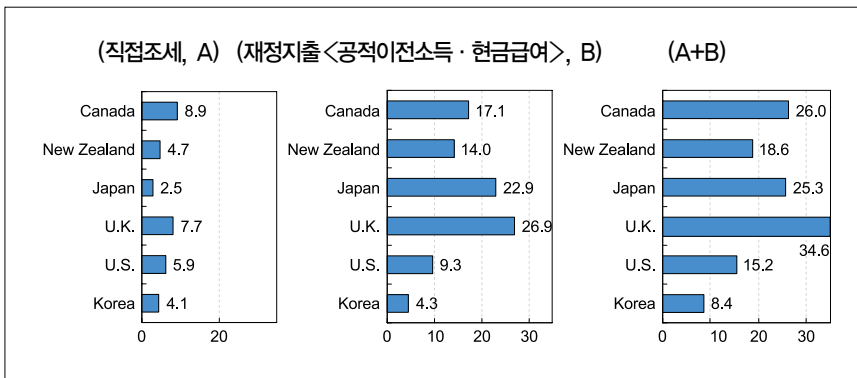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경우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재정지출 항목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조세의 경우에는 무차별성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재정지출 정책이 조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비용절약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계속 진전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중이 더욱 확대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의 유용성을 지닌 소득세 등의 세수비중과 세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소득계층별 수혜분포의 상대구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혜액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컸던 점을 감안하면 재

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증감은 재정지출 상대분포뿐만 아니라 절대 규모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누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누진구조도
영국보다 더 크다.

[그림 5]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주: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백분위 변화율로 측정하였음.
 자료: 미국(2005년 기준)-U.S. Census Bureau (2007)
 영국(2006/07년 기준)-Jones (2008)
 일본(2005년 기준)-노동후생성(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2007)
 캐나다(2005년 기준)-Statistics Canada (2007)
 대한민국(2009년 기준)-저자 추정치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일반 가계에서 노동/자본의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의 분포와 가족·친지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민간)이전소득을 비롯하여 각종 조세 및 재정지출의 계층별 분포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과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누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누진구조도 영국보다 더 크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수혜(편익) 분포는 소득계층별로 다소의 격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득계층별 수혜 절대액의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한 분포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부담과 재정지출 수혜를 합산해 본 결과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에서 하위 60% : 상위 40%의 비율로 순수혜가구 : 순부담가구가 구분되어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지출 모두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이는 부담·수혜의

향후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개편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세 수입지출 수준뿐만 아니라 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별 분포 구조가 선진국과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기보다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수혜 비중이 작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정책이 소득재분배만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재분배의 잣대 하나만으로 정책방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조세부담 재정지출 수혜의 계층별 상대구조(누진도/역진도)보다는 절대규모 또는 GDP 대비 비중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인구의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가 현 시점에서 작게 나타날 뿐이며 장차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지출규모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향후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개편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세 수입지출 수준뿐만 아니라 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KIPF

<참고문헌>

성명재·박기백,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09-01, 한국조세연구원, 2009(A).

_____,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2009(B), pp. 5~37.

Barnard, Andrew,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8/09,” *Economic & Labour Market Review*, Vol. 4, No. 7, 2010, pp. 36~47.

Hyslop, Dean and Suresh Yahanpath,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New Zealand Treasury, 2005.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Unpublished Manuscrip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Report on Income Redistribution 2005*, Japan, 2007.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Paris, 2008.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2005*, 2007.

Sung, Myung Jae and Ki-baek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7, No. 2, 2011, pp. 345~363.

U.S Census Bureau, "Th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on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5," 2007.

2011 세법개정안

- 2011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임재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2011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1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1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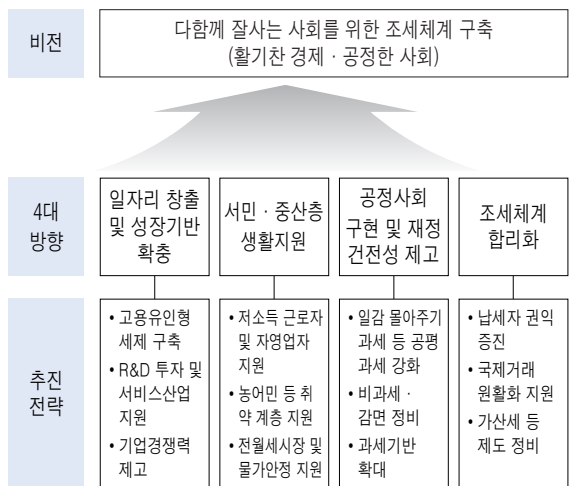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11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기본 방향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상황도 상반기 중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경기의 호전이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에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고,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인식하에 불리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II.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그동안 상시적으로 운용되어 투자 유인효과가 적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즉, 투자금액의 5%, 6%를 공제하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나, 고용 유인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4%(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3%)를 공제하고, 이와 별도로 고용증가 인원 수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2%를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13년 말까지)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청년 근로자(만 15~29세)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100%, 청년 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5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현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즉, 현재는 R&D세액공제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등 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서비스 R&D”로 규정하여 R&D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이 R&D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일반 R&D세액공제 대상은 자체·위탁 R&D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재위탁 R&D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총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인하였다.

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태양광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고,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201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또한,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

가·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1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바.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즉, 공제율을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40%에서 100%로 상향하였고, 공제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요건이 현재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나,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2012. 3. 2부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되는 '농협 구조개편'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농업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 목적임을 감안하여,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금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면제 등 특례를 도입하였다. 또한, 구조개편 이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세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 이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보험으로부터 받은 농협명칭 사용료와 전산용역 이용료 면세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되나, 2012년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그간의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최대 2,500만원)과 최대지급금액(최대 180만원)을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였다.

나.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 25%(직불·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을 30%로 인상하였다.

다. 농·어민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5년, 2014년 말까지 연장하였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다. 또한, 영농종사자가 2년 이상 영

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받은 농지 등 가액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전·월세 가격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지원¹⁾ 요건(주택 수: 수도권 3호 이상, 지방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중 주택 수 요건을 전국 모두 1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²⁾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마.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세대1주택에 한해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3%,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확대 및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근로자의 86%)로 확대하였고,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³⁾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하였다.

사. 물가안정 지원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및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약 4%p 인하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다.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최근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부담 없이 부가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방법 등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는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1)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2)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 :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11년 시행)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양도세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나.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 등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위탁체납액의 범위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및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예정대로 2012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되,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라.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국가·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의 이자를 비거주자 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세하였으나,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전환하였고, 내국법인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하였다.

마. 비과세·감면 정비

금년 말에 일몰 도래하는 42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지원목적을 달성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효성이 미미한 바이오디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0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였다.

4. 조세체계 합리화

가.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등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이 국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달리 결정하여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나.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조세조약 체결국은 100%, 미체결국 50% 공제하고 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에 맞추어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하도록 개선하였다.


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여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통합·단순화하면서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다른 경제관련 법령의 개정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라.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 연 급여 \times 1/10 \times 근속연수 \times 3)를 도입하고,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Ⅲ.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효과

금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총세수효과는 3.5조원 증가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0.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1.0조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Δ 0.23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Δ 0.14조원) 등이다.

이를 세금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이 3.8조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0.3조원 감소하는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되 서민·중산층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된 후 9월 말 금년도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공생발전(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을 지원하기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201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기본방향별 주요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I. 2011년 세법개정안의 배경,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매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배경이 되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적인 경제상황을 보면¹⁾, 선진국의 경우 일본 대지진 및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및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미국 및 유로 지역의 더블딥²⁾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재완 장관이 ‘2011년 세법개정안 모두 말씀’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이나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는 현재 양호한 상태로 파악된다. 다만, 호전된 국내 경기지표가 서민·중산층의 경제여건 개선으로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폭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연간 목표치(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경기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 송호신, 「향후 경제·재정여건 및 재정정책 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2011

2) 더블딥(double-dip)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말한다.

이런 대내외 경기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물가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넷째,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조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이상의 기본방향 하에서 마련된 세법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4년간 세수가 약 3.5조원 순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기본방향별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은 고용창출 및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고,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추진전략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창출 및 고용유인형 세제 구축에는 고용과 세금지원을 연계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일원화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5%³⁾를 적용한 뒤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세액공제로 1% 추가공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만 4%⁴⁾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이 늘어날 때만 해당 인원에 비해해 2% 추가공제가 허용된다. 단, 고용증가인원마다 1천만~2천만원의 세액공제한도⁵⁾가 적용되고, 고용증가인원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추가공제분은 향후 5년 내에 이월공제가 된다. 한편,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으로 인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부담금을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⁶⁾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이밖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에서 자동화시설 등 고용대체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들이 존재한다.

R&D·서비스 산업 지원에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위탁·재위탁 R&D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경쟁력 제고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3) 이는 중소기업 및 수도권 밖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준이며, 수도권 내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4%만이 세액공제되고 있다.

4) 이는 중소기업 및 수도권 밖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준이며, 수도권 내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만이 기본공제될 예정이다.

5) 기존의 세액공제한도 규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 1천만원, 청년 근로자 1.5천만원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마스터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인상하고 있다.

6) 청년이라 함은 만 15~29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적용연령은 35세까지 확대된다.

금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상속재산의 공제제도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의 40% 공제에서 100% 공제로 확대된다. 공제한도의 경우 기업영위 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100억~500억원으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⁷⁾. 단, 기업상속공제의 전제가 되는 고용유지 조건은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에도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⁸⁾.

2.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서민·중산층 생활지원의 추진전략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주거 및 물가의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에 포함된 세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여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및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우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에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연장

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주거 및 물가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먼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서민밀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들어 있다.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공정과세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정과세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칙적인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

7) 기업영위 기간이 10~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20년 미만은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8) 현행 세법의 고용요건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상속 연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요건을 유지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이상을 유지하는 고용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이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만족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밖에도 공정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국세 징수업무 중 재산조사 및 체납액 납부 요청 등의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며, 조세범 처벌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는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면세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일부 과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개선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치 등이 존재한다.

4.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납세자 권익 증진,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기타 제도 정비로 구성된다.

먼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에는 개인사

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과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등이 있다.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확대,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포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방안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비하는 방안, 가산세제도 보완 방안,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5. 세수증가 및 세부담 귀착 효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한 향후 4년간의 세수 효과를 총 3.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세수 증가요인에는,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2.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0.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0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총 4.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세수 감소요인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0.2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조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총 0.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부담 귀착 효과에 대하여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이 3.8조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0.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총계	'12년 발생	'13년 발생	'14년 발생	'15년 발생
소득세	-	△0.3	0.3	△0.1	0.1
법인세	3.3	1.3	2.0	-	-
상속증여세	0.1	-	0.1	-	-
기타	0.1	0.1	-	-	-
합계	3.5	1.1	2.4	△0.1	0.1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II.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의 경제상황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제국의 경기침체 지속 및 물가 불안 등으로 내년도 경기는 기존 전망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실제 경기지표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의 제고 등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별 주요 이슈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방안들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이 이루어져도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에 기인한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 지원보다 고용창출·유지 지원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황기의 투자 유인효과가 낮고, 오히려 세수손실 규모는 매우 크지만 그 혜택은 제조업종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년간 동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폐지하지는 못하였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축소한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용증가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이 당초안보다 1%p씩 낮아진 점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더 지원하려는 정책 의도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편,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⁹⁾, 전체 R&D 지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9) OECD Factbook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7%로 일본 70.1%, 미국 76.9%, 영국 76.1%, 독일 68.9%, 프랑스 77.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중은 2000년 10.46%에서 2008년 7.86%로 오히려 낮아진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R&D 지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R&D 세액공제제도는 적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행한 연구개발 관련 모든 경비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지원이 과도하다고 지적되어 왔다¹⁰⁾. 따라서 R&D 세액공제를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동일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과도한 지원의 문제와 이를 통제하려는 행정비용 간의 경중을 가늠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방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위 기간이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상속세가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500억원 한도) 면제해 주는 점은 부의 무상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하는 방안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고용유지 요건을 부과하고, 법인 주식 상속시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엄격하게 동 제도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단 순히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

로 경영권을 직계존속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 잣대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큰 만큼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를 승계하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서민·중산층 생활지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 정도는 미약하고, 내년도 경기가 올해에 비하여 하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서민·중산층 생활지원을 위한 조치 중 일부의 경우 제도적 보완 및 근본적인 제도운영 전환이 요구된다.

먼저,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연장한 조치의 경우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 제도 및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협력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간이과세자 제도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 세부담자는 최종소비자라는 부가가치세의 속성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간이과세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 제도가 납세편의보

10) 미국·캐나다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별 연구개발 활동이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advancement)'를 이룩하였는지가 적격연구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다는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편의뿐만 아니라 세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여금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탈세행위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부가가치율과 근사(近似)하게 설정하여 간이과세자 제도의 목적을 납세편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측면이나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재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동 조치의 목적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제의 내재된 문제점인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의 접근이 아닌 양도소득세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중과완화 조치는 일몰연장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추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는 조세제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동 기본방향하에서 추진되는 개정안들은 그 도입 목적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안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 경제활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그리고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가 상속·증여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란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이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면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의 경우,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떤 과세방안¹¹⁾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이익 산정과 관련된 위헌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한 헌법적 허용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제도 도입은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이는 체납징수업무

11)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하고 있다.

의 민간위탁이 사전적으로 그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국세행정의 효율성 및 국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위탁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회사로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일 다양한 민간회사 중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단순히 비용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평판도 및 공신력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납세자 권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탁체납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한 체납사건은 세액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국세청이 한정된 자원으로 그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한정된 자원을 고액·상습 체납사건에 집중하는 반면, 소액·단순 체납사건에는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체납사건은 체납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소액의 단순 실수에 의한 체납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소액체납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효과적인 징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소액체납사건도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가산금 등의 벌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의 합리화라는 기본방향 아래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조치가 정말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신고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업무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전자신고를 활용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업무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신고의 관행이 정착되고 전자신고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자신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편익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과세관청은 전자신고 과정 및 절차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6조에 규정된 결손처분 규정은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 규정이 폐지되는 경우 결손처분에 대한 세무담당자의 재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손처분 전에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체납사건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¹²⁾.

12) 현행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다.

Ⅲ. 맺음말

금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책목적 달성이라는 실효성 관점에서 보면 의도한 정책효과를 보다 가시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없는지, 제시된 방안 중에서도 세부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지 않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KIPF**



정책토론투리포트

■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제행정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제행정의 역할과 과제
• 일 시	2011년 8월 23일(화) 오전 09:30~12: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진행순서	
09:30~09:50	개회식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축 사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현동 국세청장
09:50~11:50	세션 I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20층 국제회의장)』
	발제 및 토론
▶ 사 회 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발 표 자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입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
▶ 토 론 자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오제세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50~12:00	질의 및 답변
12:00	폐회
09:50~11:50	세션 II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19층 기자회견장)』
	발제 및 토론
▶ 사 회 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 표 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방향』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신중·첨단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 토 론 자	김성곤 국회의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옥무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종구 국회의원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차태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11:50~12:00	질의 및 답변
12:00	폐회

(가나다 순)

* 본 원고는 2011년 8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이 주관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제행정의 역할과 과제」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세션 I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주제발표 요약

I.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이전오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최근의 환경 변화

- **(조세환경 변화)** 중장기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신종 탈세가 지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납세자 인식 전환)**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 시민의 위상 변화 (소극·수동 → 적극·참여)

2 새로운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

- **(전통적 조세개념)** 국가가 재정조달 목적으로 고권적(高權的) 지위에서 국민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하는 금전
 - 민주적 조세체계의 확립에도 과거 조세개념을 답습하는 경향
- **(新 조세개념 정립 필요)** 변화된 세정환경과 선진 납세의식에 부합

납세자의 위상과 세정 가치의 변화

구분	19~20세기 산업화 사회	21세기 선진·민주사회
납세자 위상	객체	주체
과세관청 vs 납세자	수직적, 대립관계 (개인주의적 관점)	수평적, 협력관계 (공동체주의적 관점)
세정 목표	재정수입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세정 가치	징수효율화 & 고객 만족	납세자 권리와 책임의 균형

- **(새로운 조세개념)**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자율적 의사로 국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평등하게 납부하는 것
 - ☞ 조세를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대가로 파악

3 새로운 조세개념의 함의와 정립방향

- **(함의)** 새로운 조세개념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출발점이자, 세정의 변화 동력이며 성실납세의식의 토대
- **(정립방향)** ‘국고주의’ 관점에서 ‘국민주권주의’ 관점으로 전환
 - ‘납세의무’ 시각 → ‘시민의 권리·책임’ 시각
 - ‘일방적 희생’ → ‘공공서비스 혜택과 자유·권리에 대한 대가’
 - 미래지향적 인식, 조세중립성 유지, 세금낭비에도 관심 제고 필요

4 납세자 중심 조세개념의 정책적 시사점

【세제 측면】

- **(세법의 정비)**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최소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세체계·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 필요
- 조세법 구조·편제 개편, 예규·판례의 체계적 법령화,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등 세

법 다시 쓰기(tax law rewrite) 필요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부담능력에 따라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등 예외 최소화
- **(근거과세 정착)** 기장문화와 배치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추계과세의 남용 방지 필요
-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배)** 납세자 권리와 의무,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권한과 책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합리적인 입증책임 배분에 대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원칙과 운영방안 모색 필요
 - 불성실 납세자가 납세정보의 은닉·폐기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보다 유리해지는 불공평과 도덕적 해이 차단
- **(조세구제제도 개선)** 민사·가사·행정사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시범운영 필요
 - 중장기적으로 과세전적부심 등 행정심을 조세조정제도로 전환

【세정 측면】

- **(일률적 납세서비스 개선)** 다다익선(多多益善)식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적 서비스 제공
- **(세무상담제도 개선)** 세무상담은 세무전문가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 답변
- **(세무조사 역할·기능 평가)** 공권력 수단이 아니

라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검증 장치라는 긍정적 인식 확산 필요

- 권익보호 강화, 적정 조사비율 유지, 금융정보 접근 권한 확대
- **(세무대리인 위상 재정립)**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수입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대리인 책임 강화

II.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

신호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조세법의 이념과 납세자의 행위 양태

- ① **공정과 정의의 실현도구로서의 조세법**
 - **(조세법의 이념)** 조세는 경제적 정의·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정치시스템(국민의 정치활동 결과)에 의하여 확인·주장되는 정의·공정의 이념을 포함
 - **(조세법의 행위규범성)** 조세법은 재판규범의 성격보다는 납세자의 행위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행위규범의 성격이 강함

② 납세자의 행위 양태

- **(조세회피성향)** 납세자는 행위형성 자유를 가지나 경제행위 선택시 세부담 회피 방향으로 행위를 형성하는 경향('09. 소득탈루율; 37.5%)
- 조세순응의 확보는 가능한 한 납세자의 가장 빠른 행위단계에 초점을 두고 언젠가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시스템화하여 조기에 왜곡 시정

2 증명책임 분배질서의 재정립 방안

1 증명책임 배분 구조의 조정 필요성

- **(납세자 행태 고려)** 납세자는 신고시 검증·제재·다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의 취사선택·생산·은닉
- **(신고납세제도의 취지)** 신고납세제도는 조세부담의 공평과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자료유지 및 제출이 반드시 필요
- **(증명책임 분배 기준)** 공평한 조세부담(규범이론)·원활한 재정확보(수정이론) 이념 반영, 경제권력에 의한 불공정행위·질서 왜곡 시정
- **(재정립 방향)**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납세자가 자료의 은닉·폐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2 구체적인 증명책임 분배 재정립 방안

- **(입법 필요성)** 현행법하에서 납세자가 증명책임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해석이 가능하나, 판례변경은 장래 실현가능성이 희박
 - 현행 과세관청의 일방적 증명책임 부담은 조세법 목적 훼손 및 조세순응 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시 판례의 형성 없이도 과세관청 및 납세자에게 명확한 행위지침 제공 가능
- **(구체적 입법론)** 규범이론을 일반규정으로 두고, 국제거래, 거래상대방이 무자력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실질 다툼,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증거편재 사례) 등을 증명책임의 특별규정으로

로 제정

- **(불성실 납세자만 전환)** 자료의 은닉, 조사 비협조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미국식은 입법만으로 가능
 -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지만, 증거법 체계 등이 상이한 영미식 증명책임을 도입하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필요

3 결론

- **(신고납세제도)** 민주적 제도로서 자율적 선택으로 성립된 조세실체법·절차법에 녹아 공정과 정의의 이행을 예정
 - 정부의 세무조사는 다수의 공익 실현을 위한 검증절차로, 자료의 유지 및 조세절차 내의 제출은 공정을 구현하는 데 필수
-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 자료의 은닉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
 - 증거편재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자료를 통제하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

토론 요약

간이과세제도 폐지 필요

김형상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국민개세주의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필요
 - 과세투명성 사각지역은 일반과세자에 대한 거래 내역 누락으로 이어져 과표 양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무행정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무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부족, 납세주권자로서 납세자의 책임강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정업무의 일부를 세무사 등 민간에 위탁
- 증명책임 분배는 납세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거래 · 자료은닉 · 조사비협조 납세자에게 우선 적용

입증책임 전가, 납세자 권익 침해

홍기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판례에 따르면 완전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무조건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님
- 살인자도 고백할 의무가 없듯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숨길 수 있는 것이며, 입증책임 전가는 납

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임

- 강제외부조정제도, 여러 단계의 조세불복제도도 권익 침해 소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오제세 / 민주당 의원

- 공평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정보공개 확대와 업그레이드가 필요
-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인식전환 요구
-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보다 많이 벌고 잘사는 사람이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느냐 하는 ‘과세 형평’의 문제로서
 - 고소득자 등 경제적 강자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탈세를 하지 않는 풍토 조성이 공정세정의 최우선 순위

세금에 대한 바른 교육 필요

김세형 /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 인구의 감소, 연금, 의료 · 건강보험 등을 감안하면 세금징수를 통한 재정확보가 중요하므로 그

런 의미에서 포럼은 시의적절

- 성실납세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단계에서부터 세금에 대한 바른 가치관 교육 필요
- 일정 규모(예:1억원) 이상이면 조세소멸시효를 없애야 함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세율로 감세하자는 주장은 현 시대상황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음
- 국세청도 세무조사 관련 사항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위직 등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국세청, 전문인력 양성 필요

유일호/한나라당 의원

- 증명책임을 납세자쪽으로 옮겨 주는 것에 대해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맞음
 - 다만, 일반납세자의 경우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 고액 소송의 경우 국패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 등의 고용으로 납세자의 정보가 과세관청보다 나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전문인력 양성 등 노력 병행 필요

국제거래시 납세자 증명책임 바람직

이종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거래의 경우 자료 파악에 있어 국세청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이 바람직
-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송금거래자료는 어차피 정부가 가진 정보인데 국세청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손해이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금융·부동산실명제, 인터넷 보급,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DB구축 등으로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납세환경이 조성
 -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의 DB화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재판시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증명책임 문제는 법제상 어느 쪽에 부여하는지 명백하지 않음
 - 증명책임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에게 지우자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있으나, 납세자 권

리 보호·근거과세원칙 위배 소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불성실한 납세자에만 적용

세션 II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주제발표 요약

자료 접근 어려운 경우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부여

김덕중/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성실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과세관청의 자료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부여
- 증명책임은 납세자 행태, 문화, 조세제도에 큰 영향
- 신고납부제는 납세자의 자율과 책임이 전제되어 세금을 내는 시스템으로서 증빙이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납세자가 감내해야 함

I.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 방향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세정환경 진단과 현행 과세인프라의 문제점

- 현행 과세인프라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공받아 이를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임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아직도 소득탈루율이 높은 수준이며, 자료상, 무자료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의 한계

2 정책 대안

1. 제도적 측면

①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구축

- 금융정보와 실물거래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1) 금융정보분석원 보유자료의 일괄 활용체계 구축
 -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CTR자료와 STR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2) 금융기관 보유 자료를 활용한 거래내역 검증

체계 구축

- 과세관청이 세원관리 목적상 필요시 사업용 계좌와 비사업용 계좌(협회가 있는 경우)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 (3) 미국식 '사업자의 현금수취거래 보고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고액현금거래는 자금원천이 불법이거나 수입 금액 누락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과 같이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마련

2 기타 제도 개선 방안

-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추계과세 요건에 포함하고, 추계과세 후 소송과정에서 장부 등을 제시하는 납세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화, 순자산증가법 등 추계요건을 다양화
- 탈루율이 높은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및 면세사업자의 매입자발행 계산서제도 도입 필요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자료를 세정에 활용하고,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지 납세실적 비중을 확대

2. 세정 측면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를 납세자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GIS 등을 활용한 세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혜택과 사용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등 활성화 노력 필요
-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다양화하여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세금계산서제도 개편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소화, 합계표 제출 폐지 등 불필요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II. 신종·첨단 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1 탈세의 새로운 형태와 세무조사 성과

- 경제의 글로벌화, 금융·IT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탈세의 행태도 맥을 같이하여 변화(골드뱅킹, 엔화스왑, 사모펀드 등)
 -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새로운 거래형태도 지속 창출
- 국세청은 '10년 18,156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5조 1,324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가운데
 - '09년 이후 주요 조사분야로 역외탈세를 선정하고 국제공조, 제도, 조직, 예산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



2 주요 외국 과세당국의 탈세에 대한 접근방법

- 미국, 일본 등은 첨단탈세에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세무조사 조직을 납세자 유형별로 특성화하여 구성
- 미국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과세에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미국 은행비밀법의 기본 취지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
 - 미국·호주의 경우 과세관청이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CTR) 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
 - 미국·일본 등은 해외자산 파악에 유용한 역외 계좌·외환거래 정보의 보고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여
 - 독일은 과세자료가 납세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경우 과세 관련 정황의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입법

3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대응방안

-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의 신설 필요
 - 소관 정규조직이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탈세 유형별 접근과 선제적 대응이 곤란
- 조사대상 선정시기 시행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 비율의 차별화 필요
 - 정기조사에서도 탈세 성향이 높은 납세자 그룹에 집중
- 현행 금융거래확인 등으로는 현금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정보

접근 관련 제도개선 필요

- 특히, 과세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고액 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이용하는 방안 고려
- 금융실명법 위반시 처벌조항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
 - 현행 금융실명법은 실제 계좌의 주인에게는 실명거래를 의무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
-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
 - 과세근거자료가 납세자의 관리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치우치면 성실납세 유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 부족

토론 요약

고액현금거래자료 국세청 접근 가능해야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미국 등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내주식시장·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건전재정 유지가 필수
-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세수입 보전 차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고액현금거래는 탈세의 원상으로 국세청이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IU측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하며, 국세청이 이를 통해 역외탈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상속·증여 탈세를 막아야 함
- 현재 FIU가 관장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를 국세청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임

납세자에게 일부 과세분야 입증책임 부여해야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재정건전성 제고는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이 확보한 고액현금거래자료의

과세관청 활용이 절실

- 국세청이 동 자료를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방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
- '96년 신고납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이 짐을 과다하게 짊어지고 있으며, 외국사례를 참조해 납세자에게도 일부 과세분야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해야 함

자산·생산 경제 간 불공정 개선 요구

김성곤/민주당 의원

- 고액현금거래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에 찬성하나, 오·남용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필요
- 2000년 들어 우리나라의 자산경제 규모는 7천조원, 생산규모 경제는 1천조원인 반면, 조세수입은 자산경제의 18~20%, 생산경제의 80%가 넘고 있는바
 - 자산·생산 경제 간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세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불공정을 고치는 것이 공정세정의 방향임

세무조사의 양적 증가 필요

안경봉 / 국민대 법무대학원장

- 세무조사의 양적 증가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세무조사시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되어야 함
-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불과 1% 미만으로, 결국 99%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납세자가 가진 무기가 국세청과 대등한지에 대해 의문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해야

옥무석 / 이화여대 교수

- 전자상거래, 신종금융상품, 국경 없는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국세청의 적절한 대응 필요
- 이제까지 대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와 관세를 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관세분야와의 협력도 중요
- 국세청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 세무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사전답을 활성화하는 등 국세청의 이미지 개선 필요

FIU · 금융기관 자료 징세에 활용해야

이철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 FIU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를 징세에 활용하는 방안이 동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제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정세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무서운 국세청’, ‘조용한 국세청’, ‘홍보하지 않는 국세청’이 공정세정 구현에 있어 바람직

TIS 활용 능력 길러야

차태균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TIS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 직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

입증책임 납세자 전환시 합리적 과세 가능

박윤준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FIU 정보공유는 자료제출권 요구가 아닌 이미



확보된 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민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님

- CTR(고액현금거래자료)은 현금경제와 지하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꼭 필요
-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추정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면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음 **KIPF**

공공정책포럼



■ 제20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경제 10대 Shocks

제20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한국경제 10대 Shocks
- 일 시 2011년 8월 30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토랑 그랜드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8월 30일 서울 팔레스토랑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10대 Shocks」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0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배국환 감사위원은 큰 그림을 보는 데 적합한 배경을 가진 분으로 개혁의 선봉에 서서 일해 오시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책과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현재 한국경제가 어디쯤 와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고 나서 현안 문제를 봐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한국경제 10대 Shocks: 20년 전후

배국환/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한 지 2년이 되었다. 경제 부처에서 감사원으로 오니 이미 행해진 뒤의 일만 하고 있어 재미가 있지는 않다. 오늘은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압축해서 한국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주제 선정의 이유는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 과거와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속성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현상을 알아보기 쉽도록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준 것들을 동태적 관점에서 진행된 사항들과 앞으로 20년간의 트렌드 변화를 정리했다.

과거 20년을 돌아봤을 때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발 쇼크(China Shock)이다. 개방 이후 중국은 현재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중국의 트렌드나 변화가 한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는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부정적 요인도 있다. 즉 중국의 발전 속도에 맞춰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유지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두 번째는 IMF 쇼크로,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가 시절의 관치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경제가 세계 표준(Global standard)화되었다.

세 번째는 레프트 쇼크(Left shock)로 좌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붉은 색깔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된다고, 진보신당이 국회로 진출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정책, 햇볕정책, 부동산정책 등으로 한국경제의 패턴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고 보수정권으로 회귀하는 등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선진국 반열로 올리게 되는 계기로 IT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일반화되고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비대칭 문제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불균형성이 나타났다. 디지털화로 인한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거부반응도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shock)로 현재도 진행중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방주사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에 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6년에 미국인들은 금융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뒤늦게 2007년에 펀드 열풍이 불었다. 즉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금융인을 키워야 한다. 금융인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국

가채무와 관련해서 과거에 채무가 GDP의 25%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으나 현재 30%대임에도 크게 언급이 없다.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이나 일본 등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의 채무비율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금융의 시대에서 금융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재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내다봤을 때 첫 번째 쇼크는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존재했으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이 부상하면서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원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개발 국가는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저개발국가도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원 문제가 이슈가 되며, 한정된 자원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도 자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기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희토류 문제는 중국이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소프트파워(Softpower)로 앞서 금융인 10만 양병설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도 10만 양병설이 필요하다. 국가든 민간이든 이를 위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문이나 산업기술이 융합화되고 있고, 관료사회나 민간기업의 임원진에도 여성의 파워와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류·예술·스포츠 등 문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pop의 가속화는 연예사업의 현지화와 더불어 소득창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아파트 문화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김연아 선수의 피겨세계선수권 대회와 영국 윌리엄왕

자의 결혼식이 비슷한 시기에 열렸는데 영국왕실의 결혼식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전통문화를 한국은 왜 갖지 못했는지 아쉬움을 느꼈다.

세 번째는 환경(기후)변화 문제로 이미 한국도 여름이 장마가 아닌 우기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과다라는 측과 그 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한 변화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다. 그러나 40만년 간의 지구변화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변화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만이천년 동안의 간빙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반복적인 운동의 상황이다. 즉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인구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3대 약재가 겹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종합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남북관계 문제로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이라는 세계에 유례 없는 독재체제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이든 남북관계가 정리될 것이지만 체제변화와 SOC 투자 등의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체적인 쇼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더 있을 수는 있으나 메가트렌드 위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고, 앞으로 큰 호흡과 흐름으로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자유 토론

박시룡/서울경제 논설실장(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혼란스러움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과거·현재·미래 정리에 도움을 주셨다. 특히 두 가지 분야의 10만 양병설, 즉 금융인력과 소프트파워인력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금융분야를 보면 잠재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의 경우 1980~90년대 월가를 따라 가려고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일본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을지 걱정인데 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소프트파워 문제를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연구원이나 진흥원을 세우려는 등의 모습인데, 그전에는 왜 신성장동력에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배국환/발표자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혼수를 두다 보니 국부 유출이 금융부분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에 관한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금융인이 많이 필요하고, 이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을 보면 과거 주요 연구소에 우수한 인력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금융기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위기에서 대응하려면 대형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금융의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주인이 없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문제가 많다. 소프트파워 문제도 연구개발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권흥삼/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향후 20년 쇼크에서 천연자원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앞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당국이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

우선 정통부, 과기부가 없어졌는데 이들의 역할에 대해 정부조직이라는 큰 그림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책방향에서 어떻게 미래를 봐야 할지 고민이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금융파트분야 전문가들이 은퇴하면 민간은행이나 일반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한 경제 관료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금융분야의 인력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위 한국의 일류대학이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학교가 각 학교의 특수성 없이 MBA, 법학전문대학원, 의료전문대학원의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이나 소프트파워 등 특정분야를 키워가지 못할까 하는 화두를 던져 본다.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과거 우리 정부의 예산집행은 하드웨어 위주로 이뤄져 왔다. 금융은 이른바 도박사를 키우는 것으로, 이들은 큰 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에서 금융허브를 크게 키우기는 어렵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무역흑자를 기조로 환율을 안정화시켜 왔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접근방법이 적정해 보인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오게는 하지만 이삭줍기는 못하게 하고, 자국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을 통해 3천조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은행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한국계 증권회사를 통해서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도록 해, 전문 도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허브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금융인력은 키워야 한다. 자산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큰 판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국환/발표자

정부조직의 문제는 항상 불만이 있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논의되었다. 점점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고 부처조직은 대형화 관점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미래전략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전략적 부처는 부서의 수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문제는 노년 구상을 잘 해야 한다. 은퇴한 학자나 관료 등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전수할 수 있고, 1인 1악기 등 시간적 여유가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학의 경우도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김성진/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인구문제의 다른 측면으로 다문화 사회문제도 있는데 현재의 영국의 폭등이나 빈곤 등의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 궁금하다.

배국환/발표자

회사에서 승진과 관련된 것은 산술적이지 않고, 인구문제도 산술적이진 않다. 인구정책 중 보완책이 다문화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인구증가는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지만 또한, 사회적인 비용을 창출하게 되므로 관리에 적절한 인구 수준을 맞춰야 한다. 통일 후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문덕/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왜 3C가 치명적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고령으로 인한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배국환/발표자

기후변화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3C로 연소(Combustion)-화석연료 사용, 전기톱(Chain saw)-열대우림 산림의 감소, 소(Cattle)-메탄가스 방출 상층권의 비행기가 배출하는 가스 등이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노령실업은 일본의 경우 고임금 한 명의 은퇴는 저임금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지금은 변칙적으로 임금피크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 잡셰어링(job sharing)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송대희/좌장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한국의 미래도 지금까지는 기적에 가까운 캐치업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정부나 지식인들의 생각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도 일본처럼 정점에서 하락하는 우려가 있다. 방향을 잘 잡고 준비를 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들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나무와 함께 숲을 봐야 할 것이다. 9월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창우 경영평가단 단장을 모실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16

요약

- OECD의 재무위원회(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2011년 6월 28일에 VAT의 중립성 지침(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n Neutrality)을 발표함
-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역외 은닉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정적·사법적·법률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탄소세의 부과를 앞두고 탄소가격의 결정방식을 발표하였으며, 탄소세의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소득세 개정안을 발표함

1. OECD의 VAT 중립성 지침 발표

- OECD의 재무위원회(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2011년 6월 28일에 VAT의 중립성 지침(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n

Neutrality)을 발표함

- OECD 중립성 지침에 따르면, 조세제도는 거래(commerce)의 형태와 관련하여 중립적(neutral)이고 공정(equitable)해야 함
 - 즉,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세무상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서 내려져야 함
 - 결국,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는 유사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함
 -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VAT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소비지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al)임
- 다음은 OECD의 중립성 지침에서 규정된 6가지의 지침임
- **guideline 1** : VAT는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사업자에 부담되어서는 아니됨
 - 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있으며, 과세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아니됨
 -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한다는 뜻은 과세당국은 사업자에게 VAT를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guideline 2** :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유사한 상황의 사업자는 유사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함
- **guideline 3** : VAT 규정은 VAT가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재무적, 영업적, 환경적, 사회적, 법적 요인을 포함한 많은 요인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VAT도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함
- **guideline 4** : 조세부담 수준에 관해서 외국의 사업자는 조세를 부담하는 국가의 국내 사업자와 비교하여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야 함
 - VAT 제도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적 우위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적 우위가 있을 경우 국제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
- **guideline 5** : 외국 사업자가 VAT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소비자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하려는 VAT의 기본적 원칙은 VAT를 부과하는 국가들 간에 거의 동일함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에는, 지역 간 다른 역사, 전통, 정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정부는 외국 사업자와 관련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에는 부담한 VAT에 대한 직접적 환급제도 등이 있을 수 있음
- **guideline 6** : 외국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요구사항이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균형 적 이 거 나 (disproportionate) 부 적 절 한 (inappropriate) 협력의무(compliance burden)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세무행정당국이 특정한 협력사항을 사업자의 유형별로 달리 부과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나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특히, 법인격이 없는 외국 사업자 관련 업무는 세무행정상 위험을 가져옴
 -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하지만 세무행정당국은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므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조치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미국-역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 방안

- 미국 과세당국은 역외 은닉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적·사법적·법률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2011년 4월과 5월 조세동향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해외계좌의 자진신고와 2013년부터 실시예정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다룬 바 있음
 - 이번 조사는 자진신고제도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실



시 외에 미국 정부에서 2012년 이후 실시 예정인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법률적 노력을 파악하는 데 있음

- 미 의회는 역외 은닉재산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함

■ 첫째,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신고와 보고 자료를 통해 역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외국기업과 거주자의 역외소득 신고와 관련 정보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외에 보관 중인 장부와 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확보함

- 납세자가 국외에 보관된 장부의 소유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세청은 역외 은닉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확보한 증언과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둘째, 국세청은 해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국토안보부의 내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는 국세청의 관련 자료 요청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와 관계자에게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납세자에게 공식 문서 요청서(formal document request: FDR)를 발행할 수 있음

- 미국 역외 보관 중인 문서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자료와 증언에 대한 소환이 가능함

- 또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역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회사나 지점을 소환하여 관련 자료를 확

인할 수 있음

- 국세청은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법률 집행정보시스템(The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s system: TECS)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할하고 있음

- 국세청 직원은 법률집행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거주자의 역외 재산과 개인의 미국 내 출입국 현황을 감시함

■ 셋째, 타 국가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협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역외 은닉자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함

- 국세청은 조직 내 역외소득 및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함

- 2009년 고소득자와 이들이 소유한 기업의 세무신고를 감독하기 위해 국제 고소득 산업그룹(Global High Wealth Industry Group)을 설립하였음

- 또한 미국 기업의 역외소득 신고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및 국제조세부(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의 근무 인력을 800명 이상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함

- 타 국가와 정보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과 상호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고 역외 재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함

- 미국 과세당국은 타 국가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 조세정보교환 조문을 두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세회피 방지 조문을 두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조

세조약상 혜택을 제한함

- 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¹⁾을 체결하고 타국의 과세당국,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타 국가와 상호사법공조협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and laws, MLATs)을 체결하고 별도의 외교절차 없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인과 각종 증거자료를 공유하도록 함

- 넷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중국에 국세청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보교류 협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함
 - 또한, 미국 국세청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국세청과 조세회피 거래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에 참여함
- 다섯째,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를 소환하는 등 사법절차(judicial process)를 통해 역외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보함
 -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를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할 수 있음
 - 법원이 증인 또는 증거서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임
 - 사법공조협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자료를 조사할 경우에 있어서 미국 법원은 해당 국가의 증인 또는 증거 조사의뢰장(letters rogatory)을 발부하

고 관련 자료를 확보함

3. 호주의 탄소세 관련 동향

가. 호주 정부의 탄소가격결정방식을 발표

- 호주 정부는 2011년 7월 10일 탄소가격결정방식을 발표함
 - 탄소가격결정 시스템은 호주 정부가 추진해 온 클린에너지 미래정책패키지(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의 일환임
 - 클린에너지 미래정책패키지(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는 탄소가격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토지이용정책을 증가시켜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탄소가격은 탄소오염을 줄이는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될 것임
- 탄소가격결정방식은 단계적으로 고정가격결정방식에서 변동가격결정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고정가격결정방식(fixed price mechanism)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당가액(CO₂-e)에 대하여 일정액을 부과하는 배출거래구조(emissions trading scheme, ETS)방식을 따름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출거래구조(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따르며 호주에서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약 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변동가격결정방식은 배출거래(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연동하여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1)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이행을 주 목적으로 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의해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이산화탄소등가액과 교환할 수 있는 고정가격허가권(fixed price permit)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따르면 CO₂등가액 1톤당 23호 주달러를 부과할 예정임
 - 최초 3년 동안 탄소가격을 매년 2.5%씩 인상하면서 고정가격결정방식을 유지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의해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 국제허가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국내허가권을 국외에 판매할 수도 없음

- 변동가격결정방식은 시장에서 탄소가격을 결정하게 되지만 최초 3년 동안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임
 - 최저가격은 15호주달러, 최고가격은 20호주달러임
 - 기업들은 국내허가권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음
 - 국제허가권은 연동가격결정방식으로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2020년까지는 50%까지만 허용됨

- 탄소세가 적용되는 산업에는 고정에너지(stationary energy) ·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 · 탈루성 배출원(fugitive processes, 폐쇄석탄광산은 제외) · 비전통배출원(non-legacy waste) · 수송부문(일부제한) 등과 같은 산업들이며, 교토의정서에 따른 6개의 온실가스 중 4종류의 온실가스가 부과대상임
 - 농업과 토지의 사용에 대한 탄소배출은 탄소세 부가가 배제됨
 - 탄소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알루미늄용해에 의한 과불화탄소임

나.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탄소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

- 호주의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가격인상을 상쇄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2단계로 과세면제한도를 인상할 계획임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1>과 같음

<표 1> 세율 및 산출세액(2011~2012)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6,000	0
6,001~37,000	0+6,000 초과액의 15%
37,001~80,000	4,650+37,000 초과액의 30%
80,001~180,000	17,550+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50+180,000 초과액의 45%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1,500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외한도는 16,000호주달러임

- 2012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2>와 같음

<표 2> 세율 및 산출세액(2012~2015)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18,200	0
18,201~37,000	0+18,200 초과액의 19%
37,001~80,000	3,572+37,000 초과액의 32.5%
80,001~180,000	17,547+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47+180,000 초과액의 45%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445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외한도는 20,542호주달러임

- <표 1>에 의하면 2011~2012과세연도에 호주 거주자는 과세소득의 6,000호주달러까지는 과세면제해왔으나, <표 2>에 의하면 2012~2013과세연도부터 2014~2015과세연도에는 과세면제한도를 18,200호주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2010~2011과세연도에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1,500호주달러이고 30,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4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 2012~2013과세연도부터 2014~2015과세연도에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445호주달러이고 37,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1.5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3>과 같음

<표 3> 세율 및 산출세액(2015~2016)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19,400	0
19,401~37,000	0 + 19,400 초과액의 19%
37,001~80,000	3,344 + 37,000 초과액의 33%
80,001~180,000	17,534 + 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34 + 180,000 초과액의 45%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300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한도는 20,979호주달러임

- 2015~16과세연도에는 과세면제기준을 인상하여 기존의 과세면제기준인 18,200호주달러를 19,400호주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2015~2016과세연도의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300호주달러이고 37,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1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동향 11-17

요약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7월 6일에 부유세, 출국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된 2011년 수정예산안(modified finance bill 2011)을 승인함
 - 수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부유세의 과세최저한 인상과 세율체계 단순화 및 세율 인하이며, 미실현재본이득에 대한 출국세 신설,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임
-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이전가격세제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이전가격세제 개정법(Law 227-GZ)을 2011년 7월 22일 공식 발표함
 - 개정법은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반영하였음
 - 개정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프랑스 의회의 수정예산안 승인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7월 6일에 2011년 수정예산안(modified finance bill 2011)을 승인하였음
 - 수정예산안은 2011년 5월 11일에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임
 - 수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부유세의 과세최저한 인상, 미실현재본이득에 대한 출국세 신설,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임



가. 부유세(wealth tax)

- 부유세의 과세최저한(threshold)을 현행 800,000유로에서 1,300,000유로로 인상하고, 과세구간(brackets)도 2012년에 개정할 예정
 - 부유세는 국내·국외에 소재한 가계의 순재산(자산-부채)의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과세대상 재산은 부동산(토지, 주택 등)과 동산(자동차, 금융재산, 펀드 등)으로 구성됨
 - 과세표준 = 해당자산의 시장가치 - 부채가치
 - 개정 세율체계 및 현행 세율체계는 아래의 <표 1>과 같음
 -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7개 세율구간(0세율 구간 포함)은 3개 세율구간(0세율 구간 포함)으로 단순화됨
 - 특히 과세표준이 1,30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유세 세율이 0%이고, 3,000,000유로 이상이면 0.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1월 1일의 시장가치로 평가되며 부유세는 6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과세표준이 1,30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유세 세율 0%를 2011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표 1> 부유세의 현행 및 개정 세율체계 비교

현행 세율체계		개정 세율체계	
과세대상 (EUR)	세율 (%)	과세대상 (EUR)	세율 (%)
up to 800,000	0	up to 1,300,000	0
800,000~1,310,000	0.55	1,300,000~3,000,000	0.25
1,310,000~2,570,000	0.75	over 3,000,000	0.5
2,570,000~4,040,000	1.00		
4,040,000~7,710,000	1.30		
7,710,000~16,790,000	1.65		
over 16,790,000	1.80		

- 부유세 부담의 최고한도 규정은 2012년에 폐지됨
 - 부유세 부담 최고한도 : 부유세는 직전연도 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식의 집합투자계약(collective undertaking)에 대한 부유세와 상속세 면제를 위한 6년 보유요건이 완화됨
 -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주식을 6년 보유할 경우, 주식에 대한 부유세와 상속증여세를 면제함
 - 주식에 대한 부유세는 전액 면제하고(Art. 885 I CGI),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50%를 면제함 (Arts. 789 A and 789 B CGI)
 - 기존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유세와 상속세 면제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첫째, 신규와 기존주주들이 집합투자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유함
 - 둘째, 상장주식의 경우 최소 20%, 비상장주식의 경우 최소 34%를 투자하여야 함
 - 셋째, 신규주주도 위의 지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계약을 유지하여야 함
 - 넷째, 집합투자계약이 2년간 연장됨

나.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세율의 최고 2개 구간에서 5%p씩 인상됨
 - 과세표준이 902,838유로~1,805,667유로에 있는 경우, 현행 35%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함
 - 과세표준이 1,805,667유로 초과하는 경우, 현행 40%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함

〈표 2〉 상속증여세율 체계

현행 과세구간 (EUR)	세율 (%)	개정 과세구간 (EUR)	세율 (%)
up to 8,072	5	up to 8,072	5
8,072~12,109	10	8,072~12,109	10
12,109~15,932	15	12,109~15,932	15
15,932~552,324	20	15,932~552,324	20
552,324~902,838	30	552,324~902,838	30
902,838~1,805,677	35	902,838~1,805,677	40
over 1,805,677	40	over 1,805,677	45

■ 증여자의 연령에 기초한 공제제도가 폐지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증여자가 증여 시점에 65세 이하인 경우 법정연령의 직계비속을 위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4촌 조카를 위한 현금 증여금액은 31,395유로까지 소득공제함

다. 출국세

- 미실현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새로운 출국세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의 거주자에 대하여 2011년 3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출국세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되며 과세대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임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이주하기 전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과세이연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하기 전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의 거주자인 경우, ①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②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평

가액이 1,300,000유로 이상인 거주자의 보유지분과 관련한 자본이득 및 ③ 언아웃(earn-out)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언아웃(earn-out)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함
- 둘째, 과세가 이연되는 특정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임
- 특정 주식교환은 합병, 분할, 분리설립 등의 사유로 주식을 교환하는 것임

■ 출국세율은 양도하는 시점에 유효한 자본이득세율에 사회부담금(social contribution)을 가산함

- 자본이득세율 : 19%(사회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31.3%)

■ 다른 EU 회원국이나 프랑스와 과세회피방지를 위한 행정협력협정을 체결한 EEA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의 거주에 대해서는 자동과세이연이 허용되기도 함

-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특별히 요청할 경우 과세이연이 허가될 수도 있음

■ 납세자가 이주한 8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8년 안에 프랑스로 돌아온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함

라. 기타

- 온라인광고서비스의 구매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소위, 구글세)의 도입을 취소함



- 직접세 부담의 최고한도(tax shield) 규정이 폐지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접세의 총부담액이 납세자의 직전연도 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아니 됨
 - 직접세에는 소득세, 자산세, 부유세 등이 포함됨

2. 러시아 이전가격세제 개정법 발표

-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이전가격세제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이전가격세제 개정법(Law 227-GZ)을 2011년 7월 22일 공식 발표함
 - 개정법은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반영하였음
 - 개정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 특수관계자의 범위

-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현 이전가격세제보다 확장됨
 - 개정법은 특수관계자를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대표적으로 지분율 25% 초과 보유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러시아 법원에는 특정 거래가 11개 범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나.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 개정법은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를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특수관계자 간 국외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 및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s)’로 제한함

- 이는 현 이전가격세제상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보다 축소된 것임
- 국외거래는 거래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간 수행된 모든 국외거래가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되며, 제3자 중개업자를 통한 국외공급거래도 이에 해당됨
 - 단, (i) 원유, 귀금속과 같이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국외거래와 (ii) 러시아 재무부의 감시명단(blacklist)에 오른 국외거주자가 수행한 국외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이 RUB 6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됨
- 국내거래는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되며, 거래별로 상이한 거래금액 기준이 적용됨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2012년 RUB 30억, 2013년 RUB 20억 및 2014년 이후 RUB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RUB 6천만을 초과하고 법에 열거된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RUB 1억을 초과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귀속소득에 대한 통합세(unified tax on imputed income) 또는 농업통합세(unified agricultural tax)를 납부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됨

다. 정보의 수집

- 정상이격 산출에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공개된 재무자료만 이용 가능하며, 국외기관의 재무자료는 국내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만 사용 가능함
 - 따라서 국내 비교가능회사의 검색이 우선 실시되어

야 하며, 국내 비교가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외 비교가능회사의 이용이 허용됨

라. 정상가격산출방법

- 개정을 통해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PSM)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포함됨
- 현 이전가격세제상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및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만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해당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2개의 산출방식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추가됨
- TNMM 및 PSM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임

마. Safe Harbor 기준의 폐지

- Safe Harbor 기준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한 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임
- 이전가격 개정을 통해 Safe Harbor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를 기준으로 이전가격과세가 이루어질 것임
-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가격을 의미함
- 정상가격범위란 사분위범위¹⁾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일정 범위 형태로 산출한 값임

- 사분위범위를 이용한 정상가격범위 산정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하지 않음
- Safe Harbor 기준하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높지 않은 한) 납세자는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를 정상가격의 20% 이내가 되도록 거래가격을 설정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음
- 그러나 정상가격범위는 통계적 수치이므로 산정방법이 보다 객관적이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범위 내에 위치해야 이전가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

바.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 특수관계거래로부터 창출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이전가격문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신설됨
- 개정법에는 이전가격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의 내용도 열거되어 있음
- 이전가격문서 구비 대상 납세자는 특수관계거래가 수행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과세당국에 특수관계거래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러시아 과세당국은 검토대상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1)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란 통계 산포도의 하나로서, 관측값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의미함. 사분위범위는 관측값 중 양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범위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측정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음



까지 납세자에게 이전가격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전가격문서를 제출해야 함

사. 이전가격 조정 및 가산세

- 개정법상 납세자는 선정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의 이전가격조정(down adjustments)은 허용되지 않음
 - 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중 일방에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반대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0%, 2017년 이후부터는 40%의 가산세가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부과됨

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이전가격세제 개정에 따라 “주요 납세자(major taxpayers)”에 한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s, 이하 ‘APA’)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주요 납세자란 연 납부세액이 RUB 10억을 초과하거나 연소득금액 또는 자산가액이 RUB 200억을 초과하는 납세자임
 - 납세자가 APA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6개월간 APA 신청서를 검토 가능하며 검토기간은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승인된 APA는 3년간 유효하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동향 11-18

요약

- 뉴질랜드에서는 증여세의 폐지, 공무원비밀보장에 관한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세법안이 2011년 8월 29일 왕실의 최종 승인을 받음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8월 18일에 외국에 설립한 신탁과 협회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Decree No. BLK/129M을 발표함
- 스페인 정부는 2011년 8월 19일에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 Law 9/2011)을 승인함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세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변경,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함

1. 뉴질랜드의 세법 개정

- 뉴질랜드의 2011년 세법안(Taxation Bill 2011,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이 2011년 8월 17일 의회를 통과하고 2011년 8월 29일 왕실의 허가를 받아 최종 승인됨
 - 개정 법안은 세무신고비용을 축소하고 세법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춤

가. 증여세(gift duty)의 폐지

- 개정법에 의하면 2011년 10월 1일 이후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gift duty)를 폐지함
 - 1992년 상속세(estate duty)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자산으로의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존속시켜 왔음
 -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2010년 6월에 증여세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정부부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한 대체적인 세수 보호조치를 만들어 왔음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신탁자의 세율을 33%로 일치시켰고, 이에 따라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동기가 상당히 감소함
- 증여세(gift duty)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세무행정에 대한 규정도 폐지함
 -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계산서(gift statements)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나. PIE 규정 변화

- 개정법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투자체(portfolio investment entities, PIEs)에 대한 세법규정에 외국투자 영세율 PIEs와 외국투자 변동률 PIEs가 도입됨
 - 외국투자 영세율 PIEs는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 가능하고,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 외국투자 PIEs 규정은 PIEs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세무처리와 직접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세무처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개정법은 선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개정 전 비거주자는 PIE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이 다르더라도 28%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음
 - 거주자에 대한 PIE 규정은 PIE에 투자한 거주자와 PIE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한 거주자의 조세상 효과가 동일하도록 세법이 설계되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을 설계하지 못함
-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투자 영세율 PIEs는 역외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뉴질랜드 원천소득 중 몇몇 소득만 이 규정이 적용됨
 - PIE 소득 중 특정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로 과세됨
-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뉴질랜드와 역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세율을 적용한 것임

다. 세무공무원의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

- 개정 전의 세무공무원의 비밀보장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개정 전 조세공무원의 비밀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81조와 1974년 뉴질랜드 연금법(ACC Acts and the the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 1974)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이 법들에 의하면 행정부의 공무원은 세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알게 된 지식을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다른 행정부와 의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세법시스템의 진실성(integrity), 자발적 신고 촉진의 중요성, 납세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 관련된 납세자의 민감도(sensitivity), 해당 정보가 대중적인 공유가 되고 있는지 등임
 - 공무원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라. 기타 규정의 변화

- 연결(pooling)을 하는 경우에 조세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를 연장함
 -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조세구매(tax purchases)가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75일로 연장함
 - 그러나 동일 그룹의 회사나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 공인된 주식교환 외에 발생하는 지분거래에서 소유자분의 계속성에 대한 경영자의 노하우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장내와 장외시장거래에서 경영자 노하우 테스트 적용을 배제함

2. 네덜란드의 외국신탁·협회에 대한 조세사면(tax amnesty) 실시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8월 18일에 외국에 설립한 신탁(trusts)과 협회(foundations)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Decree No. BLK/129M을 발표함
 - 이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됨
- 2010년 세법 개정으로 외국에 설립된 신탁과 협회를 통한 조세회피가 어려워짐
 - 소득세제: 외국의 신탁과 협회는 2010년부터 ITA(소득세법) art. 2.14a에 따라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자산은 신탁 설정자나 협회 설립자에게 귀속됨
 - 따라서 외국신탁·협회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힘들어짐
 - 상속세제: 네덜란드의 거주자였던 신탁 설정자나 협회 설립자의 사망시, 외국신탁과 외국협회의 자산은 ITA(상속세법) art. 16.에 따라 상속인(heir)에게 귀속됨
 - 즉, 상속인이 네덜란드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이로 인한 조세회피가 힘들어짐
- 2010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에 설립된 신탁과 협회의 청산이 많아짐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탁과 협회가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납세자에게 사면절차를 제공함
 - 조세사면의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1일 이전에 청산이 시작된 경우의 조세사면에 대해서 적용됨
 - 조세사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과 협회가 2년 이전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 형

- 법상 처벌(penalty)이 없음
- 신탁과 협회가 2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경감됨

3. 스페인 개정세법 발표

- 스페인 정부는 2011년 8월 19일에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 Law 9/2011)을 승인함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세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변경,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개정세법은 대부분 2013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이며, 2011년 8월 21일부터 적용됨

가.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법인세 중간예납(advance payments 또는 estimated payments)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21%에서 24%, 27%로 인상됨
- 납세자는 연 3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기한은 매년 4월 20일, 10월 20일 및 12월 20일임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임
 -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는 4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까지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 해 7월 25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 가능하며, 납세자는 두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방법 1) 가장 최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액 18%¹⁾
-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중간예납 시점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과세소득 21% (이를 '중간예납세율'이라 함)²⁾
- 단, 사업연도 직전 12개월 매출합계액이 6,010,121.04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방법 2만 적용할 수 있음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방법 2의 중간예납세율이 납세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24% 또는 27%로 인상됨
- 매출액이 20백만유로 이상, 60백만유로 미만인 납세자: 24%
- 매출액이 60백만유로 이상인 납세자: 27%
- 단, 2011년 중 이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4월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세율인 21%가 적용됨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됨
- 납세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향후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정 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1)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가 방법 1을 적용하여 2010년 4월 20일에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2008 사업연도(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0년 7월 25일임) 법인세 납부액의 18%가 중간예납세액임

2)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가 방법 2를 적용하여 2010년 4월 20일에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소득의 21%가 중간예납세액임



사업연도로부터 15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법인에 대해 공제기한이 18년으로 연장됨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납세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됨
 - 개정 전 법인세법상 납세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내 발생한 과세표준 전액과 상계 가능함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 한해 과세표준의 일부만을 이월결손금과 상계 가능하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됨
 - 매출액³⁾이 20백만유로 이상, 60백만유로 미만인 납세자: 과세표준의 75%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매출액이 60백만유로 이상인 납세자: 과세표준의 5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영업권(financial goodwill)의 공제한도가 연 5%에서 1%로 축소됨

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es)

- 2011년에 한해, 신축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율이 현행 8%에서 4%로 인하됨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현재 18%인 일반세율(standard rate), 8%인 경감세율(reduced rate) 및 4%인 초경감세율(super reduced rate)로 구분됨
 - 개정 전,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1년에 한해 4%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3) 사업연도 직전 12개월 매출합계액을 의미함

정책흐름



- 2011년 세법개정안
- 취약계층 '일자리'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 추석 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추진
-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2011년 세법개정안

* 본 자료는 2011년 9월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세법개정 여건

1 대외경제 여건

-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세계경제) 미국 경제의 재침체(Double Dip)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소지
- (국제금융)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주식·채권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2 국내경제 여건

- 경기·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
- (경기) 수출호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확대
- (고용)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 등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필요
 - * 실업률(%): (10.7)3.7 (11.4)3.7 (5)3.2 (6)3.3 (7)3.3
- (물가) 기상악화, 추석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9월 이후 점차 안정될 전망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11.1)4.1 (4)4.2 (5)4.1 (6)4.4 (7)4.7 (8)5.3

- (재정)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수 호조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 추세

* 국가채무(GDP 대비 %, '09년 → '10년): (OECD 평균) 90.9 → 97.6, (한국) 33.8 →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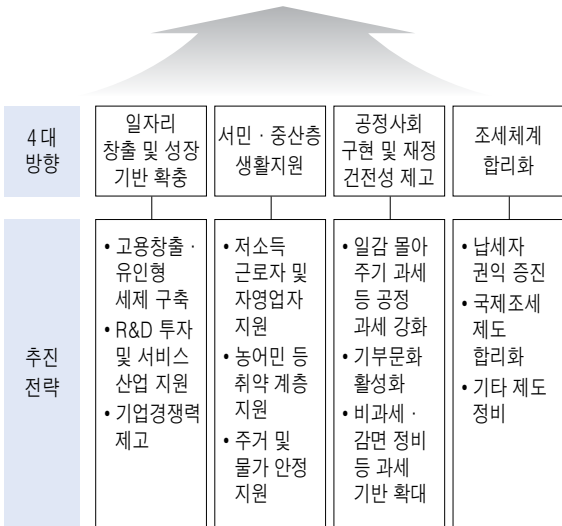
II. 세법개정 기본방향

-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등에 조세정책역량을 집중

2011년 세법개정 기초

-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 ◆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반영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비전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III.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임투 외에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 임투제도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체제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고용유지 조건)** 투자금액 3~4% 기본 공제+(고용증가인원 비례) 2% 추가 공제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 고용창출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 투	4%	5%	5%		기본공제	3%	4%	4%
고용창출	1%	1%	1%		추가공제	2%	2%	2%
합 계	5%	6%	6%		합 계	5%	6%	6%

②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고용중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13년 말까지)
-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 '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만 15~29세(단,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35세까지 확대)

③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및 산업정보학교(7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확대

•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1인당 1,500만원 → 2,000만원)

*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②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기업이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④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 정비

•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예: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

-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 유지

* '07년 세제개편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 발표

2 R&D·서비스 산업 지원

①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 해당 연도의 R&D비용에 대하여 25%(대기업은 3~6%) 세액공제 등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 등

② 위탁·재위탁 R&D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

• 일반 R&D세액공제 대상은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재위탁 R&D비용도 세액공제 허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을 자체기술개발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하는 R&D비용까지 확대

* '10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연료전지 소재기술 등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해 30%(대기업은 20%)를 세액공제

③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경제자유구역에 업종별 일정금액(제조·관광업: 1,000만불, 물류업·의료기관: 500만불, R&D: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

•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추가

④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법인이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하고, 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 인하(3% → 1%)

3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 에너지절약형 시설, 태양광에너지 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 말까지)

2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 면제('14년 말까지 3년간)

3 전기버스 보급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면제('14년 말까지 3년간)

4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 펀드의 주식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4 기업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2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

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을 완화(5년 → 3년)

-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10%(종합소득의 30% 한도)를 소득공제
-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투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대학·연구소가 출자(20% 이상)하여 보유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문회사(15개)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7%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출하는 상생협력출연금을 세액공제

4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발급건당 1만원, 연 30만원 한도)
 - *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수출자는 제조자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5 기업상속재산 공제제도* 확대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의 40%(공제한도 100억원)을 공제
-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
 - ※ 공제율 : 기업상속재산의 40% → 100%, 공제한도 : 최대 100억원 → 500억원

-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

6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7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부문으로 분리(11. 3. 31 농협법 개정, '12. 3. 2 시행)

-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는 면제)
- 구조개편 이후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개편 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보험으로부터 받은 농협명칭 사용료와 전산용역 이용료 면세 등)

2.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연 120만원, '10년 56.6만 가구, 4,369억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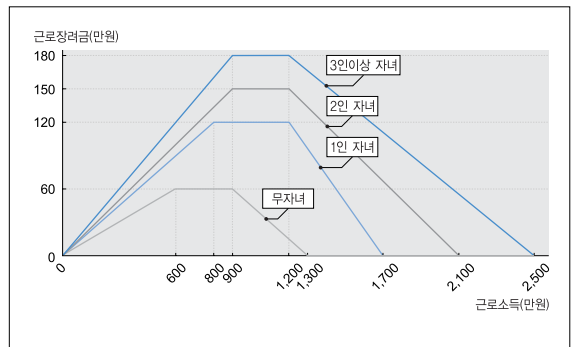
-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1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

* 4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원) : ('06) 1,400 → ('09) 1,592 → ('11) 1,727

-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부양자녀수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0인	1,300만원 미만	연 60만원
1인	1,700만원 미만	연 120만원
2인	2,100만원 미만	연 15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미만	연 180만원



2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25%(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제율: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 확대: 25% → 30%

3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를 감면, 동 감면

액은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지급

-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 말까지)

4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우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13년 말까지)

구 분	기준 부가가치율	낮은 부가가치율('11. 12. 31 일몰)
• 음식·숙박업	40%	30%
• 소매업	20%	15%

※ 간이과세자의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세율(10%)

2 농·어민 등 취약 계층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영농·영여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지원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 농·어업용 면세유('12. 6월 말 → '15년 말)
 - 농·어업용 기자재(수입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1년 말 → '14년 말)

2 영농상속공제* 확대

- * 영농종사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받은 농지 등 가액을 공제
-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 (2억원 → 5억원)

3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생계형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4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 언어·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3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1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양도세 중과배제)
-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 (주택수)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 주택 수 요건 : 수도권 3호 이상, 지방 1호 이상 → 전국 1호 이상
-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 적용
 - *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 (양도세)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2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세대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2주택 이상은 적용배제

-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 허용

3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근로자의 86%)로 확대

4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11년 시행)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4 물가안정 지원

1 서민밀집·독과점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서민밀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총 40개 품목)
 - 밀가루, 유아용 의류,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 밀집품목(평균 3.9%p ↓)
 - 설탕,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 독과점 고착화품목(평균 3.9%p ↓)
 - 향료 등 장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은 기본세율로 전환
- ※ 현재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중

* 기본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12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예정)
-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공개를 통한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유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정유사 등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3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출산·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4년 말까지)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¹⁾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²⁾ × (주식 보유비율 - 3%)

- 1)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 2) 특수관계법인의과의 거래비율 - 3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이중과세 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적용시기) '12.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2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

-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자산관리공사(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10년 말 기준 총체납액 36.7조원(미정리액 4.9조원, 누적결손처분액 31.8조원)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관보·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대

* (체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4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 조세범칙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이 대부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 *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에게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

5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석유는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 과세방식”으로는 유류세 부과·징수에 어려움
- 유사석유와 정상석유의 과세형평을 위해 유사석유의 경우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6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한도 설정
- 한도초과 금액은 공익목적지출로 불인정하여 법인세·상증세 과세
- 구체적인 한도는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

7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와 같이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2 기부문화 활성화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2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구에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생성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통제시스템 구축

3 비과세·감면 정비

1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

-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비과세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대상 요건에 총급여 수준* 추가
 -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개정)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 추가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 * 국가·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 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면세
-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과세전환
- 내국법인(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3 면세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 소액담배(200원 이하) 및 군·경찰용, 보훈용 등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제
-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 중단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고려하여 면세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4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종료

-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해서는 '09년~'11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소재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금년 말 종료

※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 임대시 현행 중부세 비과세제도 이용 가능

4 과세기반 확대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신설
 - * 엔화스와프예금: 고객이 말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하고, 만기 도래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선물환차익)을 지급

2 현금영수증제도* 개선

- *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을 연장(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5년 이내)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 *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11. 1월 도입된 제도로써 발급건수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3년 말까지)

4 관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 서류 위조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정환급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2년

*에서 5년으로 연장

* 현재는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에 대해서만 부과체기간 5년 적용

4.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 고지)가 적용되나,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10년 63만명)
-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

②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사 원칙을 신설

③ 관세·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①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조세조약체결국 100%, 미체결국 50%)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세

조약 체결 유무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국제관행에 맞추어 조세 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

②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

- 현재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건당 3,000만원 이하) 부과
- * OECD 글로벌포럼(과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해 약 100여개국으로 구성)이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환 관련 국별 상호평가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의 실효성도 중시

③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내용 공표

- 납세자에게 조세조약 세부지침을 알리고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권한 있는 당국간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①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제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단순화
-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및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범위 조정
- * (혈족) 父系 6촌·母系 3촌 → 6촌으로 통일, (인척) 夫族 4

존·妻族 2촌 → 4촌으로 통일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판단) 남편과의 관계 기준 → 본인과의 관계 기준

② 가산세제도 보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에 대해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가산세 부과 합리화
 - 교육세 등 부가세목(surtax)에 대해서는 본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
 - 손익귀속시기 위반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완화

③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도입
 - *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근속연수에 관계없이 40% 소득공제
 -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 × 1/10 × 근속연수

④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 만기가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만기 30년 이상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여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
 - * 공제한도 : (현행) 만기 15년 이상 :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 1,500만원

(개정)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여타 대출 : 500만원

⑤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확대

- * '10. 1. 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07. 6~09. 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균손실을 '10. 1. 1~'11. 12. 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을 1년 연장(12년 말까지)

⑥ 주주 등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IV. 세법개정 효과

※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추가 반영한 것임

1 세수 효과 : 총 +3.5조원

- **(증가 요인)**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0.6조원),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0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등 +4.4조원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ETC) 확대(△0.2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조원) 등 △0.9조원

'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소득세	-	△0.3	0.3	△0.1	0.1
법인세	3.3	1.3	2.0	-	-
상속증여세	0.1	-	0.1	-	-
기타	0.1	0.1	-	-	-
계	3.5	1.1	2.4	△0.1	0.1

2 세부담 귀착효과

-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귀착: △0.3조원
고소득자 · 대기업 귀착 : +3.8조원
- * OECD의 서민 · 중산층 기준(총 급여 5,200만원)

V. 향후 추진 일정

① 개정대상 법률: 총 16개

- 내국세: 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관세: 2개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② 추진 일정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 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취약계층 ‘일자리’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 본 자료는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일자리’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의 핵심 대책에 대해 당 측과 합의하였음

1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2년부터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약 120만명(최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
- ※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와 5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0만원(월 16.8천원), 21만원(월 17.6천원) 경감

지원방안 (9.9, 당정협의 논의내용)

- ◆ 대상보험: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월 124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
- ◆ 지원수준: 勞使政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
- ◆ 지원시기: '12년 상반기 2개 지역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 전면 시행
- ◆ 재정소요: 약 2,300억원 ('12년 약 700억원)

-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각지대 축소는 어려움이 컸음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미가입률

(단위: %)

	국민연금		고용보험	
• 비정규직 / 정규직	50.5	17.2	38.3	20.2
• 5인 미만 / 10인 미만	62.7	40.4	60.1	42.3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0. 8월)

-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 및 고령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작년부터 KID 주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방안 수립
-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하는 복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으로서 무상으로 특정 재화를 공급하지는 주장보다 효과적이며 차별성이 있음
- 정부가 일정부분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본인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근

로자/정부가 각각 1/3씩 부담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중이고,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장려정책 (make-work-pay policy)의 하나

- 상반기 중 2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준비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적인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준비사업 설계 등을 위해 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기획단」설치 · 운영중('11. 9~'11. 12)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할 예정
 - *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월 256만원)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 가능
 - ☞ 본인과 부양의무자 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130%(월 256만원)에서 중위소득(185%, 월 364만원)까지 완화
 - ☞ '12년 예산상 추가 소요재원은 약 2,200억원으로 전망
 - 본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해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 또한,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이라

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 보호 중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 기피, 가족관계 단절(행방불명) 등 판정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 본 자료는 2011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단년도 예산편성의 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자원배분전략 수립
- 5회계연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04년부터 수립되었으며,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10년부터 계획 수립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10. 5월 국가재정법 개정)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재정위 사전보고, 전년 도계획 평가·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① '10년 말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1. 1월)
- ②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방향 논의
 - 숲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11~'15년 재정은

용전략, 분야별 투자방향 및 각종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토론('11. 4월)

-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총량, 보건·복지, 교육 등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16개 분야, '11. 6월)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및 각 부처의 의견 수렴('11. 9월 예정)

2 2010~2014년 계획에 대한 평가

- **(재정운용방향)**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와 함께 재정건전성의 회복 방향을 제시
- 녹색성장, R&D,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
 -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뒷받침
- 위기 대응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재정수지는 '09~'13년 계획에서 제시한 '13~'14년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14년 흑자전환) 목표 유지
 - 국가채무는 당초 '09~'13년 계획보다 GDP 대비 2%p 내의 개선된 관리목표를 제시하여 '14년

30%대 초반 수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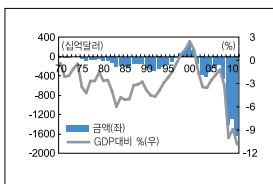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질성장률(%)	5.0	5.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0.8	314.4	342.9	365.1	390.9
• 국세수입(조원)	170.5	187.6	204.2	221.1	241.7
조세부담률(%)	19.3	19.3	19.5	19.6	19.8
재정지출(조원)	292.8	309.1	324.8	337.7	353.0
재정수지(조원)	△30.1	△25.0	△14.3	△6.2	2.7
(GDP 대비, %)	(△2.7)	(△2.0)	(△1.1)	(△0.4)	(0.2)
국가채무(조원)	407.2	435.5	468.1	485.7	492.2
(GDP 대비, %)	(36.1)	(35.1)	(35.1)	(33.8)	(31.8)

* '11년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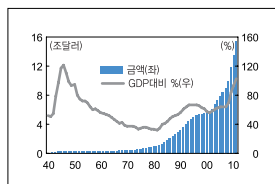
- **(환경변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 '10년도 성장률이 크게 개선(6.2%)되었고 금년에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 지속 전망
 - 그러나,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간 격차도 지속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중심의 재정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 위기 우려 확산

미국 재정적자 추이



* 자료 : 미국 관리예산처(OMB)

미국 국가채무 추이



* 자료 : 미국 관리예산처(OMB)

- **(향후 과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개선,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필요
- 균형재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
-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

⇒ '10~'14년 계획 수립 이후 환경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II.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경제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예상
- 미국·유로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 예상
 -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제약
 - * 미국성장률(전기비연율, %): ('10.1/4)3.9 (2/4)3.8 (3/4)2.5 (4/4)2.3 ('11.1/4)0.4 (2/4)1.0
 - 유럽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의 경기 회복세도 둔화
 - * 유로성장률(전기비, %): ('10.1/4)0.3 (2/4)0.9 (3/4)0.4 (4/4)0.3 ('11.1/4)0.8 (2/4)0.2
-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012년 이후)**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

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소지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는 낮아질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1. 6월, IMF,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세 계	5.0	4.3	4.5	4.5	4.6	4.7
- 선진국	3.0	2.2	2.6	2.5	2.5	2.4
- 개도국	7.3	6.6	6.4	6.5	6.7	6.7

2 국내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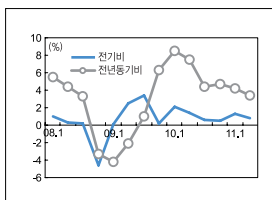
-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상악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다소 둔화되면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 하반기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소득개선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회복될 전망**

* 우리나라 수출비중(%), '11. 1~6월): 신흥국 71.7, 미국 10.1, 유로 11.1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시(6.30일) 연간 4.5%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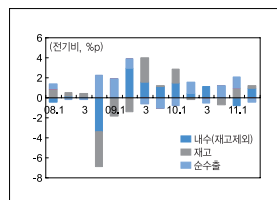
-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도 상존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내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 수준의 성장세 전망

-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10~'14년 계획상 '12~'14년간 5% 내외 성장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4% 중반의 성장세 지속 예상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0)0.7 ('11)0.6 ('12)0.4 ('13)0.2 ('14)0.2 ('15)0.2

III.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여건

① 국세수입

■ 국세수입은 '10년도 빠른 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등으로 '10~'14년 계획 대비 증가 예상

- '11~'15년 계획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년 세수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10~'14년 계획상 국세수입**보다 증가 전망

* 국제감면액(조원): ('03~'07 평균) 20.0 ('08) 28.8 ('09) 31.1 ('10) 30.1

** 국세수입(조원): ('10) 170.5 ('11) 187.6 ('12) 204.2 ('13) 221.1 ('14) 241.7

■ 그러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 폭이 둔화될 가능성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2 세외수입

- '10~'14년 계획* 내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공기업 지분 매각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 세외수입(조원): ('10) 24.3 ('11) 24.5 ('12) 30.2 ('13) 29.9 ('14) 29.1
-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매각대상 제한 완화 노력 등을 통해 국유재산 임대·매각 수입 증가 예상
- 다만,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의 변동 가능성 상존

2 재정지출 여건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의무적 지출 확대 전망
 -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 예상
-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완화, 서민 체감경기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 등 확대
 - 계층간 격차 지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소요 확대
 - R&D, 교육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지속 필요
- 그 외에 '10~'14년 계획 이후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보전, 구제역 후속조치 지원 등 추가 지출 소요 발생
 - *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대비 50% 인하

'11~'15년 부처 증기요구 규모

◇ 각 부처 '11~'15년 증기 지출요구는 연평균 7.4%로 '10~'14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12~'14년간 총+98.3조원)

'10~'14년 계획 대비 '11~'15년 부처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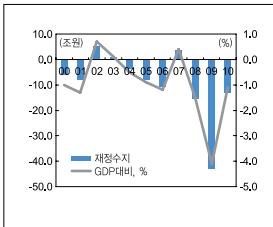
(단위: 조원)

	'10	'11	'12	'13	'14	'15	증가율
'10~'14년 계획	292.8	309.1	324.8	337.7	353.0	-	4.8%
(계획 대비 추가요구)		-	+26.5	+33.0	+38.8	-	
'11~'15년 부처요구		309.1	351.3	370.7	391.8	411.7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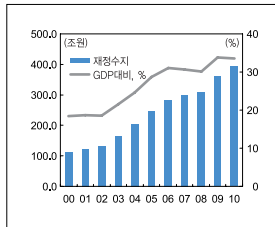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증기 국세수입 증가 전망, '10년 재정수지 실적 호조 등을 감안시 당초 '10~'14년 계획보다 다소 개선 예상
 - * '10년 재정수지(GDP 대비, %): ('10~'14년 계획) $\Delta 2.7$ → (결산) $\Delta 1.1$
- 다만, 대외 불확실성 증대, 지출소요 확대 지속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국가채무)** '10년 예산 대비 실적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중기적으로 개선 예상
 - '10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로 '10년 예산 편성 당시 계획(36.1%)보다 2.7%p 감소
 - 이에 따라, '10~'14년 계획에서 제시한 '14년 국가채무 30% 초반 관리목표 달성 여건 개선
 - 다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감안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IV. 2011~2015년 재정운용방향

1 중기 재정운용기조

-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 ◇ 건전재정 기조하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①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

-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요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규율 강화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재정여력 비축 필요
-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 (GDP 대비 %, 예산 $\Delta 2.7 \rightarrow$ 결산 $\Delta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

- 재정수지: 당초 계획을 앞당겨 '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
- 국가채무: '15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

☞ 세입기반 확충,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②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선진화 추진
- 녹색성장, 교육 등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적극 지원
-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선제적 지원

2 중기재정운용 모습

① 재정수입

-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11~'15년 기간중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전망
-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 예상

중기 재정수입 전망(조원, %)

(단위: 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14.4	337~345	367~375	386~395	403~413	7% 내외
• 예산 수입	212.1	230~236	254~260	267~274	278~286	7%대
- 국세 수입	187.6	202~207	220~226	238~245	254~261	8%대
• 기금 수입	102.2	107~109	113~115	119~121	125~127	5%대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② 재정지출

- '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 계획기간중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은 연평

균 4~5%대 수준으로 관리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09.1	323~328	336~343	349~356	368~373	4~5%
• 예산지출	216.3	227~230	235~240	243~248	259~262	4~5%
• 기금지출	92.7	96~98	101~103	106~108	109~111	4~5%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③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13년에 흑자 전환되고, '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 전망
- **(국가채무)** '10~'1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 강화
 - 국가채무(GDP 대비)는 '10년 결산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의 효과로 '13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예상
 - '14년부터 GDP 대비 30%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11~'15년간 19%대 유지 전망
 -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 예상

중기 재정전망

(단위: 조원 %)

	'11*	'12	'13	'14	'15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2.0	△1.3~△1.0	0.0 수준	흑자	흑자
■ 국가채무 (GDP 대비, %)	35.1	32~34	30%대 초반	30% 내외	30% 이내
■ 조세부담률**	19.3	19% 초반	19% 중반	19% 중후반	19% 중후반

* '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12년 이후의 조세부담률은 '10~'14년 계획 기준이나 향후 '11~'15년 계획의 국회 제출시 수정될 수 있음

3 재정건전화 방안

①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 · 감면 축소 및 폐지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 · 감면을 지속 적으로 정비
 - 다만, 서민 · 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토록 노력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의 지속 추진
 -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11. 8월)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액채납자 출국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 강구
-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 효율화를 통해 수입 확대
 - 국유부동산 및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가속화 하는 한편, 국유지의 취득 · 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유지 무상사용 · 양여를 억제

-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
-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독촉장 송부, 주소 조사 등)에 한정

② 지출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구현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
 - * '11년에 38개 소관, 482개 사업(51.3조원)에 대해 자율평가 실시
 -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액 등 구조조정
 - * '11년에 22개 소관, 254개 사업(5.8조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 통합합·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간 목적·대상이 유사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
 - * 직업훈련 지원 사업군,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군 등에 대해 심층평가 추진 중
 - 기금존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폐지 또는 구조조정 추진
 - * 3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치, 조건부 존치, 통합, 폐지 등 조치
- 예산이 급증하였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

③ 재정관리체계 개선

- 재정준칙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
 - *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도입
-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화
 - '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개편
 -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관련 현안에 대한 민관 협의기구로 '11.4월부터 운영
-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기계획 및 통계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대규모(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부채전망·관리방안 등) 수립
 - * 금년은 시범작성하고,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 예정
 - 공공기관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 금년초 12개 사업(총사업비 4.1조원)을 선정하여 예타 실시 중(9월초 완료 예정)

V.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1 재원배분의 중점

- ①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2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
-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 강화
-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00년 먹거리 창출
-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3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국격 제고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2 분야별 투자방향

1 R&D 분야

- 국과위 출범으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수립 기능 강화
 - 투자전략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R&D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
 - 핵심기술 선점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 등 창조적, 선도적 연구에 선택과 집중
 - 첨단융합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투자 확대
- * 기초·원천 비중 : (09)39 → (10)43.5 → (11)47.4 → (12)안50.0%

■ 민간과 경쟁하는 R&D투자는 지양

-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곤란한 장기과제, 고위험 투자, 기초·원천기술 투자 등에 집중
- 중소기업 R&D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자

■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수준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 강화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다부처 공동 사업 등 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입 위주·양적 평가보다 성과지향·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책임성을 강화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글로벌 무역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속 확대 및 FTA 확대 등에 대비한 무역정보제공 기반 확충
- * 수출액 목표(역불) : (11) 5,037 → (12) 5,440 → (15) 6,853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융·복합,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R&D 지속 투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부품소재 기술 자립화 지원
- * 산업부문R&D의 사업화성공률 목표(%) : (11) 40.5 → (12) 40.8 → (15) 42.0
-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및 주조·단조 등 중소기업의 고유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

- 청년층 창업·창직 지원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선
 - * 법인 창업기업 수 목표(천개사) : (11) 61 → (12) 62 → (15) 65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상품권발행 확대, 나들가게 확충 등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 안정적 에너지수급 구조 정착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 및 주요 자원 전략비축을 지원하고, ESCO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효율에너지 기반 확충
 - * 에너지 원단위(ton/백만원) : (11) 0.242 → (12) 0.237 → (15) 0.223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과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정착 지원

③ SOC 분야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SOC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 SOC예산 추이(조원) : (08)20.5 → (09)25.5 → (10)25.1 → (11)24.4
- 녹색성장 뒷받침, 현 스톡수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 투자 비중 확대
 - 도로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에 집중
 - 철도는 수도권·호남 등 고속철도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
- 항만육성, 산업단지 등 지역 경쟁력강화 지속 지원
 -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부산항·광양항 허브화를 지속 지원하고,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

- *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목표(억톤) : (11) 8.5 → (12) 8.9 → (15) 10.3
- 산업단지에 대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 지원
 - * 산단 진입도로 연장(km) : (11) 301 → (12) 341 → (15) 421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 확대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안전보강

④ 농림·수산·식품 분야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종자·생명 산업 육성, 상품화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식품 R&D 투자를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 * 선진국 대비 농업 기술수준(%) : (11) 78 → (15) 85
 -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식품산업 글로벌화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등 전략적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 * 농식품 수출액(억불) : (11) 76 → (12) 100 → (15) 151
 - 국내 농수산물 비축·계약재배 확대 및 해외 곡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해외농업 개발 지원
- 농림수산자원의 위험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수 확보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 및 사방댐 건설 등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
 - * 수산물 생산량(만톤) : (00) 251 → (12) 320 → (15) 370
-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 증진 및 농산어촌 개발
 - 농지연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

고,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농지연금 지원(백호) : (11) 12 → (15) 45

5 보건·복지·노동 분야

■ 취업 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 여성, (준)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근로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참여율(%): (11) 28 → (12) 30 → (15) 36

• 저소득층이 탈빈곤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 연계 지원 강화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수급(천명): (11) 3.0 → (12) 5.8 → (15) 6.5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보금자리주택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 위주로 공급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충

• 저출산 극복,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및 건강 보장 확충

■ 보건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선진화 기반 마련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진,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수준 적정화

6 교육 분야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 대학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부실대학 지원배제 등 대학 구조조정-재정지원간 연계 강화

■ 유·초·중등 공교육 내실화

• 일원화된 만5세 교육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개혁과제의 성공적 정착 도모

*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수(개교): (11) 1,400 → (13) 3,600 → (15) 4,800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습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취업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 마이스터고 학교(개교): (11) 21 → (13) 28 → (15) 50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강화

•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11) 차상위 40% → (13) 100%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확충,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 지원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지속

* 대학 시간강사 강사로 : (11)6만원 → (12)7만원 → (13)8만원

7 문화·체육·관광 분야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R&D 투자 확대,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
 -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 : (11) 33억달러 → (15) 48억달러
 - 콘텐츠 건전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시장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 전통한옥,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의 활용을 통한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
 - MICE, 의료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 * 외래관광객 : (11) 960만명 → (15) 1,300만명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등 각종 바우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 * 문화예술 관람률(연 1회 이상, %) : (11) 67.5 → (15) 70
 -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지속 확충 등 체육활동 기회보장
 - *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 : (11) 44.2 → (15) 48 이상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가치 제고
 -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확충을 통해 보존 철저, 문화유산 개발·활용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8 환경 분야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투자 지속
 - 오염이 심한 하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사업 중점 지원
 -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 지속 투자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1) 65% → (15) 76%
-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 폐기물 에너지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등 녹색 기술 R&D 투자 확대
 -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 : (11) 5조원 → (15) 11조원
- 온실가스 등 미래 환경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투자 확대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관리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지원
 - *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 보급 촉진,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대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환경보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건강 보호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등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속
 - * 다중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 (11) 484개소 → (15) 10,000개소
 - 보육시설·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 확대

9 국방 분야

-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지원
 -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대대급 이하 창 끝부대의 전투역량 강화와 생존성 보장을 위한 투자 강화
 - 전투역량은 평소의 교육훈련에서 비롯되는바, 실질적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장 확보 등 훈련여건 개선
- 북한의 현존위협 및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전투력 강화
 - 국지도발, 장사정포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및 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 등에 투자 확대
 -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찰능력 등 핵심전력 확보 및 지휘·통신체계 조기 구축
 - 국방R&D 투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 국방 R&D 투자 / 국방비 : (10) 6.1 → (11) 6.5 → (15) 7% 중반 수준
- 군 구조개편 등 국방개혁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으로의 변화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규 소요 등에 대해 적정 투자 방안 마련
 - 군 구조개편, 교육훈련 강화 등 국방개혁 과제 차질없이 지원
-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 노후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개선을 완료하고, 군 의료체계 선진화를 통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품질개선을 통해 생존성 보장을 강화

10 외교·통일 분야

- 국제기여 확대, 안보외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외교 수요에 적극 대처
 - 국제기구 분담금 및 ODA 지원 규모 지속 확충
 - * ODA/GNI 비중(%) : (10) 0.13 → (11) 0.14 → (12) 0.15
 - * UN 정규예산 및 PKO 분담금 분담률(%) : (07~09) 2,173 → (10~12) 2,260
 - 핵안보 정상회의(12. 3월 예정)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자원외교 내실화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용외교 추진
-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외교 인프라 구축 강화
 - 외교활동의 최일선인 재외공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
 - 외교인력 교육강화를 위한 국립외교원(12. 3월 개원) 설립 지원
- 향후 다가올 통일 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 제2하나원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강화
 - 북한정세지수, 북한방송 저장 등을 통해 북한 군사·정치·외교·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 시스템 강화
-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심화
 - 개성공단 기반 조성, 경험자금 대출 등 남북경협 추진을 지원하고,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및 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및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및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등 범죄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억제
 -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 * 불법체류율(%) : (11) 13 → (12) 12 → (15) 9
 -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민법 등 법령 정비 추진
 - * 법률구조수혜자(만명) : (11) 13.9 → (12) 14.3 → (15) 15.7
- 재판의 신뢰성 제고 및 내·외국인 사법 접근성 향상
 -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지원
 - * 참여재판 건수(건) : (11) 258 → (12) 350 → (15) 1,500
 - 단계별 전자소송* 지원 및 국내체류 외국인 사법 지원서비스 실시
 - * (10)특허소송 → (12)민사·가사·행정소송 → (13)민사집행, 비송사건
- 해상 위기관리·경비 역량 강화 및 안전 관리능력 제고
 - 서해5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경비함정 무장 강화 및 중대형 노후함정 성능개선 추진
 - 응급구조,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시설 확충
- 자연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 기상관측 장비 등 재난대비 인프라 확충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제고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12년)

- * 9억원 이하 1주택 : 2→ 1%, 9억원 이상 또는 다주택 : 4→ 2%(11년 한시)
- 주한미군반환공역구역, 서해5도 등 낙후지역 지원 지속 추진
-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 공정하고 차별한 선거문화 정착, 선진화된 선거관리 기반 구축
 - '12년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선거관리 정보화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선거정보 안내 서비스 지속 지원
 - * 투·개표 선진화(정보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시범운영, 선거아카데미 등
- 혁신적 IT기술을 통한 스마트 정부(Smart Gov) 구현
 - 재난관리, 먹거리, 미아·실종자·치안 등 국민의 생활안전 관리를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 해킹·DDoS 침해대응,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기반 확충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강화
 - 인터넷 중독예방,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
 - *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청소년 예방교육 활용 등
-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편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참고 1 2012년도 예산 편성방향

- (요구 규모) 각 부처가 요구한 '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6조원으로 '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

• '12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

* 총지출 요구 증가율(전년 대비,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11) 6.9

(단위: 조원)

구 분	'11년(A)	'12요구(B)	증감 (B-A)	%
총 지 출	309.1	332.6*	23.5	7.6
【예 산】	216.4	235.3	18.9	8.7
【기 금】	92.7	97.3	4.6	5.0

* 6.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10~'14 중기계획상의 '12년 총지출 규모는 324.8조원

■ **(편성방향)**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추진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금년(GDP 대비 $\Delta 2.0\%$)보다 개선

*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

•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

- '12년 예산은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

- 이를 위해 (i)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교육 (ii)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iii)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 적극 지원

- 특히,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i) 일하는 복지, (ii) 맞춤형 복지, (iii) 지속가능한 복지 등 3대 원칙 하에 차별화되는 프레임과 세부 프로그램 제시

참고 2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및 공개토론회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구성·운영

•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16개 분야별 작업반 구성

* 공동반장(민간전문가, 재정부 국장), 간사(재정부 과장), 반원

(재정부 및 관련 부처 과장, 민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 중기 재정총량 목표 설정,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등 지원

- 공개토론 아젠다 선정·검토 등 공개토론회 개최 지원

■ 공개토론회 개최

•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량 및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6. 22~6. 29일간 16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	6.22(수)	6.23(목)	6.24(금)	6.27(월)	6.28(화)	6.29(수)
장소	조달청				산업기술진흥원	
10:00 ~ 12:00	교육	ODA	보건·복지	SOC	R&D	고용
14:00 ~ 16:00	총괄 및 총량	지방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 식품	환경
16:30 ~ 18:30	장기	공공질서·안전				

* 통일·외교, 국방 분야는 별도 장소, 비공개 진행(6. 24일)

추석 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 본 자료는 2011년 9월 6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추석 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 내어 환급

-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었음
-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10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11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 것임

2 환급대상자는 40만명, 금액은 284억원

-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판매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임
- 이러한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음

3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11. 9. 1.부터 발송
-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4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2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 미수령 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추진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 -

* 본 자료는 201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9일(금) 입법 예고했다.
-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여 신설·연장하였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액) : '05년 12.8%(5.3조) → '10년 23.2%(14.8조)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 → 75%)하고, 사

- 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했다.
- 반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 또한,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금년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계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친환경·친서민 지원 감면 신설·확대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 신설
-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이브리드차와 동일, 140만원 수준) 신설
-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신설
-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 종사자들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시설 설치시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 → 75%)
-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 면제 대상* 확대

* 현행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9개 단체로 한정

개정 :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추가

-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공동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취득세 :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
 재산세 :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

②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 (현행)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개정)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세액이 적으면서 관행적 감면으로 납세의식만 저해하는 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은 종료,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100 → 75%). 단, 서민물가에 영향 미칠수 있는 지하철공사, 농수산물공사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은 현행 수준(100%) 유지

③ 부동산 관련 감면 종료

- (현행)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LH공사가 기업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매입·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0% 감면 등
- (개정) 부동산 관련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 다만,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월세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감면

④ 산업 지원 감면 축소

- (현행)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등
- (개정)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100 → 75%), 재산세 감면 현행 유지(50%), 중소기업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100 → 50%),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종료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본 자료는 201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11. 9. 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②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③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다.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다.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통계



■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구 분		임시관재총국 ^㉑	임시외자총국 ^㉒	국책금	경제조정	귀속재산처리	방송국	국립처장	귀속농지관리	농지개혁사업	후생복표
1949	세입	12	419	91	-	-	3	-	48	-	4
	세출	12	419	91	-	-	2	-	48	-	2
1950	세입	53	470	6	-	-	6	-	130	-	4
	세출	53	470	4	-	-	5	-	128	-	1
1951	세입	-	-	443	-	260	7	-	501	-	3
	세출	-	-	442	-	227	6	-	488	-	-
1952	세입	-	-	1,326	18,491	384	-	4	-	2,139	3
	세출	-	-	1,296	16,371	381	-	3	-	2,123	-
1953	세입			2,097	43,697	1,047		30		3,643	
	세출			2,063	41,802	1,032		26		3,471	
1954	세입			3,724	12,964	2,955		22		9,682	
	세출			3,550	12,464	2,895		22		7,066	
1955	세입			14,865	11,545	7,858		25		9,127	
	세출			14,630	9,825	7,858		25		7,558	
1956	세입										
	세출										
1957	세입			19,140	6,888	12,514		-		9,196	
	세출			19,088	5,338	11,548		-		5,523	
1958	세입			-	5,125	9,297		-		12,424	
	세출			-	1,339	9,272		-		12,294	
1959	세입			-	11,804	6,125		-		5,819	
	세출			-	9,646	5,887		-		5,452	
1960	세입			-	19,112	8,340		-		1,900	
	세출			-	18,756	7,872		-		2,068	
1961	세입			-	-	829		-		329	
	세출			-	-	820		-		231	
1962	세입			-	-	1,954		-		-	
	세출			-	-	1,848		-		-	
1963	세입				14,810	889				-	
	세출				14,494	883				-	
1964	세입				12,036	-				-	
	세출				11,660	-				-	
1965	세입				17,890						
	세출				17,209						
1966	세입				29,146						
	세출				28,992						
1967	세입				33,686						
	세출				33,459						
1968	세입				59,209						
	세출				57,918						
1969	세입				80,817						
	세출				78,241						
1970	세입				94,217						
	세출				91,888						
1971	세입				110,286						
	세출				108,683						
1972	세입				175,059						
	세출				172,845						
1973	세입				119,228						
	세출				116,040						
1974	세입				292,260						
	세출				274,032						
1975	세입				505,876						
	세출				494,452						
1976	세입				639,113						
	세출				610,961						
1977	세입										
	세출										
1978	세입										
	세출										
1979	세입										
	세출										

재정통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외자	한미경제협정에 의한 대중자금균용	애국복권	6.25사변수습비	양곡관리	전매사업	교통사업	통신사업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	-	-	-	-	350	321	37			2
-	-	-	-	-	327	312	34			2
-	-	-	-	1,149	312	506	70			2
-	-	-	-	1,131	266	480	63			2
3,181	40	30	2,563	3,148	1,995	1,107	144			5
3,119	39	30	2,534	3,147	1,810	942	131			5
1,775	-	-	7,717	9,558	6,375	2,432	489			14
1,565	-	-	7,566	9,508	6,202	2,366	447			14
3,082	-	-	-	23,311	10,229	5,215	1,113			43
2,940	-	-	-	22,177	9,562	5,155	1,023			41
5,258	-	-	-	34,804	19,221	14,426	3,248			105
5,243	-	-	-	34,014	18,080	13,861	2,747			104
13,278	-	370	-	78,690	51,024	36,618	9,958			323
13,118	-	350	-	75,064	49,211	36,143	9,517			321
13,912	-	678	-	101,193	51,212	37,915	11,674			339
13,789	-	678	-	90,483	49,483	37,665	11,418			338
13,291	-	-	-	78,198	56,452	56,198	15,631			442
12,940	-	-	-	76,978	55,495	55,407	14,288			419
10,708	-	-	-	60,756	63,131	63,037	20,016			737
10,541	-	-	-	59,225	62,826	62,380	18,929			677
8,722	-	-	-	54,689	67,416	66,958	24,773			823
7,429	-	-	-	49,928	66,310	65,912	22,870			782
				8,289	8,333	6,202	2,850			82
				7,242	7,718	5,968	2,625			72
				8,902	9,537	7,779	3,647			182
				11,027	5,405	7,183	3,068			154
				15,533	17,556	15,324	6,858			316
				13,764	17,424	15,001	5,790			274
				20,548	20,160	13,304	10,693			443
				17,864	20,129	13,304	9,731			387
				13,997	24,491		10,841			639
				15,908	24,484		10,820			614
				27,441	33,965		21,456			1,161
				28,255	33,523		321,436			1,075
				35,235	44,106		25,787			1,969
				27,343	43,582		25,715			1,847
				35,053	63,178		33,832			2,764
				34,544	62,396		33,630			2,399
				78,298	85,708		42,636			4,649
				75,980	83,699		42,272			4,107
				1,391	109,387		50,707			6,024
				1,281	101,633		50,396			5,034
				1,428	132,884		59,604			8,011
				1,396	131,708		59,374			6,863
				2,051	162,454		77,708			10,277
				2,005	161,482		77,361			9,290
				2,638	212,123		94,878			12,730
				2,579	207,719		89,151			11,500
				2,492	282,220		143,825			16,774
				2,429	276,291		141,094			15,157
				3,281	457,094		230,110			19,503
				3,041	448,026		229,667			18,055
				4,275	583,795		308,855			7,981
				3,880	562,075		300,976			7,107
				6,121	714,806		394,248			
				4,656	686,883		377,081			
				7,103	926,935		510,895			
				6,483	907,988		506,247			
				7,583	1,131,161		604,767			
				7,352	1,112,013		604,152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 분	임시관재총국 ^㉑	임시외자총국 ^㉒	국책금	경제조정	귀속재산처리	방송국	국립처장	귀속농지관리	농지개혁사업	후생복표
1980	세입									
	세출									
1981	세입									
	세출									
1982	세입									
	세출									
1983	세입									
	세출									
1984	세입									
	세출									
1985	세입									
	세출									
1986	세입									
	세출									
1987	세입									
	세출									
1988	세입									
	세출									
1989	세입									
	세출									
1990	세입									
	세출									
1991	세입									
	세출									
1992	세입									
	세출									
1993	세입									
	세출									
1994	세입									
	세출									
1995	세입									
	세출									
1996	세입									
	세출									
1997	세입									
	세출									
1998	세입									
	세출									
1999	세입									
	세출									
2000	세입									
	세출									
2001	세입									
	세출									
2002	세입									
	세출									
2003	세입									
	세출									
2004	세입									
	세출									
2005	세입									
	세출									
2006	세입									
	세출									
2007	세입									
	세출									
2008	세입									
	세출									
2009	세입									
	세출									
2010	세입									
	세출									

재정통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외자	한미경제협정에 의한 대중자금균용	애국복권	6.25사변수습비	양곡관리	전매사업	교통사업	통신사업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8,960	1,513,864		1,124,978			
				8,635	1,503,800		1,112,335			
				11,218	1,936,121		1,547,801			
				10,920	1,918,798		1,546,692			
				12,179	2,207,914		254,747			
				11,771	2,175,191		244,563			
				12,049	2,361,099		275,940			
				11,787	2,316,314		257,091			
				11,703	2,445,623		322,964			
				11,453	2,332,577		311,811			
				12,250	2,519,792		343,846			
				12,009	2,356,687		338,712			
				13,181	2,796,600		472,860			
				12,644	2,720,780		459,018			
				18,460	605,303		538,359			
				16,776	573,893		518,359			
				16,489			642,624			
				15,990			627,255			
				17,578			705,664			
				17,171			684,056			
				19,594			821,278			
				19,192			795,398			
				23,037			979,818			
				22,448			954,215			
				25,513			1,183,389			
				25,277			1,120,929			
				26,425			1,394,193			
				26,236			1,289,548			
				2,872,070			2,073,042			
				2,716,093			1,579,513			
				2,027,071			2,528,106			
				1,727,529			1,852,472			
				2,293,870			2,955,510			
				1,473,448			2,171,078			
				1,587,043			4,110,246			
				1,483,942			2,709,833			
				920,536			4,426,214			
				1,283,705			3,073,051			
				1,572,490			4,343,808			
				1,248,307			3,473,198			
				1,153,158			4,225,178			
				1,139,721			3,413,894			
				964,361			4,775,283			
				1,124,132			3,948,682			
				1,010,503			5,271,839			
				1,272,584			4,231,581			
				1,703,373			4,830,162			
				1,578,697			4,231,681			
				1,728,936			4,667,747			
				1,470,307			4,224,381			
				1,417,606			5,285,627			
				1,147,593			4,838,961			
				1,162,644			5,352,446			
				1,282,199			4,890,448			
				1,228,104				2,118,515	3,157,210	
				1,248,533				1,808,460	2,941,043	
				1,632,799				2,498,970	3,272,573	
				1,243,795				2,081,938	3,063,354	
				1,533,539				3,308,030	3,260,145	
				1,344,791				2,426,631	3,169,964	
				1,302,642				3,600,064	3,358,950	
				1,197,590				2,267,905	3,276,861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 분	대총자금	경제부흥	전란수습비	산업부흥국책금	국방비	구황실재산관리	공무원연금	재정자금운용	부정축재처리자금	정부보유외국환 관리
1949	세입									
	세출									
1950	세입									
	세출									
1951	세입									
	세출									
1952	세입									
	세출									
1953	세입	6,783	-	39,533	5,000	-	15	-		
	세출	5,085	-	38,441	5,000	-	11	-		
1954	세입	114,228	8,057	76,474	12,939	-	156	-		
	세출	99,371	7,460	76,148	12,878	-	121	-		
1955	세입	445,562	46,590	-	19,610	106,519	230	-		
	세출	338,511	40,245	-	19,279	106,379	210	-		
1956	세입									
	세출									
1957	세입	494,741	90,815	-	29,642	113,953	230	-		
	세출	303,129	86,275	-	29,517	112,462	225	-		
1958	세입	520,472	87,373	-	-	-	222	-		
	세출	369,096	78,521	-	-	-	212	-		
1959	세입	363,212	66,797	-	-	-	305	-		
	세출	302,957	59,457	-	-	-	305	-		
1960	세입	374,501	55,853	-	-	-	316	7,061		
	세출	245,633	47,633	-	-	-	316	4,529		
1961	세입	25,597	4,112				50	1,079	-	334
	세출	22,639	3,471				50	956	-	175
1962	세입	32,521	4,718				82	1,552	2,393	1,593
	세출	30,811	4,407				81	1,429	2,390	1,395
1963	세입	26,312	-				181	2,146	6,058	1,494
	세출	25,493	-				181	1,871	6,021	439
1964	세입	28,020	-				-	1,494	5,446	15,456
	세출	25,435	-				-	1,234	5,400	591
1965	세입	36,090					1,652	5,029	1,458	
	세출	28,386					1,394	4,840	691	
1966	세입	38,415					1,802	15,132	-	
	세출	31,886					1,564	15,132	-	
1967	세입	35,237					2,276	21,802	-	
	세출	29,214					2,056	21,649	-	
1968	세입	30,764					3,853	19,879	-	
	세출	27,232					3,710	19,495	-	
1969	세입	21,868					5,686	49,486		
	세출	20,393					5,327	48,740		
1970	세입	17,696					11,219	39,819		
	세출	16,456					9,078	39,781		
1971	세입	12,189					14,096	52,491		
	세출	10,864					9,708	52,491		
1972	세입	4,399					16,978	45,964		
	세출	3,075					11,722	45,963		
1973	세입						18,523	43,018		
	세출						15,930	42,551		
1974	세입						22,789	-		
	세출						14,009	-		
1975	세입						27,476	-		
	세출						15,423	-		
1976	세입						45,015	-		
	세출						39,713	-		
1977	세입						64,949			
	세출						45,166			
1978	세입						83,494			
	세출						60,615			
1979	세입						101,777			
	세출						73,203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 분	대중자금	경제부흥	전란수습비	산업부흥국책금	국방비	구황실재산관리	공무원연금	재정자금운용	부정축재처리자금	정부보유외국환 관리
1980	세입						151,877			
	세출						123,258			
1981	세입						238,328			
	세출						182,749			
1982	세입						288,146			
	세출						246,378			
1983	세입						0			
	세출						0			
1984	세입						-			
	세출						-			
1985	세입									
	세출									
1986	세입									
	세출									
1987	세입									
	세출									
1988	세입									
	세출									
1989	세입									
	세출									
1990	세입									
	세출									
1991	세입									
	세출									
1992	세입									
	세출									
1993	세입									
	세출									
1994	세입									
	세출									
1995	세입									
	세출									
1996	세입									
	세출									
1997	세입									
	세출									
1998	세입									
	세출									
1999	세입									
	세출									
2000	세입									
	세출									
2001	세입									
	세출									
2002	세입									
	세출									
2003	세입									
	세출									
2004	세입									
	세출									
2005	세입									
	세출									
2006	세입									
	세출									
2007	세입									
	세출									
2008	세입									
	세출									
2009	세입									
	세출									
2010	세입									
	세출									

재정통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문화재관리	국방·군사시설 이전	군인연금	원호	고도직업	국영TV방송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사원호	국토건설단	국가균형발전	국토건설사업
3,441		68,172	69,804	7,348		86,067				
2,896		66,023	67,150	5,713		72,035				
4,433		92,816	87,313	9,525		96,164				
3,618		92,198	83,010	6,604		88,385				
5,124		121,635	-	10,928		117,875				
4,826		120,350	-	6,417		112,824				
4,455		140,106	-	13,018		137,040				
4,325		139,460	-	7,964		134,134				
4,793		162,802	-	14,813		165,817				
4,316		144,420	-	9,727		162,083				
4,537		181,130		15,326		205,629				
4,221		171,089		10,923		201,908				
5,519		222,084		15,256		240,154				
4,752		212,088		11,600		234,013				
6,301		247,132		14,169		298,356				
5,231		236,704		10,073		266,263				
6,884		285,140		15,256		336,215				
5,352		279,009		10,604		328,174				
		328,721		15,936		424,357				
		322,830		11,070		412,726				
		390,591		16,905		601,045				
		388,578		11,322		587,326				
		451,090		19,457		788,718				
		449,442		12,513		776,677				
		578,488		23,899		1,088,147				
		577,577		14,269		1,027,915				
		678,602		28,327		1,444,793				
		677,248		17,425		1,046,697				
		729,679		31,323		1,291,418				
		728,916		20,219		1,125,443				
		852,264		32,576		686,240				
		830,015		22,771		552,820				
		887,036		32,705						
		885,747		22,928						
		867,812		34,270						
		856,182		23,655						
		942,827		34,979						
		934,205		24,558						
		1,001,707		37,647						
		1,001,448		26,124						
		1,043,064		39,961						
		1,042,909		27,091						
		1,193,247		41,041						
		1,113,903		27,502						
		1,252,133		46,844						
		1,212,432		33,606						
		1,421,457		47,567						
		1,421,354		33,979						
		1,521,109		48,075						
		1,520,970		33,368						
		1,665,781		48,782					5,641,711	
		1,607,633		34,706					5,286,747	
		1,732,698		44,482					6,167,263	
		1,674,315		31,602					5,981,463	
	235,734			47,318					6,613,165	
	164,348			35,737					6,586,024	
	294,010			43,093					8,273,535	
	199,923			31,102					7,973,780	
	675,419			45,712					9,754,510	
	275,498			34,374					9,352,157	
	654,467			44,399					10,249,324	
	226,922			31,983					9,860,274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 분	조달	책임운영기관	도로정비사업	철도사업	재정차관자금 관리	군용시설교외 이전	중기사업	정부청사조정	사법시설	국립의료원
1949	세입									
	세출									
1950	세입									
	세출									
1951	세입									
	세출									
1952	세입									
	세출									
1953	세입									
	세출									
1954	세입									
	세출									
1955	세입									
	세출									
1956	세입									
	세출									
1957	세입									
	세출									
1958	세입									
	세출									
1959	세입									
	세출									
1960	세입									
	세출									
1961	세입	858								
	세출	569								
1962	세입	1,959								
	세출	1,752								
1963	세입	2,348								
	세출	2,282								
1964	세입	3,099								
	세출	3,097								
1965	세입	4,348	-	17,346	-	-	-	-	-	-
	세출	4,331	-	17,312	-	-	-	-	-	-
1966	세입	5,013	-	27,250	3,580	135	-	-	-	-
	세출	4,873	-	27,248	3,303	128	-	-	-	-
1967	세입	352	-	33,147	5,551	635	375	978	-	-
	세출	268	-	33,095	5,473	447	331	152	-	-
1968	세입	380	13,353	43,917	5,876	675	990	1,766	1,151	402
	세출	230	12,931	43,692	5,791	674	540	975	1,113	337
1969	세입	648	32,229	45,836	35,210	495	1,533	2,199	1,964	591
	세출	493	31,603	45,822	33,606	481	950	1,972	1,860	516
1970	세입	825	30,529	43,453	34,052	1,522	1,265	1,817	2,414	699
	세출	675	30,400	43,270	30,471	945	993	1,814	2,303	639
1971	세입	1,140	26,087	53,181	51,666	1,334	972	941	3,119	826
	세출	903	25,129	53,112	47,010	1,330	825	922	3,104	778
1972	세입	1,176	38,680	67,380	97,488	871	686	1,046	4,317	907
	세출	937	35,586	66,732	94,778	764	673	779	3,136	903
1973	세입	1,615	46,282	65,158	80,336	2,429			3,923	1,016
	세출	1,111	41,975	64,298	80,335	1,544			3,357	1,012
1974	세입	2,645	42,461	105,261	53,035	3,460			2,854	1,288
	세출	1,773	37,539	104,206	51,623	2,952			2,381	1,278
1975	세입	3,666	65,673	159,041	171,630	3,412			4,557	1,907
	세출	2,888	57,123	156,622	171,630	2,814			3,186	1,848
1976	세입	4,039	61,374	206,390	186,867	3,189			5,927	3,017
	세출	3,109	56,122	201,975	185,851	2,599			4,869	2,399
1977	세입	5,634		249,316		7,631			15,004	4,273
	세출	4,445		243,334		5,303			11,842	3,193
1978	세입	8,214		291,329		7,451			17,962	5,324
	세출	6,145		283,450		5,153			14,766	4,237
1979	세입	15,856		415,267		8,024			28,767	6,355
	세출	12,453		389,901		7,809			24,350	5,236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분		조달	책임운영기관	도로정비사업	철도사업	재정차관자금 관리	군용시설교외 이전	중기사업	정부청사조정	사법시설	국립의료원
1980	세입	22,100			497,748		7,401			36,551	9,038
	세출	20,379			488,134		6,989			31,042	7,615
1981	세입	23,926			547,381		965			49,438	12,715
	세출	20,958			540,382		588			44,542	12,394
1982	세입	27,801			677,447		18,231			55,465	15,259
	세출	21,487			665,506		5,748			46,459	14,510
1983	세입	31,087			705,592		25,242			68,336	17,294
	세출	26,645			689,762		18,905			60,096	16,195
1984	세입	25,821			792,940		41,213			74,830	16,464
	세출	23,073			781,270		25,364			59,232	13,293
1985	세입	19,256			858,487		50,558			78,346	19,279
	세출	16,744			850,697		37,258			61,871	15,516
1986	세입	20,865			923,874		62,798			103,862	18,986
	세출	18,401			910,907		41,509			86,070	16,947
1987	세입	23,071			994,075		71,599			177,193	19,359
	세출	19,831			981,740		50,801			102,733	18,533
1988	세입	28,228			1,053,681		81,354			126,896	19,982
	세출	24,340			1,042,461		55,119			113,965	19,250
1989	세입	32,942			1,157,035		123,132			120,129	22,549
	세출	25,248			1,144,338		83,559			108,294	21,840
1990	세입	40,901			1,334,469		214,383			136,007	26,599
	세출	28,918			1,263,710		126,470			109,042	24,888
1991	세입	45,455			1,773,486		415,450			164,623	32,707
	세출	39,660			1,649,609		243,245			133,540	30,514
1992	세입	81,597			2,114,744		530,058			224,533	39,987
	세출	57,683			1,951,104		397,662			193,876	35,510
1993	세입	99,789			2,182,443		459,905			260,433	44,324
	세출	85,384			2,074,540		322,722			199,422	40,317
1994	세입	127,979			2,204,486						50,219
	세출	110,544			2,020,176						46,306
1995	세입	121,894			2,487,815						47,707
	세출	85,438			2,318,819						46,637
1996	세입	128,444			3,097,172						46,714
	세출	112,600			2,747,416						45,513
1997	세입	152,455			3,795,788						48,388
	세출	122,268			3,435,943						47,541
1998	세입	176,267			3,680,874						48,176
	세출	119,917			3,357,567						46,574
1999	세입	198,417			3,581,545						49,538
	세출	137,182			3,345,643						48,578
2000	세입	220,251	267,627		4,188,850						49,128
	세출	198,052	242,997		3,873,969						47,556
2001	세입	149,010	551,973		4,913,933						54,313
	세출	127,128	490,419		4,594,141						52,095
2002	세입	147,702	643,004		5,716,922						54,832
	세출	137,225	561,020		5,253,177						53,334
2003	세입	124,883	754,754		6,579,287						58,587
	세출	115,269	641,960		6,196,605						56,604
2004	세입	149,034	755,836		4,852,231						65,128
	세출	142,008	669,142		4,697,683						61,609
2005	세입	157,618	719,889								58,734
	세출	130,279	641,152								58,603
2006	세입	281,377	640,172								63,095
	세출	212,699	572,015								62,077
2007	세입	278,749	1,139,161								
	세출	200,021	967,463								
2008	세입	295,402	1,027,604								
	세출	215,011	826,932								
2009	세입	374,476	1,006,051								
	세출	292,692	816,815								
2010	세입	367,263	976,345								
	세출	335,648	810,192								

재 정 통 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청구권자금 관리	국립대학교부속병원	국유임야 관리	서울대학교시설 확충	항공기정비	국립중축장 관리	국민복지연금	정보청사조정	우체국보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주한미군기지 이전
	25,779	11,586				88		-		
	22,635	8,133				76		-		
	35,677	11,405				99		-		
	33,402	8,821				85		-		
	45,915	14,160				79		-		
	42,500	9,599				69		-		
	52,925	16,720				60		-		
	49,964	8,920				58		-		
	59,272	19,387				63		6,623		
	54,280	9,660				62		5,815		
	66,409	21,472				112		17,024		
	59,916	9,662				65		16,905		
	73,931	20,076				95		85,380		
	67,414	10,282				86		81,773		
	87,050	20,765				5,314		22,231		
	80,711	11,998				5,148		21,998		
	104,383	34,146						28,798		
	96,665	20,897						28,395		
	122,729	51,124						40,108		
	110,278	26,123						33,423		
	156,094	104,821						42,344		
	136,004	58,383						40,527		
	195,840	99,187						47,452		
	171,552	76,619						45,975		
	235,081	85,578						60,154		
	205,573	83,573						59,787		
	193,278	75,714						74,221		
	169,930	73,639						73,401		
	152,102							101,569		
	126,780							101,288		
	93,656							97,986		
	90,833							97,726		
								132,805		
								131,442		
								160,428		
								158,842		
								181,245		
								175,244		
								244,650		
								242,221		
								359,596		
								356,021		
								396,197		
								388,675		
								415,336		
								411,665		
								495,206		
								487,158		
								518,894		
								508,203		
								493,402		
								489,997		
								533,579		125,703
								531,952		119,794
								596,438		235,095
								508,330		183,165
								577,435		211,070
								542,660	50,000	201,288
								570,343	87,228	255,748
								544,090	32,582	238,589
								615,135	94,183	593,126
								597,788	76,098	589,838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 분		자금관리 (재정투융자)	특허관리	도로사업	교육환경개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도시철도사업	지방양여금 관리	지방교육양여금	농어촌구조개선	정부청사시설
1949	세입										
	세출										
1950	세입										
	세출										
1951	세입										
	세출										
1952	세입										
	세출										
1953	세입										
	세출										
1954	세입										
	세출										
1955	세입										
	세출										
1956	세입										
	세출										
1957	세입										
	세출										
1958	세입										
	세출										
1959	세입										
	세출										
1960	세입										
	세출										
1961	세입										
	세출										
1962	세입										
	세출										
1963	세입										
	세출										
1964	세입										
	세출										
1965	세입										
	세출										
1966	세입										
	세출										
1967	세입										
	세출										
1968	세입										
	세출										
1969	세입										
	세출										
1970	세입										
	세출										
1971	세입										
	세출										
1972	세입										
	세출										
1973	세입										
	세출										
1974	세입										
	세출										
1975	세입										
	세출										
1976	세입										
	세출										
1977	세입	338,798									
	세출	329,574									
1978	세입	345,520									
	세출	338,608									
1979	세입	509,305									
	세출	508,080									

재 정 통 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국유재산관리	도로교통시설	등기	농어촌특별세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	환경개선	합 계
									1,288
									1,248
									2,708
									2,603
									13,427
									12,919
									50,707
									47,842
									144,836
									137,830
									318,264
									296,025
									852,193
									728,261
									852,193
									728,261
									994,043
									776,958
									855,124
									686,260
									672,448
									598,282
									690,464
									540,074
									64,357
									56,460
									86,409
									80,147
									112,518
									106,548
									120,562
									112,367
									138,175
									130,133
									216,695
									208,632
									260,963
									243,205
									338,662
									327,505
									520,514
									503,761
									482,810
									458,814
									570,247
									549,331
									768,797
									744,133
									770,118
									734,225
									1,050,376
									989,096
									1,750,013
									1,686,340
									2,172,899
									2,068,929
									1,936,189
									1,821,613
									2,375,498
									2,282,018
									3,033,403
									2,927,548

1.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계속)

구분		자금관리 (재정투융자)	특허관리	도로사업	교육환경개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도시철도사업	지방양여금 관리	지방교육양여금	농어촌구조개선	정부청사시설
1980	세입	664,013									
	세출	661,105									
1981	세입	881,770									
	세출	864,267									
1982	세입	1,099,089									
	세출	1,051,056									
1983	세입	1,240,710									
	세출	1,235,519									
1984	세입	2,019,323									
	세출	2,006,331									
1985	세입	1,912,168									
	세출	1,895,810									
1986	세입	2,072,867									
	세출	2,069,430									
1987	세입	2,268,387									
	세출	2,235,097									
1988	세입	4,455,384	15,605								
	세출	4,368,036	11,433								
1989	세입	7,201,632	17,241	1,106,177							
	세출	7,018,318	16,973	913,100							
1990	세입	6,190,736	20,494	1,344,050	370,000	38					
	세출	5,837,808	18,211	1,230,638	369,709						
1991	세입	6,319,845	24,866	1,643,412	370,291	80,408	210,506	578,296	1,526,854		
	세출	6,210,673	22,513	1,354,458	369,884	73,410	210,000	525,000	1,341,789		
1992	세입	4,886,183	25,469	1,964,032	370,407	268,428	250,889	1,277,350	2,007,362	948,975	
	세출	4,797,133	23,563	1,811,899	370,345	182,628	250,000	1,184,245	1,773,313	945,942	
1993	세입	8,802,410	29,885	2,299,124		541,652	383,227	1,408,736	2,312,952	1,350,249	25,115
	세출	8,743,421	26,139	2,066,390		227,629	380,200	1,284,947	2,076,072	1,336,293	18,905
1994	세입	11,130,274	36,623			701,018		1,847,622	2,776,458	3,120,033	
	세출	10,768,643	30,683			363,674		1,770,182	2,577,351	2,811,608	
1995	세입	11,279,315	46,696			665,542		2,271,039	3,192,212	4,953,929	
	세출	11,184,047	39,413			407,907		2,133,631	2,912,355	4,430,415	
1996	세입	11,897,829	69,781		400,000	585,558		2,604,327	4,104,018	5,658,026	
	세출	11,875,192	51,345		400,000	348,312		2,405,590	3,522,795	5,445,412	
1997	세입	10,368,126	95,125		700,000	550,840		2,903,741	5,379,753	5,700,651	
	세출	10,334,081	64,356		700,000	382,827		2,538,778	4,459,966	5,668,986	
1998	세입	15,315,028	123,791		700,000	345,116		3,209,640	5,422,919	5,399,516	
	세출	15,207,008	81,086		700,000	280,330		2,945,680	4,820,124	5,282,314	
1999	세입	19,260,332	149,286		700,000	257,611		3,788,289	5,199,735	6,277,070	
	세출	19,117,634	83,917		700,000	179,429		3,510,769	4,807,300	5,995,524	
2000	세입	20,886,891	176,271		700,000	301,602		3,781,016	5,490,735	6,316,648	
	세출	20,789,853	130,246		700,000	197,733		3,642,200	5,057,835	5,909,429	
2001	세입	16,433,022	175,892			391,129		4,336,871	4,215,402	6,526,757	
	세출	16,260,098	148,786			265,436		4,087,873	3,947,685	6,209,747	
2002	세입	17,200,104	181,974			365,649		4,573,825	3,799,293	6,823,768	
	세출	16,924,027	171,420			196,237		3,975,191	3,149,253	6,341,250	
2003	세입	18,156,417	175,175			480,394		5,044,403	4,301,366	7,382,342	
	세출	18,103,838	166,377			290,722		4,335,965	3,659,848	6,823,370	
2004	세입	14,772,503	198,329			559,587		4,956,793	4,171,038	7,222,396	
	세출	14,716,041	183,214			326,476		4,544,488	3,863,593	6,725,182	
2005	세입	14,813,531	269,482					412,304		6,400,660	
	세출	14,230,435	221,261					412,304		6,237,559	
2006	세입	10,510,248	351,782							7,200,847	
	세출	10,001,968	286,463							7,044,997	
2007	세입									8,845,491	
	세출									8,036,094	
2008	세입									8,726,012	
	세출									7,886,328	
2009	세입									9,318,803	
	세출									8,385,602	
2010	세입									9,660,506	
	세출									9,015,630	

재 정 통 계

(단위: 1949~60년도 백만원, 1961~2005년도 백만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국유재산관리	도로교통시설	등기	농어촌특별세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	환경개선	합 계
									4,308,815
									4,207,953
									5,587,095
									5,458,413
									4,972,444
									4,779,254
									5,101,673
									4,977,139
									6,184,450
									5,954,767
									6,325,621
									6,059,993
									7,148,388
									6,957,714
									5,357,124
									5,155,889
									292,024
									284,361
									328,721
									322,830
									390,591
									388,578
									451,090
									449,442
									578,488
									577,577
53,209									678,602
47,313									677,248
78,203	1,292,002	4,765,850	48,300	290,388					1,068,367
69,204	1,015,272	4,255,104	40,321	211,775					981,012
88,204	1,398,067	5,908,776	59,633	1,411,680	1,739,739		443,891		4,507,207
76,358	1,180,558	4,933,536	50,115	1,339,046	1,427,615		392,400		4,039,191
93,407	1,864,382	7,253,878	84,403	1,567,790	1,865,436		628,050		5,032,715
91,735	1,478,524	6,511,424	74,486	1,486,366	1,681,637		596,014		4,724,250
70,899	1,896,617	8,427,130	114,934	1,310,311	2,114,076		773,630		5,180,763
68,311	1,547,588	7,956,456	100,761	1,239,387	1,925,839		741,848		4,864,017
92,020	1,101,732	11,304,448	147,124	1,276,561	2,157,117		919,569		5,443,198
73,813	989,577	10,570,787	127,719	1,202,182	2,052,318		884,658		5,201,082
144,717	1,128,194	12,370,863	165,008	2,283,121	2,002,004		948,423		6,400,263
80,409	1,031,789	11,825,838	142,838	1,747,897	1,993,317		931,261		5,816,761
208,072	1,270,632	12,786,480	169,146	2,391,724	2,005,590		1,056,034		6,665,558
25,241	1,194,582	12,051,950	156,048	1,649,273	1,920,584		1,020,340		5,789,154
591,421	1,378,295	13,468,913	196,938	2,300,624	2,655,923		1,221,221		7,567,953
123,146	1,281,740	13,099,692	171,269	2,146,355	2,308,578		1,153,133		6,893,238
904,530	1,542,583	13,720,415	239,776	2,321,045	2,545,019		1,226,768		70,003,866
365,301	1,339,819	13,005,177	185,481	2,114,634	2,230,950		1,200,442		64,365,806
1,034,188	1,590,784	15,215,593	263,184	2,182,810	2,439,920		1,392,082		75,673,933
1,000,057	1,249,270	14,524,065	167,806	2,070,985	2,357,179		1,268,037		70,780,828
663,673	1,590,784	13,936,990	297,738	2,224,352	2,227,368		1,371,801		68,500,343
653,696	1,303,823	13,587,251	184,393	2,073,969	2,214,080		1,254,362		64,958,241
639,372	2,087,192	13,202,115	321,744	2,657,623	3,683,986		2,616,929		10,946,063
621,108	1,774,060	12,685,018	196,596	2,513,606	2,538,252		2,526,266		9,382,353
506,040	1,508,109	12,963,039	315,533	3,148,562	4,409,177	22,581	2,785,553		12,414,104
497,323	1,222,445	12,737,759	203,011	2,937,954	3,007,417	19,616	2,725,050		10,567,363
		13,241,662	286,652	3,835,140	83,201		2,921,671		7,362,398
		12,922,680	213,619	3,806,143	68,502		2,883,629		7,136,241
		14,181,164	238,141	5,773,079	341,547	121,707	3,031,707		9,800,191
		13,926,931	215,280	5,534,191	326,111	110,716	3,025,015		9,411,236
		17,201,851	207,809	4,009,445	592,554	190,683	4,002,665		9,678,575
		16,829,798	192,599	3,690,219	528,214	161,570	3,990,274		8,838,374
		14,033,018	210,296	5,001,183	759,143	512,818	3,962,969		11,100,876
		13,905,505	189,639	4,382,053	367,011	456,434	3,928,877		9,550,936

- 주: 1. 세입은 특별회계세입결산총계의 수납액임
2. 세출은 특별회계세출결산총계의 지출액임
1) 임시관재총국특별회계는 1950년에 관재청특별회계로 개편한 후에 1951년도부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로 개편, 임시외자총국특별회계는 1950년도에
외자관리특별회계로 개편
2) 2000년도 이전에는 체신보험
-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3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OECD 80%가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자본시장 과세 연혁, 주식시장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즉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010년 이전 가입한 30개국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세 곳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그리스, 멕시코는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모두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중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주식처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식양도차익세 대신 물리고 있는 거래세의 병행 시행 여부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거래세 없이 차익에만 과세하고 있고 스위스는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차익과 거래에 모두 과세하고 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차익 및 거래 모두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체계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주식 관련 세제가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세제 도입 후 이를 완전히 정비하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일본은 1887년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수차례 바뀌었고 1987년 세계개편을 통해 1989년 4월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 하게 됐다.

그러나 주식차익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 정착을 위한 전단계로 급격한 세율 감소를 막기 위해 기존의 거래세 제도를 10년간 병행해 시행했다. 1989년 0.55%였던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뒤 1999년 완전 폐지했다.

또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선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제도로 일원화했다. 결국 1989년부터 약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특히 세계 도입 이전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해 새로운 세계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기간까지 합치면 일본의 주식 관련 과세제도 변화에 수십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11-9-7일자〉

[칼럼] 이제는 ‘인적자본’에 투자할 때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물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출산·육아 지원 등 국가 인력 육성을 돕는 인적자본 투자는 공통점이 꽤 많다. 우선 투자를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크다. 그렇다 보니 개인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인적자본 투자에 쓰이는 재원은 대개 국가의 돈-재정의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두 투자 사이에 공통점만큼이나 다른 점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그렇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미 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다. 지자체마다 도로와 항만, 철도·공항 등을 지었거나 짓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지역구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챙기기 일쑤다. 반면 인적자본 투자는 그 개념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자원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인적자본 투자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 최근 복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면 분명히 ‘아니요’가 답인 것 같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도 이를 뒤집어 보면 인적자본 투자일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데 들어가는 돈은 분명하게 인적자본 투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전부를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업들은 아예 이들의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자. 여성인력 고용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여성을 고용하는 데는 남성보다 비용이 더 든다. 출산·육아 등 이른바 모성비용 때문이다. 이런 비용을 모두 기업에 떠넘기면 기업의 여성 고용 비용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적자본 투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 경제는 곧 절대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선다. 그런 만큼 인적자본 투자가 갈수록 중요해지게 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여성이나 취약계층 인력 등 그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대거 끌어들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동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적자본 투자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덜 급한 복지논쟁에 휘말려 아예 방향 감각조차 잃은 듯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념적 논쟁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런 차이는 체계적 분석 틀의 유무에서 비롯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분석 틀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 예컨대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차단장치’ 역할을 한다. 지역정서에 근거한 정치논리에 따라 쏟아지는 지역개발 사업들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낭비와 중복을 막고, 활발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적자본 투자에도 이런 방법론이 속히 개발돼야 한다. 그래야 복지논쟁·이념논쟁에 휘말려 사람 키우기를 등한시하는 풍조도 사라지고, 나라 경제의 성장동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2011-9-5일자〉

글로벌 금융위기 40대 이상에 집중됐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40대 이상 가구의 자산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데다 기존 자산구조를 변경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명목금액상 총자산이 줄고 총부채는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6년 2억 4164만 4000원이던 순자산액은 2010년 2억 3005만원으로 4.8% 줄었다. 그러나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가구주 연령계층별 순자산액 비교

(단위: 원)

	2006년	2010년	증감률
30세 미만	4431만 7000	6620만 8000	49.4%
30~39세	1억 4278만 3000	1억 5518만 9000	8.7%
40~49세	2억 5316만 9000	2억 2894만 3000	-9.6%
50~59세	3억 2623만 4000	2억 9930만 2000	-8.3%
60세 이상	2억 9078만 6000	2억 6324만 9000	-9.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이번 결과는 통계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분기에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와 금융위기 전인 2006년 2분기에 실시한 가계 금융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액은 2006년 4431만 7000원에서 2010년 6620만 8000원으로 49.4%나 늘었다. 30~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액도 1억 4278만 3000원에서 1억 5518만 9000원으로 8.7%가 늘어났다.

반면 40~50세 미만 가구주 가구는 2억 5316만 9000원에서 2억 2894만 3000원으로 9.6% 줄어들었다. 50~60세 미만 가구주 가구는 8.3%, 60세 이상 가구주는

9.5% 줄어들었다. 특히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 7055만 9000원에서 2억 2322만 8000원으로 17.5%나 줄어들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 및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경직성 지출 등으로 인한 자산구조 변경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특히 60대 이상 가구는 주택자산 비중의 양극화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가구 중 총자산의 90~100%를 주택자산 형태로 갖고 있는 가구 비중이 11.6%에서 25%로 급증한 반면 같은 연령대에 무주택 가구주 비중이 15.7%에서 26.0%로 급증했다. 즉, 집이 자산의 전부이거나 또는 집이 없는 6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각각 두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거주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2.4%라는 점을 고려하면, 60대를 전후해서 주택자산의 변화가 몰려 있는 셈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 여부는 전·월세 보증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은 2006년 2050만원에서 2010년 3178만원으로 55.0% 늘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은 30.0%,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은 3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신문 2011-8-25일자)

“과세대상소득 납세자도 입증해야”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속한 한 세무서는 탈루 의혹이 큰 사우나 업체를 찾아가 매출장부를 요구했다. 사우나를 찾는 유동인구는 많은데 세입 신고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세무서 판단이었다. 하지만 사우나 주인은 최근 2년간

현금거래를 기록한 매출장부를 폐기했다며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얻지 못해 대략적인 추정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2009년 5월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사우나업이 98.1%로 가장 높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림살롱(71.5%) 호텔(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판례상 과세관청(국세청)에 납세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 협조 없이는 적정 과세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 현행법은 납세자가 자료 은닉 등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23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와 국세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세 절차상 증명책임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 한해 특정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과세 증빙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사안은 국제 거래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처럼 국세청의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납세자가 과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이럴 때는 국세청 추징 통보에 납세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과세의 부적절함을 방어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가 숨겨둔 증빙자료를 세무서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내 과세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소송에서 공지에 몰린 납세자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해 막판에 과세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관청 증명책임을 납세 증빙을 성실히 한 납세자보다 이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납세자 증명책임 전환은 납세자 반발도 있는 만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법제정

사안”이라며 당장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매일경제 2011-8-24일자〉

가스안전관리 활동 효과 만점

年 3조원 사회경제 효과 ‘톡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활동이 연간 약 3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활동 사고예방분야 효과가 1조 3540억원, 27개 지역본부·지사 관내 업소의 38개 품목 수출지원과 해외사업지원처 지원 등을 통한 기업수출지원분야 효과가 1조 6057억원으로 모두 2조 9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사고는 지난 1995년 577건으로 최대로 발생한 후 사고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15년간 76.8%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사고감소에 큰 역할을 한 주요 안전관리정책은 △시공 감리 제도 및 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도입(1995) △퓨즈콕 설치 의무화(1997) △체적거래제 도입(1999) △안전공급계약제 도입(2001)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시행(2004) △굴착공사장 원콜센터 운영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화 시행(2009)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가스안전관리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결과도 제시했다.

가스안전관리 활동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국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130개 업체, 658개 시설로 이들의 매출총액은 약 27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83조 8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7750억원, 취업유발효과 총 44만 9473명, 고용유발효과 40만 3903명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가스사용량 1만TOE(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증가 시 가스사고는 0.36건 증가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입 비용이 1억원 늘면 가스사고는 0.89건 감소하며, 가스사고확률 0.1% 감축 시 약 3749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함을 계량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요인은 다시 증가가 예상되므로 최소 가스사용량 증가율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투자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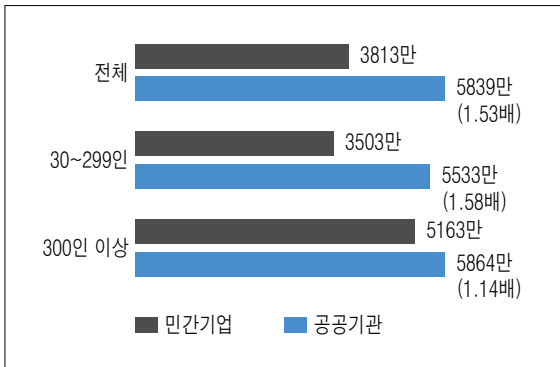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2011-8-22일자)

공공기관 평균임금, 민간기업의 1.53배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민간기업 직원들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민간기업 평균 임금 수준 비교

(단위: 원, 2010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19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 산하 공공기관정책 연구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기관-민간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수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5839만원으로 민간기업 평균 임금 3813만원의 1.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30~299명인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은 5533만원이었으나,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은 3503만원에 불과했다.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슷한 규모의 민간기업 직원들보다 1.58배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5864만원으로 민간기업(5163만원)보다 1.14배 높았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30~299명인 사업체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부동산 관련 5개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은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보다 1.98배 높았다. 방사성폐기물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환경 복원 업종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동종 민간기업 직원들보다 임금을 1.65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운수업 관련 5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동종 민간기업보다 1.36배 높았고, 한국조폐공사와 한전원자력원료 등 제조업 관련 공공기관의 임금수준도 민간기업보다 1.32배 높았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은 민간기업보다 8.3% 높았지만,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해 보면,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7971만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금융기업보다 26.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임금수준 분석자료를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관련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할 방침이다.

(한겨레 2011-8-20일자)

재정포럼

2011년 9월호 통권 제18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9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9호(통권 제18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